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기반구축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2.

연구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총괄책임자 : 강 부 미

참여연구원 : 백 종 현

이 혜 진

요 약 문

1. 제목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기반구축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개요

1)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

적합성평가제도란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수준의 성능 및 품질을 만족함을 자신 (제1자), 계약자당사자간 (제2자) 또는 정부 또는 공인된 기관(제3자)이 증명하는 제도로

이 제도의 운영목적은 시장내 적정한 품질을 유지되는 제품을 유통가능토록 하여 제품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해외 현황

세계무역기구(WTO)는 TBT위원회 3년주기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적합성평가제도가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증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자국 인정기구 및 적합성평가체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진행 중에 있음.

유럽의 경우 CE marking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자 자율의 적합성선언(DoC)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2000년 6월부터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제도를 운영하여 인증기관의 민간이양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자적합성선언(SDoC)이 가능하도록 인증제도를 변경하는 등, 점차적으로 강제인증제도에서 자율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추세임.

일본은 2001년도에 적합성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적합성평가업무 중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였으며, 적합성평가제도로 정부인증외 제조자들의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차 적합성평가업무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종합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MRA)의 가시화 및 제조자적합선언(DoC) 제도도입으로 국제적으로 인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되고 인증기기 및 불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후적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임.

3) 국내 현황

국가의 총괄적인 인증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 적합성평가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국제기준과 부합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기준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인증 선진국은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자율로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제도의 개선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계획」(07년)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2009년도부터는 전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입법방향을 준비 중임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방송통신 적합성평가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마련된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후속입법조치를 마련하며 셋째, 방송통신 분야 적합성평가 제도로 이해당사자인 업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적합성평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것에 있음

다. 연구의 중요성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제조자적합선언방식(DoC) 도입, 다수의 민간 인증기관 지정 (TCB), 타 국가의 시험인증 성적서 인정 등 규제를 완화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원활한 교류와 보다 빠른 시장진입으로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신기술 개발 등 제조업체를 활성화 하도록 자국의 인증 관련 입법 체계를 전면 개선하였음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와 현재 추진 중인 캐나다, EU, 일본, 인도, 멕시코 등과의 FTA에서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 등 전반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 통상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한 입법 수요를 도출하고 새로운 적합성평가 체계의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은 기술 규제의 합리화 및 완화의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큼

따라서 이러한 작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인증제도의 변화와 개편 요구에 맞추어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의 선진적 기반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추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세부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후속입법 연구

개정 전파법(안)에 따라 대통령령인 전파법 시행령(안)에 별도의 장을 제정하고 적합성평가체계의 운영을 위한 주요 입법 원칙, 내용, 방향등을 작성하는 것임

궁극적으로는 현재 1법률(전파법) 3고시(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업무 운영 고시·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고시) 체제를 정비하여, 1법률(전파법) 1령(전파법 시행령(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에 관한 규정 내용 수록) 2고시(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업무 운영 고시·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고시) 체제로 개편하는 것임

나.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의 국제 활동 분석연구

APEC TEL의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및 모범적 규제사례(Best Practice) 활용 권고, NIST의 국제 적합성 평가체계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 활동을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국내외 전자파 적합성 규제 현황 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전자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전자파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정책 대응방안 지원함

라.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대상 품목 수요조사

종전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가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적합성평가대상품목 분류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정부의 인증제도가 정부인증인 적합인증과 제조자 자율확인제도인 적합등록 제도로 구분 운영됨에 따라 적합인증대상 품목과 적합등록대상품목 체계 마련함

4. 연구내용 및 결과

첫째 전파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후속입법 연구를 통한 기초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대통령령인 전파법 시행령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제안함

둘째, 국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의 국제 활동 동향을 분석함. 이를 위해 APEC TEL의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협정 논의 동향 및 NIST의 국제 적합성 평가체계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 활동을 분석함

셋째 국내외 전자파 적합성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하여 기존 문헌분석을 통해 전자파를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전자파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정책 대응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마지막으로 종전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가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적합성평가대상품목 분류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인증제도가 정부인증인 적합인증과 제조자 자율확인제도인 적합등록 제도로 구분 운영됨에 따라 적합인증대상 품목과 적합등록대상품목 체계를 마련함.

5. 정책적 활용내용

본 연구 결과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마련과 후속입법조치에 활용됨

6. 기대효과

본 연구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국가 적합성평가제도의 합리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임. 특히 본 연구 내용의 세부적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개선사항과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적합등록 및 적합인증 등 인증유형 재분류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신제품 잠정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 확대 및 소비자의 기기선택권이 증대되며,

둘째, 부적합정보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사후관리 역량 강화 및 올바른 기기정보의 이용자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확대될 것이며.

셋째 방송통신기기와 적합성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체제 정비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불법 불량기기의 유통 최소화 및 건전한 방송통신기기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SUMMARY

1. Title : A Study on Advance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Radio &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1) Objective

This study is on the purpose of streamlining and rationalizing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Radio &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that is assuring the quality of product to the market in order to consumer can have the safe and convenient product.

2) Status of Overseas

After WTO reviewed TBT committee's report, they pointed out case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pplied as a technical trade barrier(TBT) and urged improvement to each country. According to this, USA, Japan and EU are continuously monitoring their operating status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Europe introduced CE marking system and operates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to utilize DoC system.

USA is operating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TCB) system since June, 2000. They changed certification system to SDoC in some countries.

In 2001, Japan extended scope for certification body from non-profit corporation to profit corporation. Also Japan has increasingly emphasize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ternationally, regulation has been mitigated but the post-management and the post-regulation for certification equipment and illegal equipment have been enhanced.

3) Status of Domestic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ndard basic plan and the innova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targeting reorganiz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the review and requirement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to ministries and office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echnical development, amendment of technical requirements are steadily increasing.

In 2007,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mprovement plan for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lso in 2008, they suggested 'Radio law amendment for reorganizing the certification syste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Since 2009, they prepared direction for subsequent legislative.

4) Necessity of study (political necessity)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are mitigating the regulation of seamless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Also they improved their legislative system to maximize the profit and enable the manufacturers.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procedure for conformity assessments have been raised as trade issues at FTA. Korean government is in progress of reorganizing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s timely and significant to subsequent legislation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A study on subsequent legislative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ccording to radio law amendment
- A study on International Activity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A study on regulatory status of EMC and reorganizing pla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 A survey for conformity assessment equipment of new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4. Research Results

- Supported basic policy establishment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research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Analyzed international activity trends of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 Analyzed regulatory status of EMC and suggested reorganizing pla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 Since forme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 have been changed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 survey for category of conformity assessment equipment has conducted.
- Since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conformity certification

and conformity registration system, category and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equipment has been establishe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for making up the presidential decree on Radio wave act, esp.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6. Expectations

Major system enhancement and effect are as follow:

- Due to the reclassification of certification type, companies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self-management skills.
-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potential certification system, companies can extend market preoccupy and customer can enlarge equipment option.
- Due to the introduction of nonconformi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companies can strengthen capability of post-management.
- Through providing right information of equipment user, user can expand the right of information access.
- Through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of post-management system for equipments and test certification bodies, distribution for illegal equipments will be minimized.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와 성격	2
제 1 절 적합성평가제도 의의	2
제 2 절 적합성평가제도의 성격	3
제 3 장 전파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후속입법 연구	5
제 1 절 개 요	5
제 2 절 주요 후속입법내용	5
1. 인증유형 분류 및 절차 간소화	5
2. 신제품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도입	14
3.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마련	18
4.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근거 마련	21
5. 지정시험기관 3진 아웃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 제도 정비	23
6. 부적합 정보 보고제도 도입	29
7.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절차 명확화	30
제 4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의 국제활동 분석연구	32
제 1 절 NIST의 국제 적합성 평가 및 MRA 워크숍	32
1. 개 요	32
2. 주요 내용	32
제 2 절 APEC TEL 기술동등성 협정 논의	38
1. 개 요	38
2. 주요 내용	39

제 5 장 국내외 전자파 규제 현황 연구	41
제 1 절 개 요	41
제 2 절 해외 EMC 규제 현황	41
1. 표준화 기구에서의 EMC 표준화 현황	41
2. 주요 국가별 EMC 규제 현황	44
제 3 절 국내 EMC 규제 현황	50
1. 개요	50
2. 분야별 EMC 규제 현황	52
 제 6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수요조사	 63
제 1 절 개 요	63
제 2 절 업체별 설문조사 개요	63
제 3 절 품목별 적합성 평가방안 조사결과	65
1. 개요	65
2. 품목별 적합성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방송통신기기의 구분	66
3. 품목별 적합성평가방안 조사결과	67
4.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도출	83
제 4 절 업체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결과	103
1. 개요	103
2. 응답내용 요약	103
 제 7 장 결론	 105
 <부록 1>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개정 전파법 시행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108
<부록 2>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대상 수요조사표	155
참고문헌	196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2
2-1 Signific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2
2-2 Characteristic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3
Chapter 3. A Study on Subsequent Legislation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5
3-1. Overview	5
3-2. Brief Summary of Subsequent Legislation	5
Chapter 4. A Study on International Activity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 nications Equipment	32
4-1. NIST Inter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 MRA Workshop	32
4-2. APEC TEL Technical Equivalence Meeting	38
Chapter 5. Status of EMC Regula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41
5-1 Overview	41
5-2 Status of EMC Regulation in Overseas	41

5-3 Status of EMC Regulation in Domestic	50
Chapter 6. A Survey on Item for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63
6-1 Overview	63
6-2 Outline of Survey by Manufacturers's View	63
6-3 Survey Result on Classification of Items for New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65
6-4 Pre-Evaluation Result on New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by Manufacturers's View	103
Chapter 7. Conclusion	105
<Appendix 1> A Comparative Table for Current and Draft Amended Presidential Decree of Radio wave ac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 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08
<Appendix 2> Questionnaires for New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Broadc 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55
Reference	196

표 목 차

<표 2-1> 적합성평가 체계도	2
<표 3-1> 적합인증대상의 분류기준	7
<표 3-2> 적합등록대상의 분류기준	9
<표 3-3>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 기기 예시	9
<표 3-4> 인증유형 재분류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11
<표 3-5> 신제품 잠정인증제도의 주요골자	15
<표 3-6> 잠정인증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17
<표 3-7> 잠정인증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20
<표 3-8>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23
<표 3-9> 지정시험기관 사후관리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25
<표 3-10>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27
<표 3-11> 부적합정보 보고제도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30
<표 3-1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31
<표 4-1> EU와 일본의 방송통신분야 규제 비교	34
<표 4-2> 호주의 GSM/WCDMA/Cordless 제품 표준 및 요구사항	36
<표 5-1> CISPR의 분과위원회(SC)별 관련 분야	43
<표 5-2> IEC/TC77 업무 분야	43
<표 5-3> 일본 VCCI 전자파 규제 대상기기와 품목	46
<표 5-4> 유럽연합의 전자파 규제절차와 적용품목	48
<표 5-5> 우리나라 EMC 규제를 시행하는 제품별 인증제도	52
<표 5-6> 방송통신기기의 EMC 제도 도입 변천 과정	55

<표 5-7> 전자파 규제 관련 한국 산업 규격 분류	57
<표 5-8> 의료기기의 EMC 관련 법체계	59
<표 5-9> 의료기기의 EMC 관련 규제체계 변천과정	60
<표 5-10>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EMC 관련 법체계	61
<표 5-11> 소방시설의 EMC 관련 법 체계	62
<표 6-1> 설문 응답업체의 특성	64
<표 6-2>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68
<표 6-3> 유선기기 중 시스템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69
<표 6-4> 유선기기중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71
<표 6-5> 무선 기기중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72
<표 6-6> 무선기기 중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75
<표 6-7> 무선기기 중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77
<표 6-8> 무선기기 중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78
<표 6-9> 정보기기(컴퓨터 및 정보기기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80
<표 6-10> 적합성 평가대상 품목분류안 제1안	84
<표 6-11> 적합성 평가대상 품목분류안 제2안	92

그 립 목 차

(그림 3-1) 인증유형 분류 원칙	6
(그림 3-2) 인증유형 분류기준 도출과정	6
(그림 3-3) 인증절차 간소화 개요	10
(그림 3-4)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16
(그림 3-5)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개요	19
(그림 3-6) 적합성평가 전문심사기구 운영구조도	22
(그림 4-1) 2008년도 미국의 통신 및 EMC 분야 수출입 현황	33
(그림 4-2) 국제적 인정체계 조직현황	37
(그림 4-3) 국가간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절차	40
(그림 5-1) IEC 조직도	42
(그림 5-2) 일본 VCCI 전자파 규제 절차	46

제 1 장 서 론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기기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품질가이드라인을 정한 사회적 규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적합성평가제도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TBT위원회의 주기적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적합성평가제도가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기기 인증업무가 민간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국가의 총괄적인 적합성평가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적합성평가제도 개선과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계획」(07년, 08년)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08년도에 관련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후속입법인 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도출된 2008년도에 도출된 전파법 개정안과 주요 세부 실천과제에 따라서 국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시에 필요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책대안의 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및 적합성 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통신기기의 품목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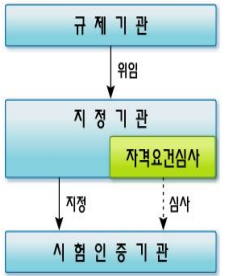
이외에 국내외 적합성평가체계 개편동향 분석과 관련하여 간략하나마 기존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 전자파 규제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09년도에 NIST에서 개최된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 워크숍 내용과 APEC TEL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국가간 기술기준 동등성 협정의 주요 논의 흐름을 파악코자 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그간 작업을 통해 도출된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수요조사표」를 수록하였다.

제 2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적합성평가제도 의의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적합성평가 제도는 어떤 제품, 절차 및 서비스가 각종 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평가하는 시험(Testing),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지정(Designation)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표 2-1) 적합성평가 체계도

일반적인 체계	용어 설명	
	지정 (Designation)	시험인증기관에게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요건심사(인정) (Accreditation)	시험인증기관이 일반적 품질관리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심사
	인증 (Certification)	제품이 일정수준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함을 증명
	시험 (Testing)	인증하기 전에 제품 등이 기술적 요건에 충족한 지 성능을 측정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하여,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0호 :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
- ISO/IEC 17000 : demonstration that specified requirements (need or expectation that is stated) relating to a product (result of a process), process, system, person or body are fulfilled.

- KS A ISO/IEC Guide 2 :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관한 모든 활동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제품, 공정,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과 같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표준, 규격, 규정 등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즉 인증(Certification)과 인정(Accreditation)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한편, 인증과 인정의 개념이 구분되어야 된다. 인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은 시험·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등과 같은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상위기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 적합성평가기관과는 차별을 두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절 적합성평가제도의 성격

적합성평가제도는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제조자 자신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평가 규제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통신망 사업자간 그리고 통신사업자간에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하고자 주요 품질사항에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평가 규제의 성격을 정부규제론의 입장에서 적용대상자, 규제목적, 규제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합성 규제의 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자, 이를 판매하는 수입자 또는 판매자와 제조업체의 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합성 평가 규제 목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일정한

1) 한국전자제시험연구원, 표준·인증제도 운영관련 용어의 적용지침 개발, 국가표준·인증 혁신실무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07.8.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규격, 설계,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질적 규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 적합성 평가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투입기준규제와 성과기준 규제로도 볼 수 있다. 정부 규제론 측면에서 성과기준 규제는 산업재해, 또는 소비자 안전문제 등을 일으킬 기술적, 설계 요인 등의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 규제는 투입기준 규제의 속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규제의 논리는 최근 인증 규제 방향이 인증규제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서 그 의의를 보다 강하게 찾을 수 있다.

제 3 장 전파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후속입법 연구

제 1 절 개 요

전파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후속 입법연구는 전파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입법원칙을 후속입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대안별로 전파법 시행령(안)을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 2 절 주요 후속입법내용

1. 인증유형 재분류 및 전차 간소화

가. 개 요

최근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빈번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인증제도는 기기의 위험도, 불량률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부가 인증을 하고 있어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는 제조자가 직접 인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규제완화조치를 검토하였다.

나. 인증유형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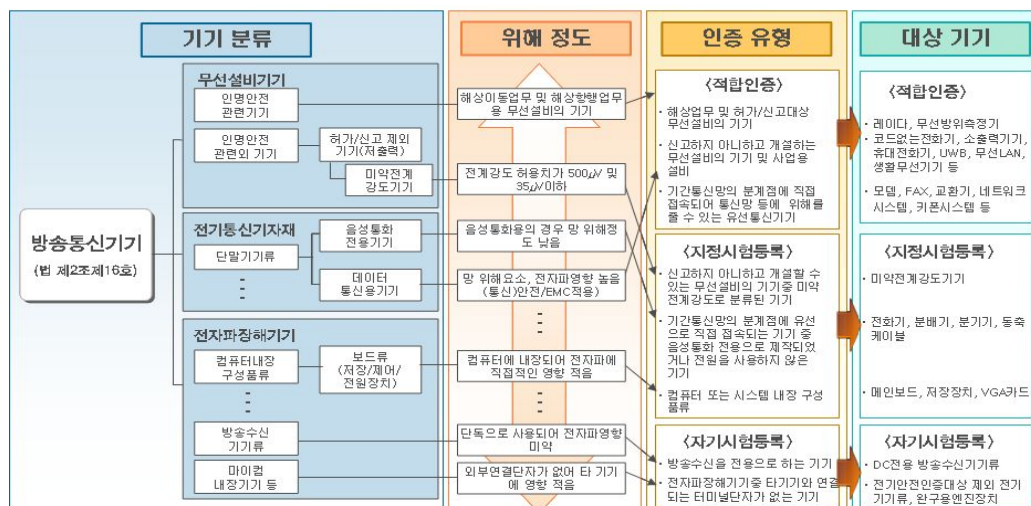
우선 후속입법에서 방송통신기기의 위해성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 원칙 규정하고 구체적인 분류를 시도코자 하였다.

여기서 위해성의 개념은 전파환경, 방송통신망 및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파 혼·간섭을 초래하거나 망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와 사용자에게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주요 위해성의 지표로는 ① 전파 및 방송통신망환경에서 기자재 전기적 출력정도, ② 용도(산업용·일반용) 및 사용 환경, ③ 망의 전기적 위해 가능성 ④ 사후관리 실시 결과를 통한 경험적 요건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음 (그림 3-1)과 (그림 3-2)는 인증유형 분류기준의 원칙과 도출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3-1) 인증유형 분류 원칙



(그림 3-2) 인증유형 분류기준 도출과정



아울러 후속입법에서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대상기기의 범위를 규정코자 하였는데 1차적으로 적합인증대상은 방송통신망 및 전파환경의 위해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망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 홈네트워크용인 경우로, 적합등록대상중 지정 등록대상은 별도규정없이 적합인증(강한규제) 및 자기시험등록 대상(약한규제) 이외는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완화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외 적합등록대상 중 자기시험등록 대상은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다른 기기와 접속기능이 없는 것 시험·검사 등 특정용도에 한정하였다.

다음 (표 3-1) 및 (표 3-2)과 (표 3-3)은 인증유형 재분류에 따른 분류기준과 대상 기자재에 대한 예시이다.

(표 3-1) 적합인증대상의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안)	대상기자재 예시
적합 인증	1. 전파를 방사함으로써 망 위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의 미) 전파를 방사하는 기능이 있는 의도적 방사체 중 특히 망 위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 혼신 및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출력이 10mW 를 초과하는 기자재 ·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기자재 (37종) · 노인 어린이등 사회적 약자 보호용도의 것 · SDR, CR 등 소프트웨어 제어 기자재 · 의료용 및 체내이식 등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자재 · 화재, 방범, 긴급호출, 비상통신, 긴급구조 등 안전용 기자재 ·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 업무용 기자재

2.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자재로 망 위해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의 미) 방송통신망(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망 또는 자가망)이나 전송망(전송망 사업자의 망)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하는 유선시스템 및 단말기기 - 교환기 등 망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스템류와 다중회선기기 및 각종 복합기능을 가진 기자재 - 통신설비 유지보수용 시험기기, 회선장애감시, 가입자 보호기기 등 위해방지와 관련된 기자재 - 원격 점검, 제어, 비상통보용 기기 등 안전과 관련된 관련 된 기자재 - 케이블 모뎀 등 전송망에 직접 접속되는 사용되는 이용자 단말용 기자재
3. 구내에 방송통신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의 미) 구내에서 가정용(홈네트워크 용)으로 방송통신망(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망 등)이나 전송망(전송망 사업자의 망)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하는 유선시스템 및 단말기기 - 홈네트워크 구성설비 및 안테나 설비 - 텔레비전 공시청 안테나, 셋탑박스 등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u>전파환경</u>, 인체, 인명안전 또는 재산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의 미) 제1호부터 제3호이외에 전파 환경 위해, 인체, 인명안전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 10mW 이하 출력기자재 중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 - SAR, 기타 방법 방재용 기자재 - 전파 수신전용 수색 구조용도 기자재

(표 3-2) 적합등록대상의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안)	대상기자재 예시
적합 등록	지 정 시 험 등 록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자재이외의 위해의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 2. 다른 기기의 장애를 주는 전자파를 발사하거나 전자파 장애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성능저하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기기자재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합등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의 미) 적합인증대상을 제외한 기자재 - 적합인증대상을 제외한 10mW 이하의 소출력 기자재 -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2차 또는 3차 접속 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을 제외한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정보기기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자재
	자 기 시 험 등 록	1.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자재 2. 다른기기와 접속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데이터를 출력·저장·제어하는 기자재 3. 시험·검사 등 특정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기자재 4. 기타 위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자재	(의 미) 위해가능성이 낮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 - 디지털 전자액자, 전파시계 등 - 산업용도 기자재, 시험·검사용 계측기

(표 3-3)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 기기 예시

구분	대상기자재
적합인증대상	선박용레이더, 해상이동전화,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개인이동통신용단말기(셀룰러폰·PCS폰·3G폰), 다중회선기기, 비상통보기기(화재감지·가스감지·침입통보용), 회선장애감지기, 흡오토메이션기기, 인터넷 전화기, 신용카드조회단말기, 원격검침

적합 등록 대상	지정시험 등록대상	용 통신기기 등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마우스, 키보드, MP3, PMP, 디지털카메라, GPS 수신기,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등
	자기시험 등록대상	전자액자, 산업용컴퓨터, 산업용 통신 및 제어기기, 계측기, 고속철도용 통신기기 등

다. 인증절차 간소화

다음으로 현행 4가지 유형의 정부 인증절차가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절차로 간소화됨에 따라 각종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적합인증의 신청절차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형식 검정·등록·승인, 전자파적합등록절차와 유사한 신청·변경절차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적합등록은 적합확인 증명서 제출, 서류 보관기간 등 규정(5년) 하였다. 아울러 이외 변경절차는 적합인증에 준하였다. 다음 (그림 3-3)은 인증절차 간소화 사항을 도해한 것이다.

(그림 3-3) 인증절차 간소화 개요



또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 가능토록 하였는데 정보의 공개범위는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영업비밀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향후에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300여종 세부 기자재 목록을 적합인증·적합등록 기자재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외 적합인증 및 등록의 표시방법, 시행령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 절차와 각종 제출서류 양식을 규정하는 것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적합성평가 관련 정보의 범위, 내용 절차등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3-4)는 2009년 12월 현재 인증유형 분류 및 간소화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4) 인증유형 재분류 및 절차 간소화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국내외 표준, 규격, 기술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제77조의2(적합성평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7·제38조의14·제38조의15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건축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기준 8.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9.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표준 10.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등과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의3(적합인증의 대상 등)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방사함으로써 망 위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2.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자재로 망 위해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3. 구내에 방송통신을 위하여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와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및 그 부속 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환경, 인체, 인명안전 또는 재산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②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
--	---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적합인증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 세부대상 기자재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제77조의4(적합등록의 대상 등) ① 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적합등록을 하려는 자는 적합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적합확인증명서 2.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등록신청자에게 적합등록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 2 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하는기자재등”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기자재 2. 다른기기와 접속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데이터를 출력·저장·제어하는기자재 3. 시험·검사 등 특정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기자재 4. 기타 위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기자재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서류의 비치기간은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77조의5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등록 세부대상기자재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2. 신제품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도입

가. 개 요

최근 디지털 융복합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기기의 개발·출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증기준 제정후 인증을 받아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의 짧은 생명주기로 인해 시장에서의 상품가치가 급락한 경우가 크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별 「제품 인허가기준 예비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작년도 전파법 개정안에 신제품 잠정인증제도의 도입근거를 반영한 바 있다. 신제품 잠정인증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 표(3-5)와 같다.

(표 3-5) 신제품 잠정인증제도의 주요골자

구분	주요 내용
대상기기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방송통신기기
운영절차	기기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예 : 안테나 전력, 불필요한 주파수 크기 등)을 적용하여 잠정인증을 실시
인증조건	정해진 기간동안만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설치조건 및 지역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
정식인증	해당 기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나.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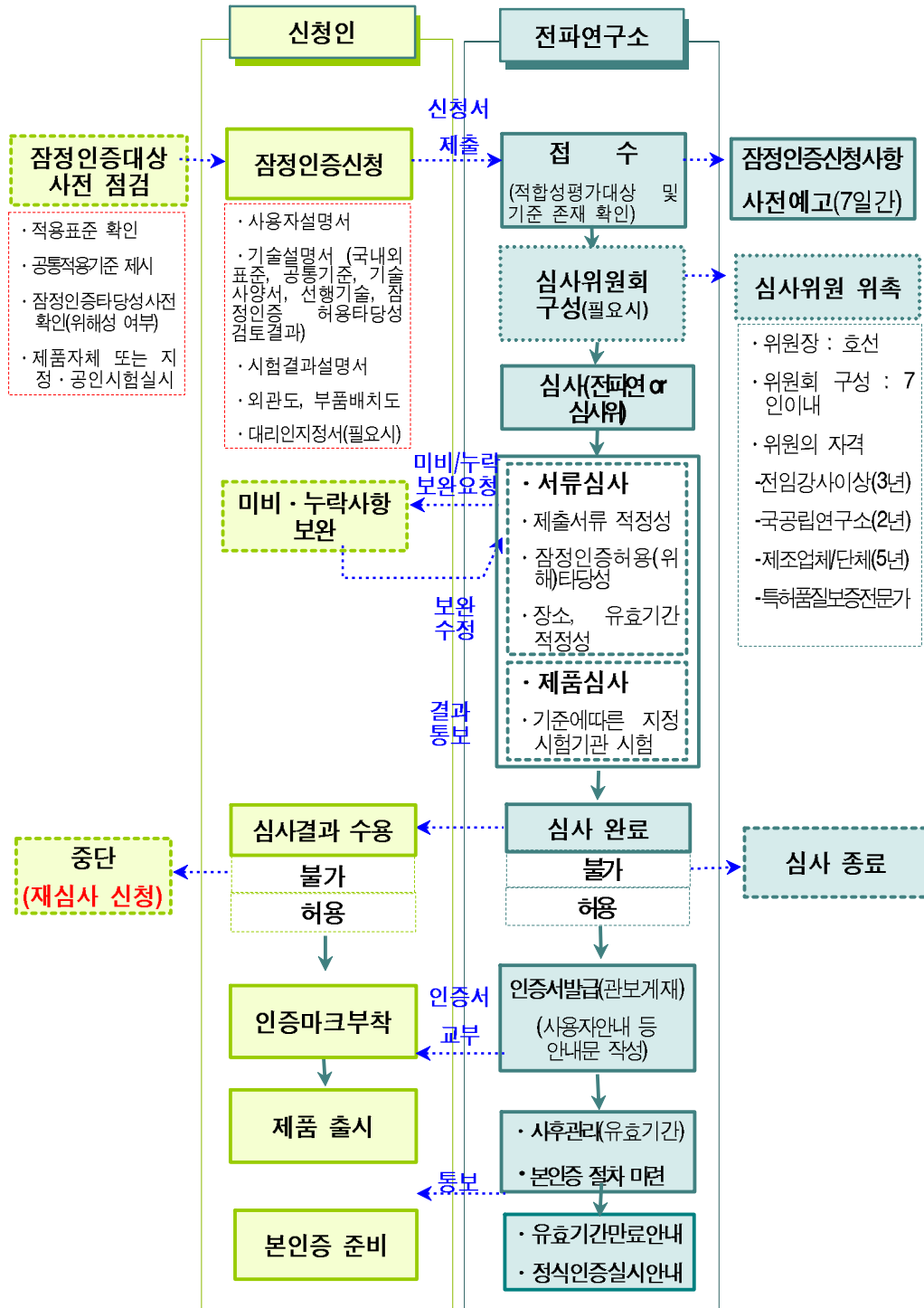
잠정인증제도의 운영은 적합인증과 동일하게 인증신청자의 신청→인증심사→인증서 교부→유통 및 판매 절차를 거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심사절차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되, 해당 심사를 전파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정인증 기자재의 관리는 첫째, 사전적 관리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둘째 사후적 관리로는 잠정인증기자재의 사후관리는 적합인증이나 등록 기자재와 유사한 사후관리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후관리 과정에서 잠정인증 기자재를중점 사후관리 기자재 또는 의무적 사후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유효기간(최대 3년)이 소멸한 불법기자재 유통시 개선, 파기, 수거,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징역 벌금 등 벌칙부과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그림 3-4)는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개요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3-4) 잠정인증제도 운영절차



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음 (표 3-6)는 2009년 12월 현재 잠정인증운영절차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6) 잠정인증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u>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⑦</u>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않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방송통신기자재등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기자재등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77조의6(잠정인증 신청 등) ①</u>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잠정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용자설명서 2. 기술설명서 3. 시험결과 설명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허용할 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한 때에는 잠정인증신청자에게 잠정인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의2 제8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

	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잠정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잠정인증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

3.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마련

가. 개 요

현재 적합성평가 면제기기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절차 없이 자유로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나, 해당 면제기기는 별도 관리방법이 없이, 인증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유통실태와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00년 이전에는 「요건면제 수입확인등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전파연구소가 면제 품목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였으나, 규제완화조치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 영세업체들이 저가의 불법 역수입 기기를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용으로 제조되어 인증면제를 받은 일부 정보 기기들이 국내에 역 수입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는 AS등이 불가하여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절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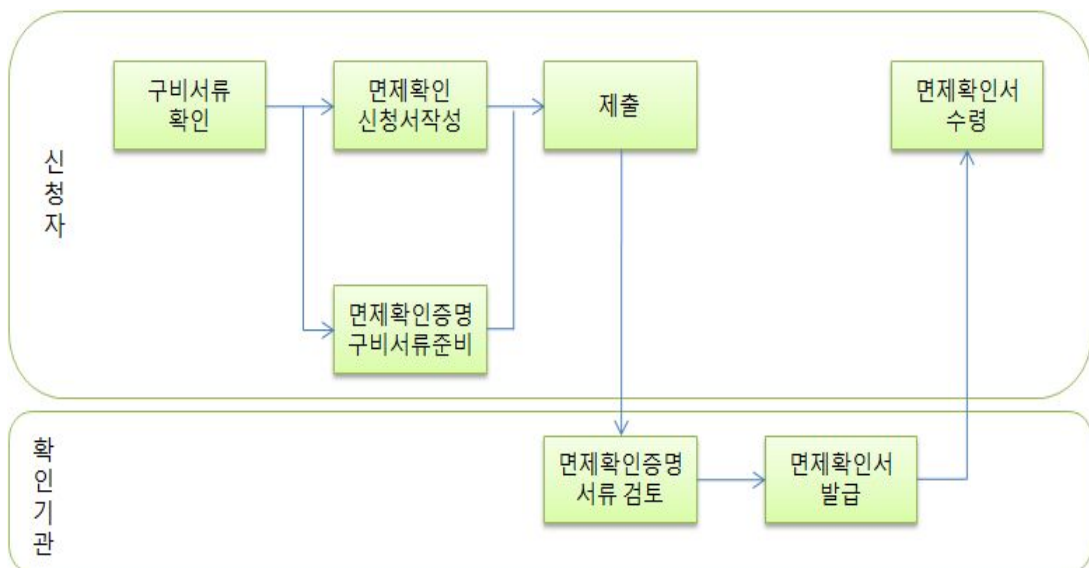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작년도 전파법 개정안에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도입근거를 반영한 바 있는데 전파법 개정안에서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근거를 두고, 후속입법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로 면제확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 유사입법례인 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였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인을 위한 세관과 인증기관간 공조체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입제품은 관세청과 인증기관인 연구소가 공조하여 수입 제품이 인증면제 대상인지 상호 확인하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상호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면제확인대상기기의 유통규모 파악 및 불법 유통여부 감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 (그림 3-5)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개요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3-5)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개요



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음 (표 3-7)는 2009년 12월 현재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도입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7) 잠정인증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 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공산품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법 제58조의3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이란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기자재등이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53조3제1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자에게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세부 면제대상기자재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근거 마련

가. 개 요

국내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체계는 심사와 평가기능의 분리·운영이 원칙인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미국 등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들로부터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심사체계를 갖춘 전문심사기구를 지정·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효과적 MRA 대응에 기여할 목적으로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근거 마련

이에 따라 작년도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지정시험기관 신청심사시 전문심사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파법의 근거에 따라, 1차적으로 그간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전파연구소를 전문심사기구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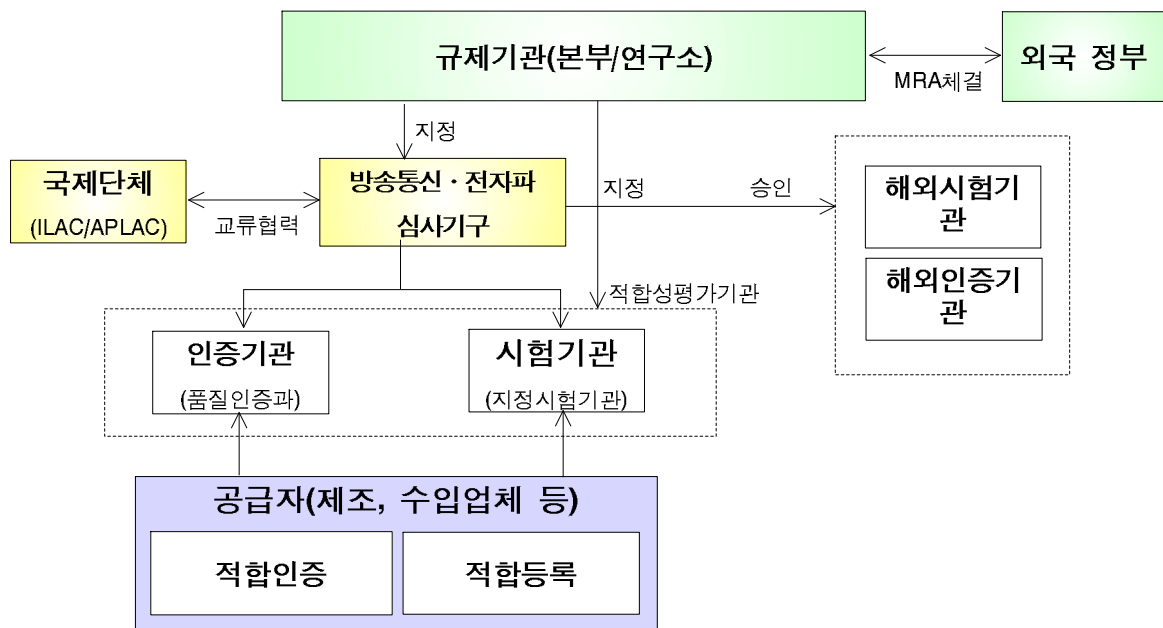
아울러 전문심사기구의 운영원칙과 관리·감독권 역시 규정하였는데 우선 전문심사기구는 국제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체계와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적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및 전자용품 분야는 해당 제품의 시험 인증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는 2009년부터 전자파 및 통신분야의 국가간 상호인정업무(시험분야)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로 ACLASS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적합성평가업무 지정수행기관(Notified Body)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별로 공인 심사기구를 두도록 하고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동향을 고려해 볼 때,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의 설치·운영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로는 우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문심사기구 운영을 위한 연구소 조직 개편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즉 국제기준등에 따르면, 적합성평가기관 심사기구는 대내외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하나의 실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의 전문심사기구 역시 전파연구소내 별도 조직화하여 기존의 적합성평가업무인 품질인증업무와 분리하여 관련 심사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전문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심사규정 및 세부심사기준도 제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체제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제도 운영초기에는 관련 전문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원 등록·관리와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심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재 준회원상태인 국제 적합성평가심사기구 (APLAC, ILAC)에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여 국내 방송통신심사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3-6)는 적합성평가 전문심사기구 운영구조도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3-6) 적합성평가 전문심사기구 운영구조도



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음 (표 3-8)는 2009년 12월 현재 적합성평가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8) 전문심사기구 설치·운영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의13(전문심사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58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는 전파연구소에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국제표준화 기구의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국제적 심사체계와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기구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지정시험기관 3진 아웃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 제도 정비

가. 개 요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전파법령 개정으로 사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만 하고 출시되는 기기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가 개편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판단되므로 우선 시험기관이 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체계 정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량·불법기기의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조치권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다.

나. 지정시험기관 관련

작년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시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위반이 누적된 시험기관을 배제하기 위해 「시험기관 3진 아웃제」와 비 적격자의 무분별한 시험기관 양수 합병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험기관 3진 아웃제」의 판단근거인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의 유형을 구체화 하였으며,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제」운동을 위한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험기관 3진 아웃제」운영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으로는 시험협교육 미 실시, 품질문서 관리 부실 등 일상적 운영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이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위반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시험기관 3진아웃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으로는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시정명령 미이행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시험절차, 측정설비, 소속직원의 품질관리 및 시험능력, 서류 보관의무(5년) 위반 등 지정시험기관의 기본적 운영조건과 관련된 사항의 위반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위반시 시험업무 정지를 명하고 이를 3회 위반할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제」운동을 위한 심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심사절차에 준하도록 하여 규제신설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 향후에는 시험기관 3진아웃제 도입에 따른 시험기관 의무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하는 방안과 정기검사·수시검사 체계 이원화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정기검사시 수수료 부과방안 등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 방송통신기자제 관련

작년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불량·불법 방송통신기자제의 재신청 금지기간을 최대 1년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금지기간의 적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따라 재신청 금지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우선 고의성이 없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행 등 과실적 성격을 지니는 위반인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등 고의적 성격을 지니는 위반인 경우에는 1년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 불량·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조사·조치 시험의 방법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음 (표 3-9)과 (표3-10)는 2009년 12월 현재 지정시험기관 및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9) 지정시험기관 사후관리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 ① <u>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③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u>

	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4(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2년이 경과하였거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7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58조의8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③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117조의2를 준용한다.
제58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제77조의15(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58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제77조의15 관련)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최근의 기준에 따라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 나. 시험의 유형, 범위, 업무량 및 지정범위 등에 적합한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수립·유지할 것 다. 시험방법은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한 때에는 유효성을 입증할 것 2. 측정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험에 사용되는 설비는 시험결과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할 것 나. 시험설비는 정기적으로 예방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할 것 3. 직원의 품질관리 및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4. 시험성적서 등 시험관련 서류 및 기기의 시험을 위해 제작된 구조물 또는 프로그램 등(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시험 후 5년간 보관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할 것
---	---

(표 3-10)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7조의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7일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이 법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사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등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등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또는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 또는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시험할 때에는 당사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등을 조사 또는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 부적합 정보 보고제도 도입

가. 개 요

부적합 정보보고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 주도의 시장감시가 인력과 예산 등의 이유로 일부 제한되는 반면, 향후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자 적합선언(SDoC) 제도 도입 등으로 부적합 기기의 유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의 제품품질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자율적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파법 개정안에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절차나 방법은 업계의 규제신설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후속입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권고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적합 정보보고제도 취지와 운영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부적합 정보 보고제도 운영절차

부적합 정보 보고제도 운영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신고대상과 시기는 제조자, 수입자 등이 인증을 받은 기기가 인증기준에 동일하지 않게 생산·유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이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고 후 관련 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조·수입·유통업체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환급·교환 등 조치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미 보고 기업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함 미보고 기업 및 관련 제품 정보는 인터넷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본법의 결함보고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 사항을 전파법 개정안에 적절히 수정하여 반영한 것이다.

향후 부적합 정보보고 가이드라인에는 부적합 기기 제조·유통 기업 또는 해당 부적합 기기에 대한 정보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부적합정보 신고제도 관련 기업의 책임 및 세부이행에 관한 사항, 부적합정보의 내부보고 절차, 책임자 지정 등 기업 내부 정보보고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음 (표 3-11)은 2009년 12월 현재 부적합정보보고제도 운영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나, 현재로서는 전파법에 부적합정보보고제도 운영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운영은 부적합정보보고제도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 규정은 신설하지 아니하였다.

(표 3-11) 부적합정보 보고제도 운영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채등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도 규정 없음>

7.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절차 명확화

가. 개 요

2008년도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는 APEC TEL MRA 2단계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입법 예고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한·미간에는 1단계 MRA를 체결('05.5월)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국가간 MRA에 따른 국내 인증업무를 해외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MRA 2단계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데, MRA의 체결 근거인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제2항은 외국 시험기관을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외국 인증기관이 국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전파법 중심으로 적합성평가제도가 개편되면서, 해당 사항들에 관한 것들을 정비하였다.

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절차

작년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협정에 따른 외국 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외국정부와의 MRA 체결 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전파법은 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거의 신설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MRA의 체결절차와 협정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우선 MRA 체결절차는 양자간 협정(FTA)나 다자간 협정(APEC TEL등)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부간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였고 협정 내용은 현재 APEC TEL이나 국가간 FTA 협상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기관, 기타 당사국간 협의사항으로 정하였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MR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위한 산관학연의 MRA 추진 협의체 등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표 3-12)은 2009년 12월 현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절차 논의내용을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표 3-1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09.12)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7조의16(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①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절차는 외국 정부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2.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인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 4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의 국제활동 분석연구

제 1 절 NIST의 국제 적합성 평가 및 MRA 워크숍

1. 개 요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은 3~4년을 주기로 전 세계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담당자를 초빙하여 최신의 국제 적합성평가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동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는 5월 5일(화)에서 5월 7일(목)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미국 게이더스버그 NIST 대강당에서 각 국의 방송통신기기 분야 인증제도, 국제인정기구의 현황 및 미래, 각 국의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제도 및 현황, 세계의 적합성평가 체계 변화 및 MRA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상호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본 워크숍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본 연구 과제의 별책 보고서로 발간한 「국제 적합성평가제도 및 MRA 워크숍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에는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신기로 한다²⁾.

2. 주요 내용

가. 미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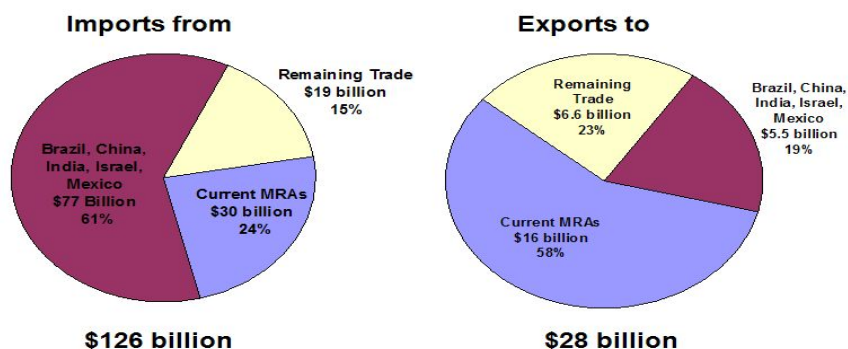
미국은 향후 통신 규제 전망 중 광대역과 관련해서 FCC 의장은 광대역 발전 전

2) 제4장의 제1절의 내용은 2009년 5월5일부터 5월7일까지 개최된 미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국제 적합성평가 및 MRA 워크숍 참석한 전파연구소와 본 연구기관의 출장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다.

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2008 Farm Bill), 경기회복 및 재투자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해 FCC는 2010년 2월 17일까지 국가 광대역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량 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상업 및 공공 안전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SD, CR과 같은 기술, 복잡한 기기 및 시험 방법 개발, RF 노출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방송통신 분야의 MRA에 관련하여 미국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 Act, 1979년 제정 1994년 개정)에 의해, USTR은 표준 관련 활동에 대한 MRA 체결 시 미국 내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국과 협상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 대만, EFTA, EU,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수출입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브라질, 중국,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과도 체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음 (그림 4-1)은 2008년도 미국의 통신 및 EMC 분야 수출입 현황이다.

(그림 4-1) 2008년도 미국의 통신 및 EMC 분야 수출입 현황



나. 유럽연합(EU) 동향

EU는 글로벌 경제 시대 적합성 평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1980년대 초 시험 보고서에 대한 상호 인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EU 시장 통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하여 왔고 회원국 간의 법령을 조화시키기 위해 지침(Directive)을 채택하

였다. 규제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의 규제 확대, 경제공동체의 확산, 큰 국가들의 규제 체계가 작은 국가들로 확산, 관료적 형식주의와 같은 지역적인 행정 절차 존재, 시장 감시에 대한 관심 부족, 직통적인 산업 국가들의 규제 수준 저하, 신흥 발전 국가들의 규제 수준 확대 등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이런 무역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 규제, WTO-TBT, 적합성 평가에 대한 MRA, 국제 표준 제정 등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적 규제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 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의 경우 사후 관리 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의 새로운 법체계(NLF) 및 R&TTE에 대한 검토와 시장 감시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침(Directive)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제조자들이 지침 제정 초기의 의도대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시장에서 위험한 제품이 계속적 발생, 경쟁 왜곡의 위험, 차별적 대우, 적합성 마킹 시 신뢰 부족, 지침 이행 및 집행 시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법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를 통해 모든 회원국 및 EFTA의 공통적인 시장 감시 사안들을 마련하고자 Regulation 764/2008, Regulation 765/2008, Decision 768/2008/EC를 발표하였으며('08.8.13)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고 특히, R&TTE 지침을 재검토하여 EC에서 지침 개정을 제안할 예정인데 영향평가에 대한 외부 기관의 연구가 이미 시작되어 2010년 4/4분기 채택을 목표로 올 해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02년 EU-일 MRA가 발효되어 이행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번역된 일본 기술 기준 및 문서에 대한 언어적 이해 부족과 문화·관습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으므로, 향후 일본의 관련 기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표 4-1) EU와 일본의 방송통신분야 규제 비교

	일본	EU
제품	- 무선기기(Specified Radio Equipment)	- 무선기기(Radio Equipment)
범주	- 단말기기(Terminal Equipment)	- 통신단말기(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관련	- 전파법	- R&TTE Directive

규정	- 통신산업법	
담당 기관	- 무선, 통신기기 : MIC - EMC, LVD : MIC & METI	- 각 회원국의 기관
적합성 평가	- 형식 인증(Type Certification), 기기 인증(Equipment Certification), 검사(Inspection), 승인(Approval), 공급자적합 선언(SDoC)	- 적합선언(DoC), 공인기관(NB)의 전문가의견

다. 캐나다 동향

캐나다는 시장 감시 현황과 관련하여 시장의 상품이 IC(Industry Canada)의 규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경쟁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적합성평가기관, 제조사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APEC TEL MRA와 CITEL MRA를 체결함에 따라,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시장 감시를 교구하고 있다. IC는 인증 받은 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이 발견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적합성 관련 사안 발생 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 사례로, 캐나다 시장에서 뽑아온 검사 샘플이 SAR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 추가 샘플 검사, 관련자들에게 통보, 부적합 선언 및 무선기기목록(Radio Equipment List)에서 제외, 제조자·판매자의 자발적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규제 기관 및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APEC TEL, CITEL, 워크숍, 양자회의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대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호주 동향

호주의 정부 규제기관은 ACMA(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로 방송·통신·EMC·EMF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NAT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of Australia)는 비영리조직으로 호주의 단독 인정기관이다. 인증제도 중 C-tick은 ACMA EMC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로 EMC 방출 표준 관련 의무사항을 토대로 하며, A-tick은 통신기기 라벨 공지와 EM

C 및 EMR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C-tick은 2001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며, 통신기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에 적용가능하며 뉴질랜드에서 A-tick은 EMC 적합성만을 나타내는데 적용되고 있다. 기기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Level 1은 위험성이 낮아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Level 2는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Level 3은 위험도가 높은 기기에 해당하므로 공인시험소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MR-SAR과 무선통신 승인과 관련하여 Level 3 해당기기에 대해 SAR 시험이 실시되는데, NATA MRA에서 인정한 시험소에서 ACA EMR Standard 2003에 근거해 시험해야 하고 GSM, WCDMA, Cordless의 표준 및 요구사항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호주의 GSM/WCDMA/Cordless 제품 표준 및 요구사항

	GSM	WCDMA	Cordless
적용 표준	- AS/ACIF S042.1:2006 - AS/ACIF S042.3:2005 - AS/NZS60950-1:2003 - EMR Standard 2003+ - Amdt 1:2007	- AS/ACIF S042.1:2005 - AS/NZS 60950.1 - AS/ACIF S003	- AS/NZS 60950.1 - AS/ACIF S002 - AS/ACIF S004 - AS/NZS 4821의 RF 요구사항 - EMC나 EMR(SAR) 요구사항 적용
제출 서류	- 시험 성적서 사본 - 사용자 매뉴얼 사본 - 제조업자 세부사항 - IMEI 공증 -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버전 세부사항 - 제조업자의 모델번호 세부사항 - 시장 모델 번호 세부 사항	3GPP 또는 ETSI 상호 운용성 시험성적서 - 이용자 매뉴얼 사본 -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버전 세부사항 - 제조업자의 모델번호 세부사항 - 시장 모델 번호 세부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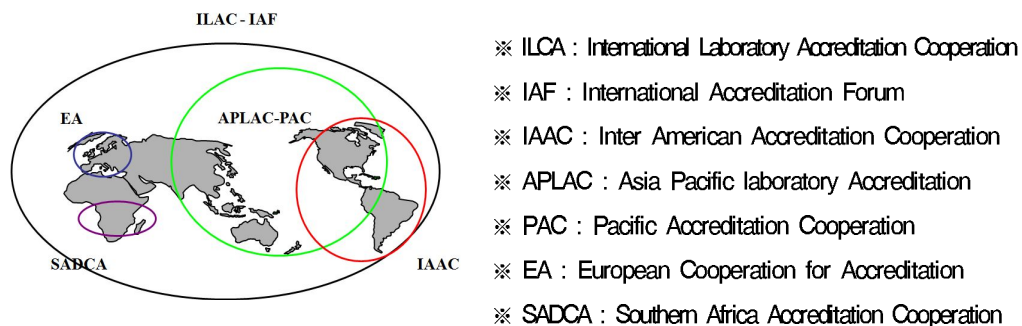
마. 브라질 동향

브라질의 MRA와 인증 규정과 절차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MRA와 인증은 일반통신법(General Telecommunication Law) 9.742와 일반규정 242를 따르며, MRA를 체결하기 위해 현 법체계로는 문제가 없어 MRA 1단계 이행 단계에 있으며 통신 제품 분류는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되고 있다. 카테고리 1은 공공 통신망과 관련되는 터미널기기이며, 카테고리2는 카테고리 1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무선주파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카테고리 3은 카테고리 1과 2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네트워크 상호운용이나 안전, EMC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규정이 필요한 제품 들이다.

바. 국제적 인정(accreditation) 시스템 동향

인정(accreditation)의 국제적 시스템은 적합성평가기관이나 시험소의 적합성평가 수행능력에 대한 제3자 입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인정과 관련된 국제 조직으로는, ILCA, IAF, IAAC, APLAC, PAC, EA, SADCA 등이 있다. 다음 (그림 4-2)는 국제적 인정체계 조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 국제적 인정체계 조직현황



ISO/IEC Guide 65 개정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ISO/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상호인정을 촉진하고, 지역

적합성평가체계 및 시험을 위한 국제표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의 인증이나 조사, 시험과 관련되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ISO/IEC Guide 65 개정은 CASCO 자문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몇몇 중요한 사안들은 WG-29의 개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SO/IEC 17025 및 ISO/IEC 17021과 협조 하에 이루어지며, 제품의 표준이 적용될 것이고 참여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 미국 등 총15개국이다.

제 2 절 APEC TEL 기술동등성 협정 논의

1. 개 요

APEC TEL의 기술동등성 협정 논의는 2005년부터 전개되어 2009년 현재 4년여 동안 논의되고 있다. 기술기준 동등성 협정의 요지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수용하는 MRA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자국이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시험·인증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국가별 기술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2008년도에는 기술기준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절차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고, 2009년 현재 협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APEC TEL의 기술기준 동등성 논의동향에 대하여는 본 연구 과제의 별책 보고서로 발간한 「APEC TEL 기술기준 동등성 논의동향」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2009년도 APEC TEL 기술기준 동등성 협정 논의동향을 요약하여 실기로 한다³⁾.

3) 제4장의 제2절의 내용은 2009년에 2차례 걸쳐 개최된 APEC TEL MRA TF의 논의내용을 주관기관인 전파연구소로부터 입수하여 작성되었다. 모쪼록 자료 입수 및 작성에 협조해주신 전파연구소의 MRA 담당자 분께 감사드린다.

2. 주요 내용

2009년도에는 먼저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 절차(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equivalence)’와 관련하여 기술기준 동등성 요청기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현재는 ‘요청 후 90일 이내(within three months of the request)’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간 규정은 해당기간 중의 동등성 관련 주요 업무 수준과 범위, 기술기준 동등성에 대한 검토 및 결정에 걸리는 시간, 규제단계(regulation step)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규정하여야 함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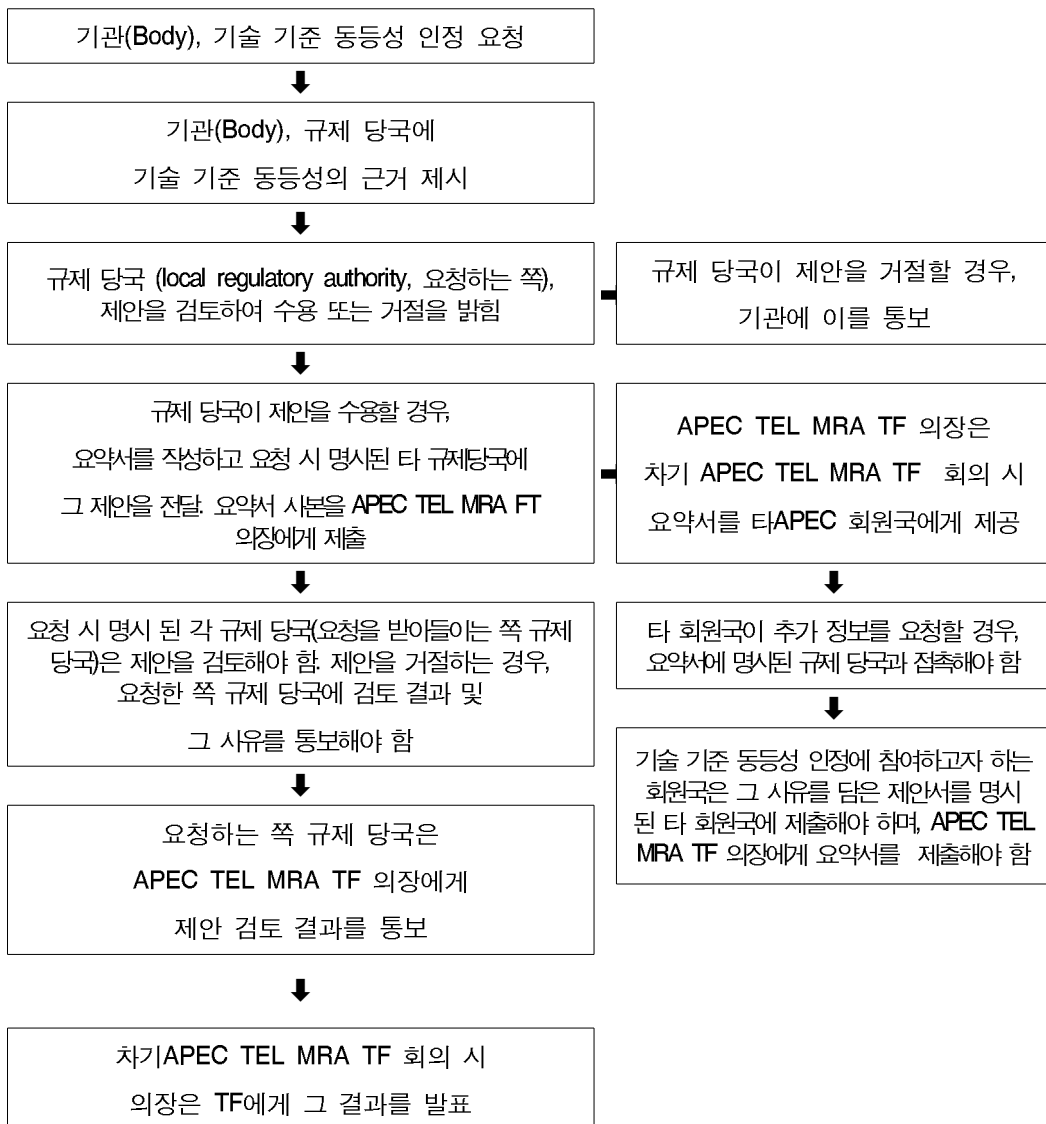
두번째로는 당사자국(party) 정의와 관련하여 기술기준 동등성의 협약에 참가하는 (endorsing party) 모든 APEC TEL 회원국으로 범위를 한정하느냐, 아니면 협약에 참가하여 이행(participating party)하려는 회원국으로 할 것인가?의 범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는 기술기준 동등성 절차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내부프로세스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었는데 기술기준 동등성을 요청하는 당사자(requestor)의 자격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상대국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는 우체통(mail box) 역할만 하게 되어 본 협정의 취지와 달리 본 협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만, 규제당국에서 개별적인 내부 검토절차를 유지하더라도 상대국에 기술기준 동등성의 검토를 요청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제당국의 업무량(workload)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였다.

네 번째로는 기술기준 동등성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기술기준 동등성 협정에서 기술기준 적용범위의 목록을 작성하더라도 규제당국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의 최종 판단기관이 다를 수 있고 기술기준의 잦은 개정에 따라 기술기준 동등성을 비교·검토가 잦은 관계로 각 국의 내부적인 검증 절차는 MRA TF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각 회원국의 기술발전과 인증제도의 완화정도가 다르므로 개별 국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기술기준

의 동등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이 직접 하지 않고 반드시 규제당국을 거쳐서 통보하도록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음 (그림 4-3)은 국가간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절차를 도해한 것이다.

(그림 4-3) 국가간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절차



제 5 장 국내외 전자파 규제 현황 연구

제 1 절 개 요

오늘날 방송통신분야의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유·무선 통신 정보기기 등의 급속한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화 된 전기·전자기기와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기기들의 등장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던 생활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는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선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각종 융·복합화 된 디지털기기들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기기 간의 상호 간섭에 의해 무선통신의 장애나 전자기기의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기들 간의 전자파 장애 문제를 완화시키고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전자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전자파장애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 권고안을 오래전부터 제정하고 각국에서 이러한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자국의 규제체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는 이러한 전자파 적합성(EMC) 규제의 국내외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⁴⁾

제 2 절 해외 EMC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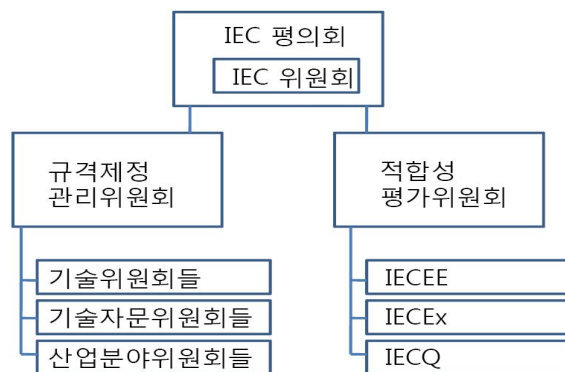
1. 표준화 기구에서의 EMC 표준화 현황

국제적으로 전자파적합성(EMC) 표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4) 제5장의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EMC 규제체계 통합방안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수탁보고서, 2008.12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EMC 대책 부품·기술 시장동향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기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C) 산하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 CISPR)와 기술위원회77(Technical Committee : TC77)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표준화에 관한 제반문제와 전기 및 전자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규격 형식의 권고(Recommendation)를 포함하는 간행물을 보급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표준화 및 규제는 국제무선장해 특별위원회(CISPR) 와 TC77에서 작업한 표준 규격에 근거하고 있다.

이외에도 UN 산하의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과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SO)에서도 EMC 관련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림 5-1) IEC 조직도

가. IEC/CISPR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는 무선장해 (Radio Interference)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1934년 최초 공식회의를 개최한 이후 전자파장해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해 오고 있다. CISPR의 목적은 무선장해 문제 해결 및 관련 표준화 제정을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무선장해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CISPR는 6개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 : SC)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은 SC 가 있다.

(표 5-1) CISPR의 분과위원회(SC)별 관련 분야

SC 구분	관 련 분 야
A	전자파 장해측정 및 통계적인 방법
B	ISM 장비, 고전압기기, 전력선 또는 건인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 측정
D	자동차 (가솔린 및 전기) 의 전자파 장해
F	가정용전기기기, 공구 및 전등류에 대한 전자파 장해
H	무선주파수 보호를 위한 제한치
I	정보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오디오 · 라디오 수신기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나. IEC/TC77

1973년 6월에 설립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의 TC77은 전자파 내성 (Electromagnetic immunity) 분야 기본규격(Basic Standard) 및 일반규격(Generic Standard) 의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IEC/TC77 업무 분야

명칭	관 련 업 무 분 야
IEC/TC77	· 전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자파내성에 대한 기본 및 일반 표준 · 저주파영역에서의 전자파 방사 ($f \leq 9$ kHz, 예 고조파 및 전원변동) : 기본, 일반 및 제품(제품군) 표준 · 고주파 영역에서의 전자파 방사 ($f > 9$ kHz) : 전력선 통신 CISPR 10 (1992)에서 다루지 않는 전자파장해에 대한 CISPR 와의 협력 · ACEC (Advisory Committee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와의 협력 하에 관련 표준의 제정

다. 기타 표준화 기구

IEC/CISPR과 IEC/TC77 이외에도 UN 산하의 국제통신연합(ITU-R)과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도 전자파장해와 관련된 표준화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TU는 1865년에 창설되어 현재 17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신·전화,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관한 규칙의 제정, 권고안의 작성, 정보수집, 발행 및 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해 오고 있다.

ITU-RS에서는 주로 스펙트럼 공학과 관련한 분야를 다루고, ITU-TS는 「전자파방해 환경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통신기기의 내성 및 전기적 안정성, 라디오주파수 및 과도파 간섭, 낙뢰에 대한 접지와 보호에 관한 연구,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 간섭에 관한 지침에 대한 연구이며 연구결과는 K Series 권고(Recommendation), 결의안 (Resolution) 및 핸드북 등의 형태로 제안된다.

2. 주요 국가별 EMC 규제현황

가. 미국

미국의 전자파 규제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담당하고 있다. FCC는 미국 통신 법에 의거하여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으로,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다. 민간 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10kHz~3,000 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과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를 규제하고 승인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무선전화를 비롯하여, 산업·의료·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및 주변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 사용 중에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미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FCC의 규제 기준은 허용치가 CISPR와 일부 차이가 있으며 주파수에 따라서는 보다 엄격하거나 앞서 1GHz 이상의 전파 노이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 규격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FCC는 전파, 팩스 및 모뎀 등 일부 통신관련 제품에 적용되 어오던 기술 규격과 일치 여부에 따른 FCC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고 통신관련 제품들의 기술 표준을 정하는 절차를 민간에게 위임하며, CPE 제품 업체들에게 요구 하던 FCC 인증제도를 철폐하는 등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시험과 인증의 상호 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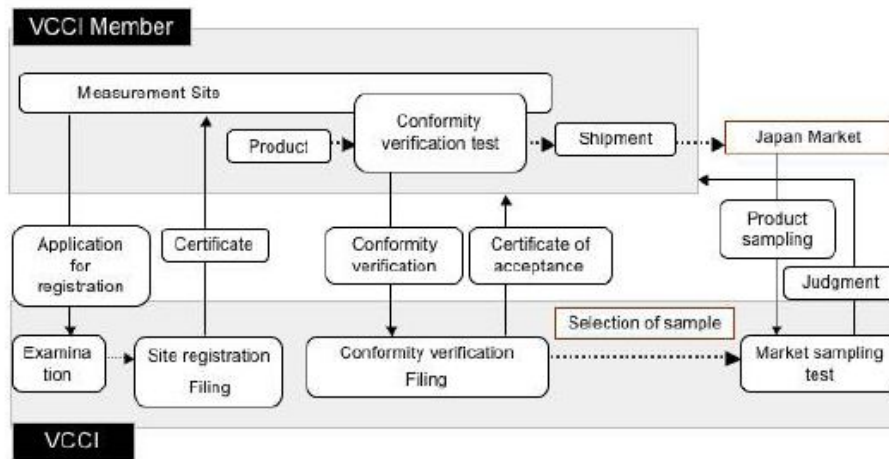
나. 일본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에서 전자파시험을 통한 강제적인 법적 규제와 일본 전자파장해 자주규제협의회(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실시하는 비강제 규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 해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기용품의 안전성과 전자파 환경 양립성에 대하여 제 3자 검사기관을 이용한 자기확인제 방식을 통해 신고 및 적합성 검사를 하는 자율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보기술장치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에 우정성의 협조 하에 일본 내 4개 민간 단체인 전자공업진흥회(JEIDA), 사무기계공업회(JBMA), 전자기계공업회(EIAJ), 통신기계공업회(CIAJ)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자파 자율규제협의체(VCCI)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VCCI의 전자파 규제 절차는 다음 그림 (5-2)로 요약된다.

(그림 5-2) 일본 VCCI 전자파 규제 절차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CISPR-22 규격을 따르고 있고, 처음 신청 시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해야 하며, 제품은 VCCI 에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등록을 한 다음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한 다음에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대상기기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제1종 정보처리장치(Class A)와 제2종 정보처리장치(Class B)로 나뉘어지며, 등록업체는 제품 취급설명서와 카달로그 등에 VCCI가 지정한 기술 형식에 따라 Class A에는 라벨을 붙이고 Class B에는 마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VCCI의 전자파 규제 대상기와 품목은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일본 VCCI 전자파 규제 대상기와 품목

대상기기	적용품목
제1종 정보처리장치 (Class A)	상공업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기 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기기
제2종 정보처리장치 (Class B)	• 사용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장비 : 배터리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는 휴대용기기 •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통신단말장치 •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 워드프로세서 또는 주변기기 • 팩시밀리

VCCI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VCCI에 등록된 기관에서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적합확인시험이 통과 된 후에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제품의 적합성 확인은 시장임의 추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그 결과를 제조사에 통보하는 동시에 기관지인‘VCCI 소식지’에 게재하고 부적합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부적합 판단 사실을 공개한다.

다. 유럽연합

유럽에서는 EU의 집행위원회에서 규정하여 적용 중인 전자파장해의 EMC 지침(최초제정 지침 : 89/336/EEC 및 이의 개정지침 92/31/EEC 및 93/68/EEC, 전면 개정지침 2004/108/EC)가 있으며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전자파의 발생 금지와 외부로부터의 전자파 영향을 받지 말 것, CE마크를 획득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MC 지침에 따르면 전자파 적용대상은 크게 전자파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나 또는 그러한 장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비(apparatus)와 고정설비(fixed installation)로 구분된다. 여기서의 ‘장비’는 전기, 전자 부품을 내장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 및 전자장치로, 최종사용자(소비자 또는 기업)를 대상으로 단일의 기능체로 시판되는 완제품 또는 그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가정용 기기, 휴대폰용 전동 공구 및 유사기기, TV 및 라디오 수신기, 항공 및 해양 업무용 무선기, 산업장치, IT 장치, 비자동화 중량 계측기 등이 있다. 고정 설비(fixed installation)는 정해진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조립되고 설치되는 다수의 장치와 기타 기기들의 조합을 말한다.

EMC 지침에 따르면 EMC 적합성평가 절차는 다음의 세가지로, 첫째,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규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통신 단말기기의 경우로 Notified body에 의해 EU 형식시험 증명서를 받아 EMC 지침 제10.5절에 따라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는 절차, 둘째,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규정한 방송용수신기와 원격 통신단말기기 외의 정보기기 등 그 밖의 기기의 경우로, EMC 지침 제10.1절에 따라 적용가능한 유럽표준(EN) 존재하는 경우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는 절차, 셋째, 국

제 전기통신연합에서 규정한 방송용수신기와 원격 통신단말기기 외의 정보기기 등 그 밖의 기기이나 적용할 EN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 않아 EMC 지침 제10.2절에 따라 기술 파일을 작성하여 적격기관(Competent body)에 확인받는 절차이다.

다만 EMC 지침의 적용대상 중 의료용 기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유 무선통신기기(R&TTE 지침 적용)의 경우 해당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유럽연합의 전자파 규제 절차와 적용품목은 다음 (표 5-4)과 같다.

(표 5-4) 유럽연합의 전자파 규제절차와 적용품목

적합성평가절차	내용	적용품목
지침 제10.5절	적합성평가기관(NB)에 의한 형식시험증명서를 받아 적합성선언서 작성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방송용수신기와 원격통신단말기기 예) 팩스
지침 제10.1절	해당기기에 적용하는 유럽표준(EN)이 존재할 경우 적합성선언서 작성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규정한 방송용수신기와 원격통신단말기기 외의 기기 예) 주택, 산업 및 경공업용의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등의 정보기기
지침 제10.2절	해당기기에 적용할 유럽표준(EN)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기술화일을 작성하여 적격기관(Competent Body)에 확인을 받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규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용 단말기기외의 기기 예) 산업용 공작기계, NC 선반등

라.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 및 뉴질랜드의 EMC 규제는 호주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와 뉴질랜드 NZMED (New Zealand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RSM(Radio Spectrum Management Group)이 주관하여 만들어져서 1997년부터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전기 및 전자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규격은 CISPR 규격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전자파 내성에 대해서는 규격은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규제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유럽의 CE 방식과 유사하며 제품을 처음 판매하기전에는 ACMA나 RSM에 C-Tick 마크에 대한 통보를 하고 제조자 확인을 위한 회사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규격은 제정 당시부터 동일한 Harmonize 개념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적합선언(DoC)을 받으면 두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의 EMC 규격은 호주 ACMA와 뉴질랜드 NZMED의 RSM간의 Tasman 교류에 EMC 제도가 소개되면서 정해지게 되었는데, 전기 및 전자 제품으로부터의 방사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로 전자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Trans Tasman EMC 규격은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부터 유도되는 전자파를 최소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제품들은 그 대상 여부에 따라 반드시 규격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해 규격 인증방법을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오세아니아의 EMC 표준 규격은 CISPR 22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제품은 호주 기준인 AS 3548의 EMC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기기로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Cellular 및 무선 관련기기,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가 있다.

제 3 절 국내 EMC 규제 현황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EMC(전자파적합성)에 대한 규제는 「전파관리법」(1989. 12. 30. 법률 제4193호)에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하면서 EMC에 대한 규제 제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EMC 관련 기준과 전자파 장해 검정에 관한 절차, 대상기기 등을 정한 「전자파장해 검정규칙」(1990. 9. 3. 체신부령제825호)을 제정 공포하고 이후 「세부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1990. 9. 28)을 고시하면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유선통신 단말기기류 9개품목(1990.11.1), 정보기기류 11개품목(1991.2.23) 및 전기·전자기기류 5개 품목(1991.6.29)을 고시하면서 장해검정을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EMC 규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법 개정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예외규정을 1989년 제도 도입 시 공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의 3개의 관련법이었으나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기기, 자동차, 소방기기, 전기용품 등이 면제대상에 추가되면서 정보기기류에 한정하게 되어 전파법이 전자파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퇴색되고 말았다.

전기용품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1974년 제정된 이래 1980년대 후반에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전자파장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도체소자를 갖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잡음의세기」의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기준도 모호하고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명시적인 수준에 머무르다 산업자원부 산하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으로 1992. 6. 9일자(공진청고시 제92-269호)로 「전자파장해에 대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여서 공포하면서, 1993년부터 일부 전기용품에 대해서 전자파장해 기술기준을 적용한 이래 점차 확대 실시하였으며, 시행 초기부터 대상기기의 적용에 있어서 정보기기 분야에 있어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대상인지, 전자파장해검정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었으며 이는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별로 구분되었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어

지면서 소비자·제조사에게 중복규제의 불편함과 동시에 주파수스펙트럼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말았다.

의료기기는 1998년부터 일부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에 대해서, 당시 정보통신부가 제정/공포한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적용치 못하다가 「의료기기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2004. 8. 2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65)에 일부 EMC 적용에 대한 명시적으로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치 못하고, 2006년3월에 세부 적용에 대한 고시를 공포하면서 전기 전자회로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본격 EMI를 실시하고,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2007. 5. 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2호)을 별도로 정하여 공포하면서 EMI 뿐만이 아니라 EMS에 대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부 고시인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이 의료기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로 기준을 제정하는데 적용시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 또한 자기인증(형식승인)시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규제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78호 및 제1996-79호에 의거해서 1997년 7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소방시설에 대한 EMC의 적용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자동식소화기에 대해서만 전자파장해(EMI) 기술기준은 적용치 않고, 전자파내성(EMS)에 대해서만 EMC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은 IEC 등의 국제 기술과 KS 규격 등을 적용하고 있다.

(표 5-5) 우리나라 EMC 규제를 시행하는 제품별 인증제도

제품별	규제제도	적용법령(근거법)	규제기관
방송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공산품	품목허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의료기기	품목허가	의료기기법	보건복지가족부
자동차	형식승인	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소방시설	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 분야별 EMC 규제 현황

가. 방송통신기기

방송통신기기의 EMC에 대한 규제는 1989.12.30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파관리법 제29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검정에 관한 규정과, 1990. 9. 3일자 체신부령으로 제정 공포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990. 9. 28일 고시된 ‘세부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전기·전자기기 등에 대한 전자파장해검정 업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게 되었으며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는 전자파장해검정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1차로 1990. 11. 1일에 유선통신 단말기기류 9개 품목에 대해서 고시하였고 이어서 1991. 2. 23일에 정보기기류 11개 품목과 1991. 6. 29일에 전기·전자기기 5개 품목을 각각 고시하여 초기에는 25개 품목을 대상기기로 적용하여 처음 시행하였다.

이후 1994. 9. 13일자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개정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업무를 당시 체신부장관에서 전파연구소장으로 위임하였으며, 1996.12.30일자로 개정된 전파법 개정(법률 제5218호)에서 기존의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전자파적합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전자파장해방지(EMI) 이외에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보호(EMS) 기

준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로의 변경을 계기로 그 동안 다소 미비하였던 기술기준과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당시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을 도입하여 과감하게 적용하였던 사항은 우리나라의 전자파적합(EMC)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던 주요한 계기 되었었다. 아울러 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예외규정을 1989년 개정시의 공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의 3개의 관련법이었으나, 1996년 12월 개정 시에는 추가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구」 등, 4개 관련법에 의한 품목류를 추가하면서 당시의 기술기준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인 제반 기준들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료용구), 건설교통부(자동차), 행정자치부(소방기기), 산업자원부(전기용품 등)과 협조하여 관련 부처들이 당시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을 모두 준용하여 실시키로 하였던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며, 이 당시까지는 전파법이 전자파적합(EM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당시 전파법 개정과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포함된 「전자파적합 기술기준 개정 전담반」을 구성하여 약1년간 운영하면서 전파법의 개정과 더불어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등의 여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고시로 공포하면서, 정보기기 통신기기뿐만이 아니라 타 자동차 및 의료기기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기준을 정비하여서 전자파적합(EMC)의 관장 부처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었다.

이후 2000. 5월 전자파적합등록 규칙이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으로 통합되면서 대상기기를 이 규칙의 별표로 넣으면서 법에서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서 대상기기를 다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정보기기류 :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정보기기」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부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94호 2000.5.22) 및 전자파보호기준이 개정(정보통신부고시 제80호 2000.10.11)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파보호시험방법에 대하여 전파연구소고시로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개정고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적 내성시험방법을 국제규격 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세부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총 7가지(정전기방전 내성시험,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서지 내성시험, 전자파 전도 내성시험, 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시험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국제규격 세부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대상기기별(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 고속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5년 9월 29일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중 일부를 제명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 “전자파 장해방지기준”으로 하고,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 설비는 제외)의 장해방지기준 및 전력선통신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 (KN60)을 신설하여 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정보통신기기인증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 시행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정보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중 방사성/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평가주파수는 국내 고출력 무선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의료용 전기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을 신설하였고, 또한 2007년 1월 10일에는 제품의 기본모델(정보통신기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기기)과 파생 모델(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그 부가적인 기능만을 변경한 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고, 2007년 12월에는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장해방지시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장해방지시험, 조명기기류 장해방지시험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국제 표준규격의 변경에 따른 현행화 및 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 방지시험과 고속철도기기류 장해방지시험 내지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내성측정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직역된 원문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 및 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에 표기되어 있는 통신포트에서의 공통모드 전도성 장해의 허용기준 적용 시점 삭제하는 등 최신 규격을 도입 및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정보통신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2008년 3월부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부 고시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변경되었다.

방송통신기기의 EMC 제도 도입 변천과정은 (표 5-6)과 같다.

(표 5-6) 방송통신기기의 EMC 제도 도입 변천 과정

구분	법령명칭	비고
법률	전자파관리법 제29조5 (1989. 12. 30)	전자파 규제체계 도입
	전자파법 개정 (법률 제 5218호)	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 하고 EMS 추가
시행규칙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 검정 (1989. 12. 30)	
	세부시험 방법 (1990. 09.28)	
	전자파장해 검정규칙 개정 (1994. 09. 13)	시험기관의 지정시험업무를 전파연구소장으로 위임
대상기기	유선통신 단말기기류 9 개 (1990. 11. 01) 정보기기 11개 품목 (1991. 02. 23) 전기·전자기기 5개 품목 (1991. 06. 29)	25개 품목 적용
	정보기기류,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정보기기 (개정 2000.5.22)	
예외조항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받은 전기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 상품 (1989. 12. 30)	3개의 관련법에 의한 품목만 예외 적용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약사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구 등 4개 관련법 추가 (1996. 12. 30)	의료기기, 자동차, 소방기기, 전기용품 등에서 기준 적용
고시	전자파장해검정제도에서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로 변경 (1996. 12. 30)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전자파로부터 보호기준 전자파장해방지시험기준 전자파보호 시험기준 전자파적합 대상기기
	정보통신기기인증 규칙으로 통합됨 (2000. 05)	

나.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용품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나타나 있으며,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기용품 중에 구조·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한 기기로 하고 있다. 이중 부품 단위의 대상기기를 제외하고, 제품 단위 대상기기는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및 조명기기류가 있는데 이들 제품은 대부분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전자파로부터 오동작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스위칭 회로나 전자적인 제어·콘트롤 회로 등을 대부분 내장하고 있어서 EMC 기술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미국 및 유럽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제적으로도 EMC 규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은 1974년 1월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1999. 09. 07에 법률 제6019호로 전면개정 되어 시행해오다가 자율 안전 인증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007년 2. 21에 법률 제8770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초기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EMC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1980년도 중반에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전자파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도체소자를 갖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잡음의세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기술기준도 모호하고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명시적인 수준에 머무르다 1990년도 초부터 준비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으로 1992. 6. 9일자(공진청고시 제92-269호)로 「전자파장애에 대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제정 공포하면서, 1993년부터 일부 전기용품에 대해서 전자파장애 규정을 적용한 이래 점차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에서 EMC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선 장애 특별 위원회

인 CISPR 기술 기준을 참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및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보 사무기기 제품의 경우 EMC 중 전자파 장애문제에 대한 기술기준은 CISPR 22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파 내성 문제에 대한 기술 기준은 CISPR 24를 적용하여 KS C CISPR 22와 KS C CISPR 24 와 같이 기술 표준원에서 산업 표준 규격을 제정하면 이것을 K 00022 와 K 00024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위하여 역시 기술 표준원에서 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표 5-7)의 한국산업규격 분류에 따르면 EMC 관련 표준은 전기부문에 대하여 첨자 C를 붙여서 제정한 KS C 시리즈이며 이를 약간 약간의 수정을 통해 K 시리즈의 기술 기준으로 변환된다.

(표 5-7) 전자파 규제 관련 한국 산업 규격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기본부문(A)	기본 일반/포장 일반/공장 관리/방사선(능) 관계/기타
기계부문(B)	기계 기본/기계 요소/공구/공작 기계/측정 계산용 기계 기구 물리기계/ 일반 기계/산업 기계/농업 기계/열사용 및 가스기기
전기부문(C)	전기 일반/측정 및 시험용 기계 기구/전기 재료/전선, 케이블 및 전로용품/전기 기계 기구/통신 전자기기 및 부품/진공관 및 전구/조명 배선 전기 기구 /전기 응용 기계 기구
금속부문(D)	금속 일반/분석/원재료/분석/강재/주강 및 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 제품/가공 방법/기타
광산부문(E)	일반 정의 및 기호/채광/채광 및 광산물/보안/선팅 및 선탄/운반포장
토건부문(F)	일반 구조/시험 검사 측정/재료 및 부재/시공
일용품부문(G)	문방구 및 사무용품/잡품 가정용품/가구 및 실내 장식품/운동용품/특수 공예품
식료품부문(H)	농산물가공/축산물가공/수산물가공/첨가물
섬유부문(K)	일반 시험 및 검사/면직/마제품/편직물/피복/직물 편물 제조기
요업부문(L)	도자기/유리/내화물/점토제품/시멘트 석면제품/연마제 특수요업제품/요업용 특수기기/기타
화학부문(M)	일반/공업약품/유지 광유/플라스틱 사진재료/염료 폭약/안료 도료 잉크/고무 피혁/종이 펄프/시약
의료부문(P)	일반/일반의료기기/치과재료/의료용설비 및 기기/의료용기구
수송기계부문(R)	자동차일반/시험 검사 방법/공통부문/기관/차체/전기 장치

	계기/수리 조정 시험/수리 기구/자전거/철도용품
조선부문(V)	일반/선체/기관/전기기/항해용 기기 계기
항공부문(W)	일반/전용재료/표준 부품/기체(장비 포함)/발동기/계기
정보산업부문(X)	정보기술용어 일반/문자세트 보안 부호화/정보기술용 언어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그래픽스/데이터통신망/정보기기 데 이터 저장매체 /IT응용

다. 공산품

공산품의 경우 EMC와 관련하여 크게 저촉되는 제품은 없으나, 현대의 전기,전자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EMC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1976.3.30일자로 제정된 「공산품품질관리법」은, 1993년도에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으며, 2000.12.29일자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05년 05월 26일에 법률 제7507호 로 법령 변경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된 이후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규제이나 제품에 따라 EMC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조항이 없어서 EMC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기준이 없는 것인 상태이다. 예를 들어 완구와 헬스기구의 경우 전자 회로가 내장되어 동작하는 경우 이로 인한 전자파가 주변에 장해를 유발 할 수 있으나 현재 전파법 제57조에 의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득하면 전자파와 관련된 시험과 인증이 없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라. 의료기기

2003년 5월 29일자로 공포한 법률 제 6909호 의료기기법의 18조(기준규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칭함)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

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른 의료기기중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이하 식약청고시라 칭함) 제 2007-32호(2007년 5월25일 제정, 동년 7월 1일 시행)인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의 제 3조(의료기기의 간섭 방지 기준 및 시험방법)와 제4조(의료기기내성기준 및 시험방법)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문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문서 등의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 돌이상의 기기가 동시에 접속되는 경우나 수시의 조합으로서 자주 이루어지는 대출력 기기와 낮은 레벨의 신호에 감응하는 기기와의 조합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동작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의료기기에 EMC를 적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의료기기의 EMC 법령체계에 대해선 아래 (표 5-8)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표 5-8) 의료기기의 EMC 관련 법체계

구분	법령명칭	비고
법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등
시행령	의료기기법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고시	의료기기기준규격	
	의료기기의전자파안전에 관한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규격	
	전자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외 16개	

의료기기법(법률 제6909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제 18조 에 의해, “식약청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4년 8월 23일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65 호를 발표 하였다. 그러

나 동 고시 제 5절 36항의 EMC 관련 부분을 보면 “전자파적합성 IEC 601-1-2 참조”로만 되어 있고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2006년 3월 7일 발표한 식약청 고시 제2006-6호를 제정하면서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EMI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여서 인지 전기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마다의 개별규격에서 EMI 부분만을 언급하였고 이 또한 통일성이 없이 발표된 측면이 있었으나 2007년 5월 25일 식약청 고시 제 2007-32호를 발표하면서 EMI 와 EMS에 대한 시험 방법 및 기준을 식약청고시로 별도로 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EMC 규제 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의료기기의 EMC 규제 제도는 2007년 5월 27일 식약청고시 제 2007-32호를 제정하면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기에 기술한 의료기기의 EMC 규제체계의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의료기기의 EMC 관련 규제체계 변천과정

관련 고시	시행일	EMC 규제 제도 변천 과정
식약청고시 2004-65호	2004.8. 23.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으로 EMC 개념만 도입하고 EMC에 대해별도 규제 사항 없었음
식약청고시 2006-6호	2006.3. 7.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52개품목)으로 발전하면서 정통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따른 EMI 규제만 실시함.
식약청고시 2007-32호	2007.7. 1.	1. 정통부 전자파장해기준이 아닌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식약청고시로 별도 제정 및 시행 2. 2009년 1월 1일부터 1등급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자파 내성에 대해 적용 실시

마. 자동차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규제는 1996년 10월 9일 공포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1996-78 및 1996-79호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령(현 국토해양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11조 2항 및 부칙 제

4조에 의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종류에 따라 하기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근거법령은 다음의 표 (5-10)과 같다.

(표 5-10)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EMC 관련 법체계

항목	내용	비고
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32조(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 제31조 내지 제40조의3	-
고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 2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전자파보호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제2008-3호	
기타	전자파보호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제2008-4호	
	전파법 제57조1항 및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전파법에 의한 인증은 면제 됨. 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얻은 자동차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대한 전자파 규제를 시작한 이래 현재(2008년 12월) 까지 전파법 제 56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KN 41)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전파법 제 56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 후 현재 시행중에 있다.

마. 소망시설

EMC규제는 2005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고시 에 의해 각 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전자파장해 및 내성에 대한 기술기준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검정, 성능시험, 우수품질인증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식승인에 관한 시험방법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세칙에 의해 적용한다. 다만, 시험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 따르도록 되어있다.

형식승인 대상기기 중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가스누설정보기, 유도등, 자동식소화기 등에 대해서만 EMC규제가 있다. 각 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세칙에 기술기준 및 판정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소방시설의 EMC 관련 법 체계는 다음 표(5-11)과 같다.

(표 5-11) 소방시설의 EMC 관련 법 체계

구분	법령명칭	비고
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3호 제36조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6호 제37조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22호
규칙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18호
세칙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외 5건	한국소방검정공사

제 6 장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수요조사

제 1 절 개 요

본 조사는 유관기관이 작성한 적합성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 품목분류 기준을 분석하여 방송통신기기의 품목별 적합성평가 분류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품목의 적합성평가대상 품목 편입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전문가 및 동 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위험도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 적합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조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험·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업체별 설문조사 개요

업체별 대상 조사는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14일에 걸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의뢰로 한국소비자원과 설문업체인 디씨알 폴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08년 1월 1일부터 09년 7월 30일까지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는 2,346 업체 및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총 응답 설문수는 332개였다. 이러한 응답설문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품목별 적합성 평가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개편된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사전 평가였다. 첫 번째의 품목별 적합성평가방안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사업체들이 많아, 이를 제외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10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의 것은 유효한 응답설문 전체인 33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특성과 관련, 먼저 본 설문에 응답한 기업체의 업종은 '제조'분야가 58.1%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판매' 18.4%, '수입' 12.3%, '시험' 5.7%, '기타' 5.4%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1~4명' 8.7%, '5~9명' 17.5%,

‘10~49명’ 56.9%, ‘50~249명’ 14.8%, ‘250명 이상’ 2.1%이었다.

연간 매출액별로는 ‘1억 미만’이 10.2%, ‘1억 이상 ~ 5억 미만’이 16.9%, ‘5억 이상 ~ 10억 미만’이 9.9%, ‘10억 이상 ~ 50억 미만’이 31.0%, ‘50억 이상 ~ 100억 미만’이 24.1%, ‘100억 이상’이 7.8%를 차지하였으며 주력 제품별로는 ‘정보기기’가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무선기기’ 29.2%, ‘유선기기’ 17.5%, ‘방송기기’ 3.9%, ‘부품’ 3.3%, ‘기타’ 9.6% 등의 순이었다. 다음 (표 6-1)은 설문 응답 업체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6-1) 설문 응답업체의 특성

구 분		사 례 수(개)	구 성 비(%)
전 체		332	100.0
업 종	제 조	193	58.1
	판 매	61	18.4
	수 입	41	12.3
	시 험	19	5.7
	기 타	18	5.4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58	17.5
	무 선 기 기	97	29.2
	정 보 기 기	121	36.4
	방 송 기 기	13	3.9
	부 품	11	3.3
	기 타	32	9.6
종업원수	1 ~ 4 명	29	8.7
	5 ~ 9 명	58	17.5
	10 ~ 49 명	189	56.9
	50 ~ 249명	49	14.8
	250명 이상	7	2.1
매출액	1억 미만	34	10.2
	1~5억 미만	56	16.9
	5~10억 미만	33	9.9
	10~50억 미만	103	31.0
	50~100억 미만	80	24.1
	100억 이상	26	7.8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180	54.2
	연 3~4회	73	22.0

	연 5~10회	34	10.2
	연 11~20회	23	6.9
	연 21~50회	3	0.9
	연 50회 이상	19	5.7

표본추출은 리스트에 기반한 층화무작위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9.8\%$ 이다.

본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는 에디팅, 코딩, 편칭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업체 설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2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 수요조사표」 제1부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에는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수록하기로 한다.

제 3 절 품목별 적합성 평가방안 조사결과

1. 개 요

품목별 적합성평가 방안의 경우 1차로 설문조사에 따른 업체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정리한 업체의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별도로 관계기관(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소)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 관계기관은 전파연구소의 인증분야 전문가와 중앙전파관리소의 사후관리 분야 관계자 2인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는 지정시험기관 유선, 무선 전자파 분야별 전문가 및 학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10인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업체에 배포된 설문지 내용 중 품목별 적합성평가 방안 부분만 발췌·배포한 후 수거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계기관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하여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지정시험등록/자기시험등록)여부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들은 각 유, 무

선, 전자파 분야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만 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증 대상품목을 기업토록 하였다. 전문가들에게만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은 업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이 갈리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판단을 얻고자 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품목별 적합성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방송통신기기의 구분

품목별 적합성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방송통신기기의 구분은 크게 유선기기, 무선기기,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현재 인증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술기준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현재 방송통신기기 인증고시의 세부품목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유선기기는 1) 단말기기류, 2) 시스템류 및 부속물, 3) 회선종단장치류, 4) 전송망 기자재류(종합유선방송 기자재류)로 구분하였다.

무선기기는 1)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무선전신, 전화 경보, 항공 및 해상 통신, 무선방위측정 레이더), 2)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기기(▶무선호출 ▶이동통신(2G(셀룰러,PCS),3G(IMT-2000)) ▶무선데이터통신(900MHz) ▶위성휴대통신(GMPCS) ▶주파수공용전화(TRS) ▶해상이동전화 ▶무선 CATV ▶가입자회선용서비스(B-WLL) ▶위치기반서비스(LBS) ▶휴대인터넷(WIBRO), 3)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산업·과학·의료용, 아마추어, 생활무선국, 코드없는 전화기, R FID/USN, UWB, 물체감지, 무선탐지 등) 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 데이터전송, 안전시스템(보안), 무선랜, 중계기, 차량충돌방지 레이더, 이동체 식별, 음성음향전송 등)로 구분하였다.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는 1) 컴퓨터류(산업용, 가정용(PC, 노트북) 등), 2) 컴퓨터 주변기기류(입력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내장형), 컨트롤러 등), 3) 컴퓨터내장구성품류(내장보드 및 각종카드(비디오, 사운드), 저장장치(외장형), 전원공급기 등), 4) 기타 정보기기류 (PMP, 네비게이션, 전광판, 하이패스단말기, 무인발급기, 현금지급기, DVR, 위성방송수신기, 바코드 리더기, 디지털 앨범, 전자칠판, DVR, 계측기, 라벨프린터, 전력선모뎀, 계측기, 통신인터페이스모듈 등), 5) 고속철도기기류, 6) 이동형 방송통신수신기기류(DMB, GPS 수신기 등), 7) 배터리로만 동작하고,

다른 기기와 접속되지 않는 기타기기류(전자액자, 시계, 전동공구, 차량용 블랙박스 등)로 구분하였다.

3. 품목별 적합성평가방안 조사결과

가. 유선기기 분야

유선기기분야에 대한 업체설문조사결과와 관계기관 의견과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관계 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성품류를 제외한 모든 유선기기를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단말기기류와 시스템류 일부기기 외 대부분 적합등록으로 분류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업체 및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등 단말기기류 6개 품목 및 시스템류 중 ATM교환기만 적합인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적합(지정시험)등록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의 분류의견은 대부분 적합등록대상이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기 및 비상통보기기를 제외하고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대부분을 현행과 같은 인증대상으로 사후관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또는 자기시험등록)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유선분야의 전문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를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전화기 및 접속기기와 팩시밀리, 접속커넥터의 경우 업체 및 전문가는 적합등록대상으로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적합 인증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관계기관 간 의견이 일부 상이하였으며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원격제어기기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의견은 적합인증대상으로 일치하였으나 업체

및 전문가는 적합등록(지정시험등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표 6-2)는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6-2) 유선기기 중 단말기기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업체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기 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A11	전화기(헤드셋전화기 포함)	◇	★▲	0
A12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0
A13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케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 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0
A14	코드없는 전화기	◇▲	0★	
A1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기기 포함)	◇	★▲	0
A16	영상전화기	◇	0★▲	
A17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0★▲	
A18	공중전화기	◇	0★▲	
A20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0★▲	
A21	다이얼링기능이없는모뎀(카드식포함)	◇	0★▲	
A22	다이얼링기능이있는모뎀(카드식포함)	◇	0★▲	
A23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0★▲	
A24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원격통신용, LADC)	0◇	★▲	
A32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0▲	
A33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0★▲	
A35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0★▲	
A36	코덱	◇	0★▲	
A41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	0★▲	
A42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	0★▲	
A43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0◇★	▲	
A44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0◇	★▲	
A45	원격제어기기	0◇	★▲	

A51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0◇★	▲	
A52	회선장애 감시기기	0◇★	▲	
A53	가입자보호기	0◇★	▲	
A61	ISDN 망중단기기(NTE)	◇	0★▲	
A62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 인터페이스카드 등)	◇	0★▲	
A63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	0★▲	
A71	접속커넥터	◇	★▲	0
A81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	0★▲	
A82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	0★▲	
A83	인터넷멀티미디어 단말기(IPTV)	◇	0★▲	
A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0★▲	

2) 유선기기 중 시스템류

유선기기 중 시스템류의 분류의견은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지정시험)으로 분산되는 편이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ATM 교환기를 제외하고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전화교환기 등 4개 교환기 품목,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IP PBX, DIGITAL PBX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은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체설문결과는 적합등록으로 나타났으며, 홈네트워크,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의 경우 전파연구소와 및 전문가는 적합인증대상으로 업체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계기관 간 의견이 일부 상이하였다. 다음(표 6-3)은 유선기기 중 시스템류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6-3) 유선기기 중 시스템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업체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기 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B11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0◇▲	★	
B12	데이터교환기	0◇▲	★▲	

B13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0◇▲	★	
B14	구내교환기(PBX)	0◇▲	★	
B15	ATM교환기	0◇★▲		
B21	키폰시스템	◇▲	0★	
B31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0◇▲	★	
B41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	0★	
B42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	0★	
B43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server)	◇▲	0★	
B51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0★	
B52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0★	
B53	IP PBX(OmniPCX Enterprise)	0◇▲	★	
B54	월패드	◇▲	0★	
B55	FTTH EPON ONT(Optical Network Terminal)	◇	0★▲	
B56	세대용 ONT	◇▲	0★	
B57	DIGITAL PBX	0◇▲	★	
B58	통합경비시스템 장치	◇▲	0★	
B59	광전송장치	◇▲	0★	
B60	ADSL(비동기식 디지털 가입자 회선)	◇▲	0★	
B61	VDSL(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	0★	
신규	홈네트워크	◇▲	★	0
신규	IP-PBX	0◇▲	★	
B6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	★	0
B62	시스템에 사용되는부속물및구성품 -다중회선키폰,회선카드,부속전화기또는호출기 -모뎀,통화녹음기,특수한수화기,영상기기,유지보수용기기 -시스템전단에서사용되는회선스위치(팩시밀리,전화또는모뎀용)		◇★▲	0
B99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	0★	

3) 유선기기 中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

유선기기 중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의 분류 의견은 적합등록(지정시험)으로 집중되는 편이었다. 대부분의 업체, 관계기관 중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선종단장치류와 전송망 기자재류를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대부분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직렬단자, 레벨조정기의 경우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적합인증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업체 및 전문가

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각각의 의견이 상이하며, 주파수 변조기(무선)의 경우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은 적합한 증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체는 적합등록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6-4)는 유선기기 중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6-4) 유선기기중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업체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구분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전송망 기자재류	C1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0★▲	
	C12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0★▲	
	C13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 화상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0★▲	
	C14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0★▲	
	C21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0★▲	
	C31	근거리(LAN)전송장치, 원거리(WAN) 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정)	◇	0★▲	
	C41	PCM단국장치	◇	0★▲	
	C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 기자재류)	◇	0★▲	
회선종단 장치류	D11	진폭변조기	◇	0★▲	
	D12	주파수변조기	◇	0★▲	
	D13	주파수변조기(무선)	0◇▲	★	
	D14	텔레비전신호처리기	◇	0★▲	
	D21	증폭기	◇	0★▲	
	D22	분기기	◇	0★▲	
	D23	분배기	◇	0★▲	
	D24	보호기	◇	0★▲	
	D41	동축케이블	◇	0★▲	
	D51	케이블모뎀	◇	0★▲	

	D61	직렬단자	◇	★▲	0
	D72	레벨조정기	◇	★▲	0
	D73	주파수 변환기	◇	0★▲	
	D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0★▲	

나. 무선기기 분야

무선기기분야에 대한 업체설문조사결과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업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모두 항공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형식등록대상 중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는 거의 대부분을 적합인증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기타업무용 설비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업체,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 의견, 전문가 의견이 다소 분산되었다. 다만 업체의 경우 일부 품목들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의견에 근접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선기기 중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 (무선 전신, 전화 경보, 항공 및 해상통신, 무선방위측정, 레이더)

무선기기 중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분류 의견은 적합인증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업체, 관계기관인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 공통으로 해당 설비가 인명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6-5)는 무선기기 중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6-5) 무선 기기중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자랑사형)	적합등록 (자가합)
W	무선전신경보 자동수신기(※선박 설치)	0◇★▲		
WA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0◇★▲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WB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0◇★▲		
WC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0◇★▲		
D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0◇★▲		
DB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0◇★▲		
DC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0◇★▲		
DA 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0◇★▲		
DBB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0◇★▲		
DC 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0◇★▲		
A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0◇★▲		
SSS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항공이동업무용)	0◇★▲		
SS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용)	0◇★▲		
S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0◇★▲		
RAL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0◇★▲		
RA M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	0◇★▲		
RAS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0◇★▲		
RA A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자동레이다푸팅 기능을 가진 제1종 레이다)	0◇★▲		
RB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2종 레이다	0◇★▲		
RC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3종 레이다	0◇★▲		
RD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4종 레이다	0◇★▲		
RP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에 부가하는 자동레이다 푸팅장치	0◇★▲		
VA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	0◇★▲		

	항무선전화장치			
SA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선박국용)	0◇★▲		
SB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해안국용)	0◇★▲		
SN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0◇★▲		
SH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 (MF·HF송수신장치)	0◇★▲		
SV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 (VHF송수신장치)	0◇★▲		
M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송수신장치)	0◇★▲		
H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HF송수신장 치)	0◇★▲		
V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VHF송수신장치)	0◇★▲		
NR	네비텍스수신기	0◇★▲		
SR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0◇★▲		
SE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 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0◇★▲		
SD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 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0◇★▲		
AIS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0◇★▲		
PS	가상원조용 라디오존데	0◇★▲		
PR	가상원조용 라디오 로봇트	0◇★▲		
B	라디오부이의 기기	0◇★▲		

2) 무선기기 中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무선기기 중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분류 의견은 적합인증으로 집중되는 편이었다. 대부분의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육상용), 가입자용 회선용 무선서비스(WLL), 무선케이블 TV 서비스, 와이브로 서비스 이동국에 대하여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및 전문가는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업체는 적합등록 대상(지정시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6-6)은 유선기기 중 회선종단장치류 및 전송망 기자재류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6-6) 무선기기 중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구분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무선 호출	CA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0◇★▲		
2G (800M Hz) 이동 통신 (셀룰 러,2G)	MCA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0◇★▲		
	MCA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0◇★▲		
	MCA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0◇★▲		
	MCA3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0◇★▲		
	MCA4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0◇★▲		
	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타)	0◇★▲		
2.5G (1.8G Hz) 이동 통신 (PCS)	PCS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0◇★▲		
	PCS1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0◇★▲		
	PCS2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0◇★▲		
	PCS3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0◇★▲		
	PCS4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0◇★▲		
	PCS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0◇★▲		
900 MHz 무선 데이터 통신	DATA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0◇▲	★	
주파수 공용 통신 (TRS)	CCCA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육상용)	0◇▲	★	
	CCCA2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해상용)	0◇★▲		
	CCCA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0◇★▲		
해상 이동 전화	MCP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0◇★▲		

위성 휴대 통신 (GMP CS)	GMPCS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0◇★▲		
가입자 회선용	WLL1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3GHz 주파수대 를 사용하는 기기)	0◇▲	★	
무선 서비스 (WLL)	WLL2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6GHz 주파수대 를 사용하는 기기)	0◇▲	★	
3G(2G Hz) 이동 통신 (IMT 2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0◇★▲		
	IMT1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 신장치 및 중계장치)	0◇★▲		
	IMT2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 설비의 기기)	0◇★▲		
	IMT3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 선설비의 기기)	0◇★▲		
	IMT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 널변환 장치)	0◇★▲		
	IMT9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0◇★▲		
무선 케이블 TV 서비스	CATV1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GHz 주파수 대를 사용하는 기기)	0◇▲	★	
	CATV2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GHz 주파수 대를 사용하는 기기)	0◇▲	★	
와이 브로	WIBRO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 계장치)	0◇★▲		
	신규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0◇▲	★	
위치 기반 서비스 (LBS)	LBS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계장치)	0◇★▲		

3) 무선기기 중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무선기기 중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분류 의견은 대부분 적합인증으로 집중되는 편이었으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기기(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것), RFID/USN 용 무선기기, 코드없는 전화기 등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

산되는 편이었다.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간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와 전문가는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와 적합등록(지정시험)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RFID/USN 용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업체, 관계기관 중 중앙전파관리소와 전문가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6-7)은 무선기기 중 기타업무용 설비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6-7) 무선기기 중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V	F1D · G1D · F2D · G2D · F3E · G3E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의 기기	◇★▲	0	
H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ISM기기)	0◇★▲		
CB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0★	
HAM1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대 기기)	0◇▲	★	
HAM2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대 기기 등)	0◇★▲		
RLS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0◇★▲		
ERT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0◇★▲		
ETRS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	0	
E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	0★	
RFID1	RFID/USN-용 무선기기(900MHz대역 사용기기)	◇	0★▲	
RFID2	RFID/USN-용 무선기기(433MHz대역 사용기기)	◇	0★▲	
RFID3	RFID/USN-용 무선기기(13.56MHz대역 사용기기)	◇	0★▲	
MICS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0◇★▲	▲	
SRD2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0	

SRD1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0	
CLP1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1형)	◇▲	0★	
CLP2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2형)	◇▲	0★	
DCP17	코드없는 전화기(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0★	
DCP24	코드없는 전화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0★	
UWB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0◇★▲		
SRD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57~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0◇★▲		

4) 무선기기 중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무선기기 중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분류 의견은 대부분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집중되는 편이었으나,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는 미약전계강도기기를 제외한 다른 특정 소출력 기기의 경우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특정 소출력 대역의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은 무선기기 중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6-8) 무선기기 중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설문결과,▲: 전문가조사)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LARN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0▲	
LARN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0★▲	
LARN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0◇	★▲	
LARN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0★▲	
LARN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0▲	
LARN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	0★▲	
LARN7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0★▲	
LARN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0★▲	

LARN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0★▲	
LPD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0◇★▲	

다. 정보기기(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분야

정보기기의 분류 의견은 적합등록(지정시험)으로 집중되는 편이었다. 대부분의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정보기기를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컴퓨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류, 기타정보기기류에 대하여 관계기관 중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 중 지정시험이 아닌 자기시험 등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 업체,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 전문가들은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기기류의 경우 업체, 관계기관 중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은 적합인증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전파연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동형 방송수신기기류에 대하여는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모두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전용기기류(접속기능없음)의 세부품목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산되는데, 전자액자와 전자시계의 경우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와 전문가는 적합등록(지정시험) 대상으로, 업체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 전동공구는 업체,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 전문가는 적합등록(지정시험)대상으로 관계기관 중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밖에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전문가는 적합인증대상으로, 관계기관 중 전파연구소와 업체는 적합등록(지정시험)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등록(자기시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당사자별 의견이 분분하였다.

(표 6-9)는 정보기기의 업체,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6-9) 정보기기(컴퓨터 및 정보기기류)의 조사결과 분류 비교표

(◇: 전파연구소, 0: 중앙전파관리소, ★: 설문결과, ▲: 전문가조사)

구분	기호	대상기기명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컴퓨터류	A011	퍼스널컴퓨터		0◇★▲	
	A012	노트북컴퓨터		0◇★▲	
	A013	사무용컴퓨터		0◇★▲	
	A021	공업용컴퓨터		0◇★▲	
	A022	산업용컴퓨터	★	0◇▲	
	A023	대형컴퓨터		0◇★▲	
	A024	중형컴퓨터		0◇★▲	
	A025	소형컴퓨터		0◇★▲	
	A026	판타컴퓨터		0◇★▲	
	A027	워크스테이션		0◇★▲	
	A031	서버		0◇★▲	
	A032	터미널		0◇★▲	
	A033	포스시스템		0◇★▲	
	A034	포터블컴퓨터		0◇★▲	
	A035	네트워크컴퓨터		0◇★▲	
	A036	일체형컴퓨터		0◇★▲	
	A037	범용컴퓨터		0◇★▲	
	A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류)		0◇★▲	
컴퓨터 주변기기 류	B011	모니터		◇★▲	0
	B012	LCD모니터		◇★▲	0
	B013	TFT모니터		◇★▲	0
	B014	PDP모니터		◇★▲	0
	B021	프린터		◇★▲	0
	B022	플로터		◇★▲	0
	B023	프로젝터		◇★▲	0
	B024	카드리더기		◇★▲	0
	B031	분배기		◇★▲	0
	B032	공유기		◇★	0▲
	B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0◇★▲	
	C011	마우스		◇★▲	0▲
	C012	키보드		◇★▲	0▲
	C013	드래프팅-머신		◇★▲	0
	C014	PC 게임기		◇★▲	0

	C015	조이스틱		◇★★▲	0
	C021	디지털카메라		◇★★▲	0
	C022	디지털비디오카메라		◇★★▲	0
	C023	PC 카메라		◇★★▲	0
	C031	스캐너		◇★★▲	0
	C032	바코드스캐너		◇★★▲	0
	C033	지문인식기		◇★★▲	0
	C034	전자칠판		◇★★▲	0
	C041	디지털타이저		◇★★▲	0
	C042	터치스크린		◇★★▲	0
	C043	트랙볼		◇★★▲	0▲
	C044	타블렛		◇★★▲	0▲
	C045	복합기기		◇★★▲	0
	C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 치류)		0◇★★▲	
	D011	외장형 HDD		◇★★▲	0
	D012	외장형 FDD		◇★★▲	0
	D013	외장형 CD ROM DRIVE		◇★★▲	0
	D014	외장형 CD-RW DRIVE		◇★★▲	0
	D015	외장형 DLT DRIVE		◇★★▲	0
	D016	외장형 DAT DRIVE		◇★★▲	0
	D017	외장형 TAPE DRIVE		◇★★▲	0
	D018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	0
	D019	디스크어레이		◇★★▲	0
	D021	RAID		◇★★▲	0
	D022	쥬크박스		◇★★▲	0
	D023	MP3 PLAYER(※MP4 포함)		◇★★▲	0
	D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 치류)		0◇★★▲	
	E011	스위치		◇★★▲	0▲
	E012	허브		◇★	0▲
	E013	컨버터		◇★★▲	0
	E014	콘트롤장치		◇★★▲	0
	E015	리피터		◇★★▲	0
	E016	이더넷아답터		◇★★▲	0
	E021	영상처리시스템		◇★★▲	0
	E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트롤장 치류)		0◇★★▲	
	F9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 기류		0◇★★▲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G011	마더보드		◇★★▲	0
	G012	VGA카드		◇★★▲	0
	G013	사운드카드		◇★★▲	0

	G014	TV수신카드		◇★★▲	0
	G015	인터페이스카드		◇★★▲	0
	G016	CONTROL카드		◇★★▲	0
	G017	RISER카드		◇★★▲	0
	G021	LAN카드		◇★★▲	0
	G022	이더넷카드		◇★★▲	0
	G031	전원보드		◇★★▲	0
	G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0◇★★▲	
	H011	HDD		◇★★▲	0
	H012	FDD		◇★★▲	0
	H021	CD-ROM DRIVE		◇★★▲	0
	H022	CD-RW DRIVE		◇★★▲	0
	H023	DVD DRIVE		◇★★▲	0
	H024	DAT DRIVE		◇★★▲	0
	H025	DLT DRIVE		◇★★▲	0
	H026	TAPE DRIVE		◇★★▲	0
	H027	광디스크 DRIVE		◇★★▲	0
	H028	ZIP DRIVE		◇★★▲	0
	H029	JAZZ DRIVE		◇★★▲	0
	H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 치류)		0◇★★▲	
	I011	전원공급기		◇★★▲	0
	I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 급기류)		0◇★★▲	
	J9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0◇★★▲	
기타 정보 기기류	K011	Portable Multimedia Player		◇★★▲	0
	K012	네비게이션		◇★★▲	0
	K013	IP-STB		◇★★▲	0
	K014	LED 전광판		0◇★★▲	
	K015	무인발급기	▲	0◇★★▲	
	K016	현금지급기	▲	0◇★★▲	
	K017	통신인터페이스모듈		◇★★▲	0
	K018	DVR		◇★★▲	0
	K019	바코드리더기		◇★★▲	0
	K020	무선데이터입력장치		◇★★▲	0
	K021	디지털포터앨범		◇★★▲	0▲

	K022	전자칠판		◇★★	0▲
	K023	위성방송수신기		0◇★★	
	K024	PLC 전력선 모뎀	▲	0◇★★	
	K025	하이패스 단말기	▲	◇★	0
	K026	주파수 분석장비(계측기)		0◇★★	
	K027	라벨프린터		★★	0
고속철도 기기류	L011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기기류	0★★		◇
이동형 방송통신 수신기기 류	M011	DMB 수신기		0◇★★	
	M012	GPS 수신기		0◇★★	
배터리 전용기기 류(접속 기능 없 음	M011	전자액자		◇▲	0★
	M012	전자시계		◇▲	0★
	신규	전동공구		◇★★	0
	신규	차량용 블랙박스	▲	◇★	0

4.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도출

또한 2009년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앞서의 품목별 적합성평가방안에 대한 업체 설문조사, 관계기관(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을 제1안과 제2안을 마련하였다.

가.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제1안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제1안은 제조자와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한 것으로 다음 (표 6-10)과 같다.

제1안을 채택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제도개편 효과가 크며, 제조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효과가 있으나, 해당 기기들에 대한 제조자 자체 품질 관리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효율적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10) 적합성 평가대상 품목분류안 제1안

* 진한 이탤릭표시는 제2안에서 적합인증으로 분류된 것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적합인증 대상 (전파연구소 심사 인증)	전파혼신 및 간섭을 일으 킬 수 있는 기자재	해상·항공 업무 용 무선설비(형식 검정)	무선전신경보 자동수신기(※선박 설치)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항공이동업무용)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용)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자동레이다푸팅 기능을 가진 제1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2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3종 레이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4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레이다에 부가하는 자동레이다 푸팅장치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선박국용)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해안국용)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MF?HF송수신장치)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VH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H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VHF송수신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상원조용 라디오존데
			가상원조용 라디오 로봇트
			라디오부이의 기기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형식등록)	F1D?G1D · F2D · G2D · F3E · G3E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의 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ISM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대기기 등)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UWB 기술을 사용하는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기기)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57~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의 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공공목적의 것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업무용의 것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기타)-인명·안전과 관련있는 기기
		미약기기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인명·안전과 관련있는 기기)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의 분계점에 접속하여 위치를 줄수 있는 기자재	단말기기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회선장애 감시기기 가입자보호기
		시스템류	ATM교환기
적합등록대상 (지정시험기관 시험)	전파혼신 및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자재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의 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단말장치 시스템류 회선중단장치류 전송망기자재류 컴퓨터류 주변기기류 내장구성품류
		특정소출력 무선설비의 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안전용 제외)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의 분계점에 접속하여 위	단말장치	전화기(헤드셋전화기 포함)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해를 줄수 있는 기자재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변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코드없는 전화기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영상전화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홈오토폰, 비디오도어폰 등)
			공중전화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다이얼링기능이없는모뎀(카드식포함)
			다이얼링기능이있는모뎀(카드식포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원격통신용, LADC)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코덱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원격제어기기
			ISDN 망중단기기(NTE)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접속커넥터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인터넷멀티미디어 단말기(IPTV)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시스템류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데이터교환기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구내교환기(PBX)
			키폰시스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server)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IP PBX(OmniPCX Enterprise)
			월패드
			FTTH EPON ONT(Optical Network Terminal)
			세대용- ONT
			DIGITAL PBX
			통합경비시스템 장치
			광전송장치
			ADSL(대동기식 디지털 가입자 회선)
			VDSL(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홈네트워크
			IP-PBX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시스템에 사용되는부속물 및 부속품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회선종단장치류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근거리(LAN) 전송장치, 원거리(WAN)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정)
			PCM단국장치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기자재류	전송망기자재류	진폭변조기
			주파수변조기
			주파수변조기(무선)
			텔레비전신호처리기
			중폭기
			분기기
			분배기
			보호기
			동축케이블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케이블모뎀
			직렬단자
			레벨조정기
			주파수 변환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기자재류)
	전자파를 발생하나 위해의 우려가 낮은 기기류	컴퓨터류	퍼스널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사무용컴퓨터
			공업용컴퓨터-(제2안에서는 SDoC) : 산업용기기류
			산업용컴퓨터
			대형컴퓨터
			중형컴퓨터
			소형컴퓨터
			관타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터미널
			포스시스템
			포터블컴퓨터
			네트워크컴퓨터
			일체형컴퓨터
			범용컴퓨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류)
		주변기기류	모니터
			LCD모니터
			TFT모니터
			PDP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프로젝터
			카드리더기
			분배기
			공유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마우스
			키보드
			드래프팅-머신
			PC 게임기
			조이스틱
			디지털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PC 카메라
			스캐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바코드스캐너
			지문인식기
			전자칠판
			디지털타이저
			터치스크린
			트랙볼
			타블렛
			복합기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치류)
			외장형 HDD
			외장형 FDD
			외장형 CD ROM DRIVE
			외장형 CD-RW DRIVE
			외장형 DLT DRIVE
			외장형 DAT DRIVE
			외장형 TAPE DRIVE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어레이
			RAID
			주크박스
			MP3 PLAYER(※MP4 포함)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스위치
			허브
			컨버터
			콘트롤장치
			리피터
			이더넷아답터
			영상처리시스템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트롤장치류)
		내장구성품류	마더보드
			VGA카드
			사운드카드
			TV수신카드
			인터페이스카드
			CONTROL카드
			RISER카드
			LAN카드
			이더넷카드
			전원보드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HDD
			FDD
			CD-ROM DRIVE
			CD-RW DRIVE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DVD DRIVE
			DAT DRIVE
			DLT DRIVE
			TAPE DRIVE
			광디스크 DRIVE
			ZIP DRIVE
			JAZZ DRIVE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급기류)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구성품류
		기타기기류	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IP-STB
			LED 전광판
			무인발급기
			현금지급기
			통신인터페이스모듈
			DVR
			바코드리더기
			무선데이터입력장치
			디지털포터앨범
			전자칠판
			위성방송수신기
			PLC 전력선 모뎀
			하이패스 단말기
			주파수 분석장비(계측기)
			라벨프린터
		방송수신기류	DMB 수신기
			GPS 수신기
		DC사용기기류	전동공구
			차량용 블랙박스
적합등록 대상 (제조사 자체 또는 지정시험 기관 외 시험)	전자파를 발 생하나 기준 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 은 기자재	DC전용기기류	전자액자
			전자시계

나.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제2안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안 제2안은 제조자와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인증제도 개편 전환시점과 소비자 보호와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 기기 분류한 것으로 다음 (표 6-11)과 같다.

제2안을 채택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적합등록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효과가 있으나 제도개편의 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11) 적합성 평가대상 품목분류안 제2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적합인증 대상 (전파연구소 심사 인증)	전 파 혼 신 및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자재	해상·항공 업무용 무 선설비 (형식검정)	무선전신경보 자동수신기(※선박 설치)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의무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_임의비치용(검용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항공이동업무용)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용)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자동레이다푸팅 기능을 가진 제1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2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3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제4종 레이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향행을 위한 레이다에 부가하는 자동레이다 푸팅장치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선박국용)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해안국용)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MF·HF 송수신장치)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VH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HF송수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VHF송수신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상원조용 라디오존데 가상원조용 라디오 로뵓트 라디오부이의 기기	
		방송통신사업용무선설비(형식등록)	무선험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기기)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장치)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육상용)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해상용)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장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계장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계장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형식등록)	F1D·G1D·F2D·G2D·F3E·G3E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의 기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ISM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대 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대 기기 등)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900MHz대역 사용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433MHz대역 사용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13.56MHz대역 사용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1형)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2형) 코드없는 전화기(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코드없는 전화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57~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특정소출력 용무선설비 (형식등록)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 공공서비스용의 것)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 공공서비스용의 것)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 공공서비스용의 것)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인명·안전, 공공서비스용의 것)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단말기기류	전화기(헤드셋전화기 포함)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코드없는 전화기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영상전화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공중전화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다이얼링기능이없는모뎀(카드식포함) 다이얼링기능이있는모뎀(카드식포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원격통신용, LADC)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코덱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위한 장치 등)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원격제어기기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회선장애 감시기기 가입자보호기 ISDN 망중단기기(NTE)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접속커넥터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인터넷멀티미디어 단말기(IPTV)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시스템류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데이터교환기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구내교환기(PBX) ATM교환기 키폰시스템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server)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IP PBX(OmniPCX Enterprise) 월패드 FTTH EPON ONT(Optical Network Terminal) 세대용 ONT DIGITAL PBX 통합경비시스템 장치 광전송장치 ADSL(비동기식 디지털 가입자 회선) VDSL(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홈네트워크 IP-PBX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시스템에 사용되는부속물및구성품	사업자 용으로 면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다중회선키펀, 회선카드, 부속전화기 또는 호출기 모뎀, 통화녹음기, 특수한수화기, 영상기기, 유지보수용기기 시스템전단에서 사용되는 회선스위치(팩시밀리, 전화 또는 모뎀용)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회선중단장 치류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 속기기 광통신용 회선중단장치 근거리(LAN)전송장치, 원거리(WAN)전송장치(통신망 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정) PCM단국장치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중단장치류)	
		전송망기자 재류	진폭변조기 주파수변조기 주파수변조기(무선) 텔레비전신호처리기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보호기 동축케이블 케이블모뎀 직렬단자 레벨조정기 주파수 변환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기자재류)	
적합등록 대상 (지정시험 기관 시험)	전자파적합 기기	산업·과학 또는 의료 용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 기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방송수신기기류	가. 방송수신기기류 DMB 수신기 GPS 수신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방송통신기기류	가. 컴퓨터류 퍼스널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사무용컴퓨터 대형컴퓨터 중형컴퓨터 소형컴퓨터 판타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터미널 포스시스템 포터블컴퓨터 네트워크컴퓨터 일체형컴퓨터 범용컴퓨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류) 나. 주변기기류 모니터 LCD모니터 TFT모니터 PDP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프로젝터 카드리더기 분배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공유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마우스	
			키보드	
			드래프팅-머신	
			PC 게임기	
			조이스틱	
			디지털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PC 카메라	
			스캐너	
			바코드스캐너	
			지문인식기	
			전자칠판	
			디지털타이저	
			터치스크린	
			트랙볼	
			타블렛	
			복합기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치류)	
			외장형 HDD	
			외장형 FDD	
			외장형 CD ROM DRIVE	
			외장형 CD-RW DRIVE	
			외장형 DLT DRIVE	
			외장형 DAT DRIVE	
			외장형 TAPE DRIVE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어레이	
			RAID	
			쥬크박스	
			MP3 PLAYER(※MP4 포함)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스위치	
			허브	
			컨버터	
			컨트롤장치	
			리피터	
			이더넷아답터	
			영상처리시스템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컨트롤장치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류	
			다. 컴퓨터내장구성품류	
			마더보드	
			VGA카드	
			사운드카드	
			TV수신카드	
			인터페이스카드	
			CONTROL카드	
			RISER카드	
			LAN카드	
			이더넷카드	
			전원보드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HDD	
			FDD	
			CD-ROM DRIVE	
			CD-RW DRIVE	
			DVD DRIVE	
			DAT DRIVE	
			DLT DRIVE	
			TAPE DRIVE	
			광디스크 DRIVE	
			ZIP DRIVE	
			JAZZ DRIVE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급기류)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구성품류	
			라. 기타 방송통신기기류	
			Portable Multimedia Player	
			네비게이션	
			IP-STB	
			LED 전광판	
			무인발급기	
			현금지급기	
			통신인터페이스모듈	
			DVR	
			바코드리더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품목	비고
			무선데이터입력장치 디지털포터앨범 전자칠관 위성방송수신기 PLC 전력선 모뎀 하이패스 단말기 주파수 분석장비(계측기) 라벨프린터	
		고속철도기 기류		
		전파응용설 비류		
	전파를 사 용하는 기 기	미약전파기 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 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 템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 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 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미약전파무선기기	
적합등록 대상 (제조사 자 체 시험)	전자파적합 기기	방송통신기 기류	공업용컴퓨터 산업용컴퓨터 산업용 통신 및 제어기기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통신 및 제어기기류 기타 소장이 정하는 특수목적 및 특수구조용의 것	
적합등록 대상 (일반 시험 기관 시험)	전자파적합 기기	다른기기외 접속되지 아니하고, 사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	전자액자 전자시계 전동공구 차량용 블랙박스 기타 단독으로 DC만을 사용하는 기기류	

제 4 절 업체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결과

1. 개 요

또한 앞서의 품목분류 조사와 더불어 해당 조사기간동안 응답업체(총 332업체) 부수적으로 업체의 적합성평가 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 평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2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 수요조사표」 제2부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에는 응답내용 요약을 수록하기로 한다.

2. 응답내용 요약

기존의 형식검정과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형식승인 등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적합인증과 등록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인증제도 전문가 및 인증제도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경우 74.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인증제도 개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같은 인증제도가 선진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제품의 조기 시장출시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하여도 81.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압도적인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현행 4가지 인증제도 적합인증과 등록으로 개편하는 효과와 관련하여 인증비용 및 시간 절감 등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복수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적합인증으로 단일화 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증기간 단축 효과의 경우 68.4%가 '2주'이상 단축된다고 응답하였고 3주 이상 단축된다고 하는 응답자도 3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비용 절감 효과의 경우 45.6%가 3백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였다.

둘째로 적합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도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먼저 인증기간 단축 효과의 경우 72.9%가 단축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지정시험과 자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①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칠 경우 62.8%가 2주 이상 단축된다고 하는 응답하였고, ② 신청자 스스로 시험(자기시험)하는 경우 68.6%가 2주 이상 단축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주 이상 단축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지정시험의 경우 21.5%인 반면 자기시험의 경우 37.2%로 나타나 자기시험이 상대적으로 기간 단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비용 절감 효과의 경우 66.6%가 인증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①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칠 경우 40.3%가 3백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였고 ② 신청자 스스로 시험(자기시험)하는 경우 43.9%가 3백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여 자기시험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잠정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도입시 이용할 의사에 대하여 응답자 69.6%가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이용 의사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동 제도가 신제품 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83.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상기 제도 도입에 따라 신제품 출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예상되는 연매출액의 증가효과에 대하여 응답자는 70.5%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그 가운데 40.0%는 3천만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예전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를 방송통신기기 중심의 통합적 적합성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두 번째의 연구이다. 2008년도의 연구가 주로 새로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의 열개와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제 개정예 초점을 두었다면, 금번 2009년도의 연구는 이에 더하여 2008년도의 기본적인 작업과 방향에 따라 도출된 주요 정책대안을 전파법 시행령 등 후속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2010년 현재의 시점에도 후속입법 작업은 계속 진행중이므로 예측건대 2010년도까지의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완전한 형태의 후속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8년도 연구에 비하여 다음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우선 전 년도의 연구는 예산규모나 투입인력의 한계로 전파법 개정(안) 도출에만 심혈을 기울였으나, 금번 연구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개정 전파법 내용을 토대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등 후속입법의 첫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 개편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0여년후인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측면이 없지 않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300여명 이상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등의 실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주요한 단초가 되므로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논의와 더불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자파 규제 현황, 국제적으로 적합성평가제도와 관련된 주요 동향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전자파 규제분야의 경우 연구자의 일천함으로 인하여 기존문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 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국제적 적합성 평가제도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미 국립기술표준원 주관으로 3~4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 적합성평가제도 및 MRA 워크숍”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최신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과 APEC TEL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기준의 동등성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들을 문헌 중심이긴 하나 분석할 수 있었던 점은 국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 선진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향후에는 이러한 후속입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정책집행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역시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개정 전파법 시행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개정 전파법 시행령(안)

신규 조문 대비표

2009. 7. 28~29일 워크숍 개정 (빨간색)

분류기준 검토 후 수정 (파란색)

2009.10.22 검토회의후 수정(녹색)

2009.12.24 입법조사관 요청수정(보라)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방사: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47조의 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總條) 등을 말한다.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전송망”이란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하는 방송통신망과 같은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2. “분계점”이란 방송통신설비가 다수의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경우에서 건설과 보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방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지점을 말한다.	o 영 제77조의3(적합인증의 대상기자재 등) 제1항제2호 중 ‘전송망’ 용어 정의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 정의 참고 o 제22호: 분계점 정의 삭제(09.10.22) 제77조의3 적합인증대상기자재를 방송통신망과 전송망 직접접속여부로만 구분토록 함에 따름 (이 경우 사업자설비가 포함되나, 면제대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제39조의2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상으로 삼기로 함) o 전파법개정에 따른 “무선국 허가 관련” 인용 규정 개정 o 현행 제54조 이동 - 첨부(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규정 필요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2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무선국변경명세서 2. 방송국, 아마추어국 및 <u>적합성평가</u>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의 무선설비공사설계서(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3. <u>적합성평가를 받은</u>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공사설계서(제4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제48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아마추어국(법 제58조의2에 따른 <u>적합성평가를 받은</u>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u>적합성평가를 받은</u> 다음 각 호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전파법개정에 따른 “무선국 허가 관련” 인용 규정 개정 ○ 제51조제2항을 “3항”으로 이동규정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준 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의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의 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5. <u>적합성평가를 받은</u>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6.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공중선 전력, 송신장치, 공중선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공중선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제51조 (변경허가) <삭 제>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제2항·제49조·제50조 및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	○ 제51조제2항은 제48조제3항으로 이동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u>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삭 제></u> <u>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u>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u>제24조</u>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u>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u>	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제73조(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u>기기</u>는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기의 성능에 <u>장해</u>를 주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u>가. 기기의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 등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u>나. 기기의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u>기기</u>는	○ 전파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을 “전자파적합성기준”으로 변경 - 관련표준(Cisper) 참조 제73조 제1항은 전자파장해기요건 가항: 전도 제한치 나항: 방사제한치 제73조 제2항은 전자파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측정·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전자파 저감(低減)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조사 및 조치) <삭 제> 제56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삭 제>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삭 제>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관리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국내외 표준, 규격, 기술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 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세부적인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관리 제77조의2(적합성평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내성기기 요건 가항: 외부 방사 또는 전도의 영향에 따른 오동작 성능저하 제한 나항: 순간적인 과전압 및 전류에 따른 오동작 성능저하 제한 <신 설> o 법안 제58조의2 제1항에서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 명시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적합성평가기준 -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주택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7·제38조의4·제38조의15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건축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기준 8.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9.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표준 10. 방송통신 분야의 공인된 국제 또는 지역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이나 규격 11.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방송통신기술협회가 제정한 표준이나 규격 12.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등과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등에 대한	제77조의3(적합인증의 대상 등)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방사함으로써 망 위해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 2. 방송통신망 또는 전송망에 직접 접속	건설분야 등) * 법 제37조 : 방송표준 방식 * 법 제45조: 무선설비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국회계류 정부안) 제28조: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법(국회계류 정부안) 제38조의7: 기술기준, 제38조의14: 통신공동구 및 관로설치 기준, 제38조의15: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 방송법 제79조: 유선 방송국등의 기술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 공동시청안테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내통신설비, 제32조의2: 홈네트워크설비, 제42조: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o 법안 제58조의2 제10항에서 적합성평가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방송통신기자재 중 전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u>하여 사용하는 기자재로 망 위해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u> 3. 구내에 방송통신을 위하여 설치하는 <u>홈 네트워크 설비와 공동수신안테나 시설 및 그 부속 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u>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환경, 인체, 인명안전 또는 재산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②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만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적합인증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 세부대상 기자재 및 세부	파 혼·간섭, 망 위해성, 인체영향 및 안정성의 위해도가 높은 기자재는 적합인증 대상기기로 분류 * 분류기준이 제1호와 같이 됨에 따라 제4호 삭제여부 검토 - 적합인증신청, 심사, 공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고시 중 일반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u>기자재등</u>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u>기자재등</u>이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제77조의4(적합등록의 대상 등)</u>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등록을 하려는 자는 적합등록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적합확인증명서 2.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등록신청자에게 적합등록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 2 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자재등" <u>이란</u>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자재 2. 다른기기와 접속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데이터를 출력·저장·제어하는 기자재 3. 시험·검사 등 특정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기자재 4. 기타 위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o 법안 제58조의2 제10항에서 적합성평가 방법 및 절차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적합등록 신청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제조자 적합 선언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17050)"와 "공산품 안전관리 및 품질경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고 o 법안 제58조의2 제3항 단서의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정함 o 서류 비치기간을 정함 - 「제조자 적합선언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17050)」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신고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u>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 자재</u>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서류의 비치기간은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u>5년</u>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77조의5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등록 세부대상기자재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변경)</u> ①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u>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u>)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1.</u>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u>2.</u> 시험성적서(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5항 후문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7조의3 또는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세부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후 5년 * 통상 기록보관기간은 5년~10년이나, 우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성적서 보관기간(5년)과 IT제품의 수명주기를 고려, 단종후 5년으로 함 (09.10.22) o 법안 제58조의2 제10항에서 적합성평가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법안 제58조의2 제5항 적합성평가의 변경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법안 제58조의2 제5항 후문 관련, 적합성평가 받은 기기의 부품 변경·대체·배치 변경 등 적합성평가기준의 변경 관련 사항의 준용 절차 명시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채등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채등과 포장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채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채등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않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방송통신기자채등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기자채등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채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제77조의6(잠정인증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잠정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용자설명서 2. 기술설명서 3. 시험결과 설명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대리인 지정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만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허용할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한	o 법안 제58조의2 제10항에서 적합성평가 방법 및 절차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적합성평가제도 중 잠정인증(법안 제5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때에는 잠정인증신청자에게 잠정인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의2 제8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잠정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잠정인증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7(적합성평가 정보의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공공복리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법 제58조의3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이란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기자재등이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법안 제58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명시 ○ 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적합성평가면제 방법 및 절차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면제대상기기를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로 한정된 것은 사전규제 완화 따라 면제절차를 명확히 하여 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기기의 유통방지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등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u>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u>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53조3제1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자에게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세부 면제대상기자재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등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유사입법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77조의9(적합성평가 신청의 제한)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2.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o 법안 제58조의4 제3항의 취소제한 기간을 정함 - 적합성평가 취소 원인의 중대성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로 차등화 * 제1호: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의 취소 * 제2호: 인증 후 기준부적합, 표시의무·변경신고의무 위반 및 적합등록후 서류미비 등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제77조의10(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시험기관 지정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4. 법인등기부등본(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야 중 해당 분야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u>광통신을 포함한다</u>)분야 2. 무선통신분야 3. 전자파적합성분야 4. 전기안전분야 5. 전자파흡수율분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에 관한 심사를 법 제5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 요청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문심사기구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	른 취소 ○ 법안 제58조의5 제5항에서 시험기관의 심사 및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방송통신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심사, 공고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려는 법인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1(시험기관의 변경 등) ① 법 제58조의5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7조의10 제2항에 따른 시험분야 변경, 추가 또는 일부 폐지 2. 시험기관명 또는 시험장의 소재지 등의 변경 3. 지정받은 시험업무의 일정기간 중지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77조의10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o 법 개정안 제58조의5 제5항에서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및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방송통신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및 폐지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 “지정”은 “변경 지정”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u>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u> 변경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u>해당하는</u> 변경인 경우에는 시험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의5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지정시험기관은 업무를 폐지하기 전에 지정시험기관 폐지신청서에 시험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u>승인</u>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에 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u>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u>	○ 법안 제58조의5 제5항에서 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제도 신설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지정 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	수 또는 합병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 시험기관 지정서(<u>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u>)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3(전문심사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58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는 전파연구소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국제표준화 기구의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국제적 심사체계와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기구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의14(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2년이 경과하였거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7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법안 제58조의5 제4항에서 전문심사기구를 대통령령에 위임 - 전파연구소로 전문심사기구를 정하고, - 심사기구의 운영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적 심사체계(ISO 17025)에 부합토록 규정 - 심사기구의 관리·감독권 규정 ○ 법안 제58조의6 제3항에서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방송통신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관리)의 검사시기(매 2년 경과)와 수시검사 대상 규정 참고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되는 경우 2. 법 제58조의8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③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117조의2를 준용한다. 제77조의15(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o 법안 제58조의7 제1항에서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o 행정처분은 령 제118조에서 통합 규정 - 제118조의3 별표 26의3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7조의16(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①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절차는 외국 정부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2.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상호인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정부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o 법안 제58조의8 제2항에서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제2항 참고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등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등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등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전파의 진흥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 제21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97조의2(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 등의 수수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고하는 자 및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 지정 등에 따른 수수료 명시 - 적합성평가수수료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별표8> 및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별표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삭 제>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의2.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 5의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한다)을 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		4> 참고 - 시험기관 지정수수료 : "방송통신시험기관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별표4>의 1. 참조 - 교정수수료는 근거 없어 규정 안함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등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등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또는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	제117조의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등의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7일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이 법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할 때에는 당사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등을 조사 또는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개정 전파법 제71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조사 조치 절차를 규정한 것임 - 법안 제71조의2제1항의 조사 또는 시험은 법 제71조의2 제3항~제5항 준용 - 법안 제71조의2제2항의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 제출요구 절차 규정 * 법 제71조의2 제4항 관련 증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08-81호)」 제24조를 개정 <고시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 또는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시정·수거·철회·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의4제1항·제2항, 법 제58조의7제2항, 법 제7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처분기준: 별표 23 2. 법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중사 정지 처분기준: 별표 24 3.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명령 처분기준: 별표 25 4.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 별표 26 5.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24조(증표) 법 제71조의2 제4항 및 영 제72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o 관련 고시 내용을 상향입법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u>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별표 26의2</u> 6. 법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u>처분기준: 별표 26의3</u>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23에 따른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개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개설신고 폐지명령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무선국의 운용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삭제>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삭제> 제7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2의2.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2의3. 제58조의7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4. <삭제> 5. <삭제> 6.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허용시간·주파수·공중선전력 제한처분이나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삭 제> 3. <u>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율의 측정대상기기 및 측정방법의 고시</u> <u>3의2. 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u> <u>3의3. 법 제47조의3에 제3항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여부에 관한 측정·조사</u> 4.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삭 제> <u>5의2. 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u> <u>5의3.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u> <u>5의4. 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u> <u>5의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심사</u> <u>5의6.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u> <u>5의7. 법 제58조의7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u> <u>5의8.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u>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전파연구소에 위임 (09.10.22)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삭 제>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	5의9.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5의10. 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처리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삭 제> 9의2. 법 제7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에 관한 조사·시험 및 <u>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u> 10. 법 제77조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11. 법 제90조제5의2부터 제90조제5의6까지, 제9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 24. (생략) 25. 법 제7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u>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u>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삭 제> 3. <삭 제>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등을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u>1의2 <삭 제></u> <u>2. <삭 제></u>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u>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등을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u>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변조 또는 복제한 기자재등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u>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u>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u>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19조의2제1항제1호</u>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u>제19조의2제1항제3호</u>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u>제25조제1항</u>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현행과 같음) 3의2.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58조의2제4항</u>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3. <u>제58조의2제6항</u>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4. <u>제58조의6제1항</u>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5. <u>제58조의6제1항</u> 및 <u>제71조의2제2항</u>(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u>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u> <u>5의6.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u> <u>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u> 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6항·제7항, 제11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67조제1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형태계수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8 제1호에 따른 전파사용료 산정은 2012년 0월 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일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합하여 규정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한다.	<u>3년</u>	
제2조(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u>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 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u>	
제3조(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 등록·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 적합등록을 신청 중인 무선설비의 기 기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 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 중인 전기 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 등록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한다.	<u>제32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u> <u>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u>	
② 제1항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 자파적합등록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 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 자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으로 본다.	<u>제3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u> <u>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u> <u>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4조 제1항 별표의 <제3종> 제129호 를 삭제하고 제130호와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u> <u>13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u> <u>13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u> <u>제124조 제2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u> <u>1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u>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파법」 위반행 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 할 때에는 종전의 「전파법」에 따른 다.	<u>④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u> <u>제16조 별표 5의 제12호 본문 중 "(전파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전파법 제 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 품에 한한다)"로 한다.</u>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 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u>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전파법 개정안('09.4. <국회소위심사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및 제49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중 “第48條, 第48條의2 및 第49條”를 “제49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9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감독 제14조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전파법 시행령 별표

[별표 6의2]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제77조의15 관련)

1. 시험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을 최근의 기준에 따라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 나. 시험의 유형, 범위, 업무량 및 지정범위 등에 적합한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수립·유지할 것 다. 시험방법은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한 때에는 유효성을 입증할 것
2. 측정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험에 사용되는 설비는 시험결과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할 것 나. 시험설비는 정기적으로 예방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할 것
3. 직원의 품질관리 및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4. 시험성적서 등 시험관련 서류 및 기기의 시험을 위해 제작된 구조물 또는 프로그램 등(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시험 후 5년간 보관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할 것

[별표 14의2]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의 수수료

(제97조의2 관련)

1.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수수료

적합성평가분야	수수료(단위 :원)
적 합 인 증	165,000
적 합 등 록	74,500
잠 정 인 증	165,000
※ 비고 1. 제77조의4에 따라 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자재 중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변경수수료

신고구분	적합성평가분야	수수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신고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1. 제1호중 해당되는 적합성평가 수수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변경신고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명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함)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1.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명서 발급건수가 1건인 경우 : 5,000원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명서 발급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1건수수료+(추가건수×1건수수료의 50%)

3.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

(금액단위 : 원)

구분	지정분야			수수료
	유선통신(광통신을 포함한다), 무선통신 및 전기안전분야 중	전자파적합성분야	전자파 흡수율분야	
신규 및 분야추가 지정신청	1개분야	-	-	1,990,000
	2개분야	-	-	3,420,000
	3개분야	-	-	4,850,000
	-	1개분야	-	5,440,000
	-	-	1개분야	2,050,000
	1개분야	1개분야	-	6,870,000
	2개분야	1개분야	-	8,300,000
	3개분야	1개분야	-	9,730,000
	1개분야	-	1개분야	3,460,000
	2개분야	-	1개분야	4,890,000
	3개분야	-	1개분야	6,320,000
	-	1개분야	1개분야	6,982,000
	1개분야	1개분야	1개분야	8,340,000
	2개분야	1개분야	1개분야	9,770,000
	3개분야	1개분야	1개분야	11,200,000
시험종목 변경신청	분야별로 적용			990,000

※ 비고 : 제77조의16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은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야와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시험종목변경신청을 적용한다.

[별표 26의2]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2월)	취소 또는 시정명령(1월)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1월)	취소 또는 시정명령(1월)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1월)	취소 또는 시정명령(1월)
4. 적합등록자가 적합성평가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1월)	취소 또는 시정명령(1월)

※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정명령은 법 제5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사용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26의3]

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18조제1항제6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정도가 지정된 시험분야 전반에 악영향을 준 경우에는 시험업무 전부정지로, 지정된 시험분야의 일부분에 악영향을 준 경우에는 시험업무 일부정지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58조의7제1항	시정명령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6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1년	지정취소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검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3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6월	지정취소
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3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6월	지정취소
5.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1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6월	시험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1년	지정취소

[별표 28]

과태료 부과기준

(제1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무선국 시설자의 전파 이용에 방해를 주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 3)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나.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2. 개별기준

가. 무선설비 등의 운용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방송·전기통신 사업용 무선국 중 위반 무선국 수			그 밖의 무선국 중 위반 무선국 수		
		1~5 국	6~10 국	11국 이상	1~5 국	6~10 국	11국 이상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 제89조의2	500	750	1,000			
1의2.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	법 제90조제1호	40	80	100	20	30	50

용한 자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의2.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3.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가. 시설목적에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나. 통신 상대방 외의 무선국과 통신을 한 경우 다. 통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방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설치장소를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고정용인 경우 2) 휴대용을 고정용으로 설치한 경우 3) 휴대용을 차량용으로 설치한 경우 4) 그 밖의 경우 바.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힌 호출부호(호출명칭) 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사.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히지 아니한 전파형식 또는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 아.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힌 점유주파수대폭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자.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힌 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차.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힌 공중선전력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1) 증폭기를 부가 사용한 경우 2)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 3) 중단관을 교체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선 전력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카.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에 적힌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타.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또는 발사내	법 제90조제2호 법 제90조제2호의2 법 제90조제3호	150 150 150 150 120 120 120 150 150 120 80 120 120 120 12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50 200 200 1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250 250 200 150 250 250 150 250 250 250 250	75 75 75 75 60 60 60 75 60 50 40 60 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80 100 100 80 100 100 100 100	150 150 150 150 150 150 100 150 150 100 150 150 150 150
---	--	---	--	--	---	---	---

용을 위반한 경우 파.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200	250	300	100	150	200
5.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150	250	300	75	100	150
6.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120	200	250	60	100	150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50	80	100
8. 법 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120	200	250	60	100	150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0	200	250	60	100	150
10. 법 제45조 및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법 제90조제4호	120	200	250	60	100	150
	법 제90조제5호	150	250	300	75	100	150
11.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강도의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90조제6호	120	200	250	60	100	150
12.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법 제91조제1호	150	250	300	75	100	150
13. 법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 중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법 제91조제2호 법 제91조제3호	100	150	200	80	100	150
14.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4호	40	80	100	40	80	100
16.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5호	40	80	100	20	30	50
	법 제91조제6호	40	80	100	20	30	50
	법 제91조제7호						
	법 제92조제1호 법 제92조제2호	100	150	200			

	법 제92조제3호	40	80	100	20	30	50
		50	80	100	50	80	100
		40	80	100	20	30	50
		40	80	100	20	30	50
		40	80	100	20	30	50
		40	80	100	20	30	50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등의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법적 근거	위반수량 및 판매금액	과태료 금액
1. 법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법 제90조제5호의3	100개 미만 또는 500만원 미만	50
		100개 이상 500개 미만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
		1,000개 이상 2,000개 미만 또는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200
		2,000개 이상 또는 7,000만원 이상	300
2.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제4호	100개 미만 또는 500만원 미만	50
		100개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100

3.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제5호	100개 미만 또는 500만원 미만	50
		100개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100

다. 준수의무 등의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

(단위: 만원)

위 반 내 용	법적 근거	과태료 금액
1.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후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제5호의2	100
2.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제5호의4	200
3. 법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제5호의5	200
4.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법 제90조제5호의6	300

[참 고] :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다른 법령 개정 대상

유형	대상	비고
전파법 시행령에서 직접 개정이 가능한 것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도 변경에 따른 단순 조문번호 및 명칭 변경에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및 제2항 본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 제14조	
전파법 시행령에서 직접 개정이 곤란한 것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12조(전기안전기준)	내용 개정에 해당 하므로 별도 개정 추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제21조	법률이나 대통령령 에서 타부처 부령 을 개정할 사례가 없음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제14조	제도 변경에 따른 단순명칭변경으로 가능한 하나 부처 직제사항이므로 신 중한 접근 필요

부 록 2. 신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 수요조사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수요조사

>> 교차분석표

2009 - 08

>> Contents

Part I. 품목별 적합성평가방안

Part II.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사전평가



Part I. 품목별 조사

1. 취급 품목



다음 중 현재 귀사에서 제조, 수입, 판매 및 시험하는 제품이 속하는 분류를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례수	취급합	비율 (%)
유선기기	☐ 단말기기류	101	47	46.5
	☐ 시스템류 및 부속물	101	35	34.7
	☐ 회선종단장치류	101	13	12.9
	☐ 전송망 기자재류(종합유선방송기자재류)	101	10	9.9
무선기기	☐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 전신, 전화 경보, 항공 및 해상통신, 무선방위측정, 레이더)	101	6	5.9
	☐ 방송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기 (무선호출, 이동통신(2G(셀룰러, PCS), 3G(UMTS-2000), 무선데이터통신(900MHz), 위성 휴대통신(GMPCS), 주파수공용전화(TRS), 해상이동전화, 무선(CATV), 가입자회선용서비스 (B-WLL), 위치기반서비스(LBS), 휴대인터넷(WIBRO) 등)	101	20	19.8
	☐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산업·과학·의료용, 아마추어, 생활무선국, 코드없는 전화기, RFID/USN, UWB, 물체감지, 무선탐지 등)	101	28	27.7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 데이터전송, 안전시스템(보안), 무선랜, 중계기, 차 량충돌방지 레이더, 이동체 식별, 음성음향전송 등)	101	45	44.6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 컴퓨터류(산업용, 가정용(PC, 노트북) 등)	101	27	26.7
	☐ 컴퓨터주변기기류(입력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내장형), 컨트롤러 등)	101	45	44.6
	☐ 컴퓨터내장구성품류(내장 보드 및 각종카드(비디오, 사운드) 저장장치(외장형), 전 원공급기 등)	101	27	26.7
	☐ 기타 정보기기류 (PMP, 네비게이션, 전광판, 하이패스단말기, 무인발급기, 현금지급기, DVR, 위성방송수신기, 바코드 리더기, 디지털 앨범, 전자칠판, DVR, 계측기, 라벨프린터, 전력선모뎀, 계측기, 통신인터 페이스모듈 등)	101	49	48.5
	☐ 고속철도기기류	101	6	5.9
	☐ 이동형 방송통신수신기기류(DMB, GPS 수신기 등)	101	21	20.8
	☐ 배터리로만 동작하고, 다른기기과 접속되지 않는 기타기기류 (전자액자, 시계, 전동공구, 차량용 블랙박스 등)	101	25	24.8

2. 유선기기 中 단말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A11	전화기(헤드셋전화기 포함)	38	18.4	52.6	28.9
A12	다기능 전화기(시계, 라디오, TV 또는 ·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38	21.1	63.2	15.8
A13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38	21.1	52.6	26.3
A14	코드없는 전화기	37	35.1	48.6	16.2
A1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36	27.8	58.3	13.9
A16	영상전화기	36	41.7	55.6	2.8
A17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홈오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36	30.6	66.7	2.8
A18	공중전화기	36	44.4	47.2	8.3
A20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36	41.7	55.6	2.8
A21	다이얼링기능이없는모뎀(카드식포함)	36	13.9	72.2	13.9
A22	다이얼링기능이있는모뎀(카드식포함)	36	13.9	69.4	16.7
A23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36	33.3	58.3	8.3
A24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원격통신용, LADC)	37	35.1	54.1	10.8
A32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36	52.8	38.9	8.3
A33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36	25.0	61.1	13.9
A35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38	39.5	52.6	7.9
A36	코덱	37	27.0	64.9	8.1
A41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35	28.6	48.6	22.9
A42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36	33.3	63.9	2.8
A43	비상통보기기(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36	63.9	36.1	0.0
A44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36	41.7	52.8	5.6
A45	원격제어기기	38	36.8	50.0	13.2
A51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37	48.6	43.2	8.1
A52	회선장애 감시기기	36	50.0	47.2	2.8
A53	가입자보호기	36	47.2	47.2	5.6
A61	ISDN 망중단기기(NTE)	36	30.6	58.3	11.1
A62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36	30.6	63.9	5.6
A63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36	33.3	61.1	5.6
A71	접속커넥터	37	29.7	51.4	18.9
A81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36	38.9	52.8	8.3
A82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37	29.7	62.2	8.1
A83	인터넷멀티미디어 단말기(IPTV)	37	40.5	54.1	5.4
A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37	21.6	62.2	16.2

3. 유선기기 中 시스템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B11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26	42.3	53.8	3.8
B12	데이터교환기	24	33.3	66.7	0.0
B13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24	29.2	70.8	0.0
B14	구내교환기(PBX)	25	28.0	60.0	12.0
B15	ATM교환기	25	44.0	44.0	12.0
B21	키폰시스템	25	24.0	56.0	20.0
B31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25	32.0	40.0	28.0
B41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24	25.0	45.8	29.2
B42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24	29.2	54.2	16.7
B43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server)	24	29.2	66.7	4.2
B51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25	36.0	60.0	4.0
B52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4	37.5	45.8	16.7
B53	IP PBX(OmniPCX Enterprise)	25	32.0	52.0	16.0
B54	월패드	24	33.3	50.0	16.7
B55	FTTH EPON ONT(Optical Network Terminal)	24	33.3	62.5	4.2
B56	세대용 ONT	24	20.8	70.8	8.3
B57	DIGITAL PBX	24	33.3	54.2	12.5
B58	통합경비시스템 장치	25	24.0	60.0	16.0
B59	광전송장치	25	40.0	60.0	0.0
B60	ADSL(네동기식 디지털 가입자 회선)	24	25.0	75.0	0.0
B61	VDSL(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24	33.3	58.3	8.3
신규	홈네트워크	25	28.0	64.0	8.0
신규	IP-PBX	26	30.8	50.0	19.2
B6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25	24.0	48.0	28.0
B62	시스템에 사용되는부속물및구성품 -다중회선키폰,회선카드,부속전화기또는호출기 -모뎀,통화녹음기,특수한수화기,영상기기,유지보수용기기 -시스템전단에서사용되는회선스위치(팩시밀리,전화또는모뎀용)	24	25.0	45.8	29.2
B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5	24.0	48.0	28.0

4. 유선기기 中 회선종단장치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C1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12	33.3	58.3	8.3
C12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13	38.5	53.8	7.7
C13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 장치	12	33.3	58.3	8.3
C14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12	33.3	66.7	0.0
C21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13	46.2	53.8	0.0
C31	근거리(LAN)전송장치, 원거리(WAN)전송장치(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정)	12	33.3	66.7	0.0
C41	PCM단국장치	13	30.8	69.2	0.0
C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12	33.3	58.3	8.3

5. 유선기기 中 전송망 기자재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D11	진폭변조기	9	11.1	77.8	11.1
D12	주파수변조기	9	11.1	77.8	11.1
D13	주파수변조기(무선)	8	12.5	87.5	0.0
D14	텔레비전신호처리기	8	12.5	87.5	0.0
D21	증폭기	8	12.5	75.0	12.5
D22	분기기	9	11.1	55.6	33.3
D23	분배기	9	11.1	55.6	33.3
D24	보호기	9	11.1	66.7	22.2
D41	동축케이블	8	12.5	62.5	25.0
D51	케이블모뎀	8	12.5	87.5	0.0
D61	직렬단자	8	12.5	62.5	25.0
D72	레벨조정기	8	12.5	75.0	12.5
D73	주파수 변환기	8	12.5	75.0	12.5
D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기자재류)	8	12.5	75.0	12.5

6. 무선기기 中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W	무선전신경보 자동수신기(※선박 설치)	6	83.3	0.0	16.7
WA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6	83.3	16.7	0.0
WB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6	83.3	16.7	0.0
WC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6	83.3	16.7	0.0
D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의무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DB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의무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DC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의무비치용(경용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DA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임의비치용(중파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DBB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임의비치용(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DCA	무선방위측정기(선박국용) 임의비치용(경용 무선방위측정기)	6	83.3	16.7	0.0
A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6	83.3	16.7	0.0
SSS	단축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항공이동업무용)	6	83.3	16.7	0.0
SS	단축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용)	6	83.3	16.7	0.0
S	단축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용)	6	83.3	16.7	0.0
RAL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34Cm이상)	6	83.3	16.7	0.0
RAM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4Cm미만)	6	83.3	16.7	0.0
RAS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6	83.3	16.7	0.0
RAA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1종레이다 (자동레이다푸팅 기능을 가진 제1종 레이다)	6	83.3	16.7	0.0
RB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2종 레이다	6	83.3	16.7	0.0
RC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3종 레이다	6	83.3	16.7	0.0
RD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제4종 레이다	6	83.3	16.7	0.0
RP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에 부가하는 자동레이다 푸팅장치	6	83.3	16.7	0.0
VA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6	83.3	16.7	0.0
SA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선박국용)	6	83.3	16.7	0.0
SB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해안국용)	6	83.3	16.7	0.0
SN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6	83.3	16.7	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6. 무선기기 中 해상/항공 업무용 무선설비_계속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SH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MF·HF송수신장치)	6	66.7	33.3	0.0
SV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 호출장치의 기기(VHF송수신장치)	6	66.7	33.3	0.0
M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송수신장치)	6	66.7	33.3	0.0
H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MF·HF송수신장치)	6	66.7	33.3	0.0
VR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VHF송수신장치)	6	66.7	33.3	0.0
NR	네비텍스수신기	6	83.3	16.7	0.0
SR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6	83.3	16.7	0.0
SE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6	83.3	16.7	0.0
SD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6	83.3	16.7	0.0
AIS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6	83.3	16.7	0.0
PS	가상원조용 라디오존데	6	83.3	16.7	0.0
PR	가상원조용 라디오 로봇트	5	80.0	20.0	0.0
B	라디오부이의 기기	5	80.0	20.0	0.0
A53	가입자보호기	36	47.2	47.2	5.6
A61	ISDN 망중단기기(NTE)	36	30.6	58.3	11.1
A62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36	30.6	63.9	5.6
A63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36	33.3	61.1	5.6
A71	접속커넥터	37	29.7	51.4	18.9
A81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36	38.9	52.8	8.3
A82	인터넷전화기(IP전화기)	37	29.7	62.2	8.1
A83	인터넷멀티미디어 단말기(IPTV)	37	40.5	54.1	5.4
A99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37	21.6	62.2	16.2

7. 무선기기 中 방송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 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CA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7	52.9	41.2	5.9
MCA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18	55.6	44.4	0.0
MCA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18	55.6	44.4	0.0
MCA2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0.0	44.4	5.6
MCA3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19	47.4	47.4	5.3
MCA4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18	50.0	50.0	0.0
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기타)	18	50.0	50.0	0.0
PCS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18	55.6	44.4	0.0
PCS1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18	55.6	44.4	0.0
PCS2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0.0	44.4	5.6
PCS3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0.0	50.0	0.0
PCS4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18	50.0	50.0	0.0
PCS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18	50.0	50.0	0.0
DATA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44.4	55.6	0.0
CCCA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육상용)	19	42.1	57.9	0.0
CCCA2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해상용)	18	44.4	55.6	0.0
CCCA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18	50.0	50.0	0.0
MCP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5.6	44.4	0.0
GMPCS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5.6	44.4	0.0
WLL1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3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18	44.4	55.6	0.0
WLL2	가입자회선용무선설비의 기기(26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18	44.4	55.6	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18	55.6	44.4	0.0
IMT1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18	55.6	44.4	0.0
IMT2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0.0	44.4	5.6
IMT3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기기)	18	50.0	50.0	0.0
IMT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18	50.0	50.0	0.0
IMT9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18	50.0	50.0	0.0
CATV1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18	44.4	55.6	0.0
CATV2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25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18	44.4	55.6	0.0
WMBRO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계장치)	18	50.0	50.0	0.0
신규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8	44.4	55.6	0.0
LBS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및 중계장치)	18	55.6	44.4	0.0

8. 무선기기 中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V	F1D・G1D・F2D・G2D・F3E・G3E전파를 사용하는 송수신장치의 기기	22	54.5	40.9	4.5
H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ISM기기)	23	60.9	39.1	0.0
CB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42.9	47.6	9.5
HAM1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대 기기)	21	47.6	47.6	4.8
HAM2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대 기기 등)	21	57.1	38.1	4.8
RLS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61.9	38.1	0.0
ERT	간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61.9	38.1	0.0
ETRS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21	52.4	42.9	4.8
E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21	42.9	52.4	4.8
RFID1	RFID/USN용 무선기기(900MHz대역 사용기기)	22	36.4	45.5	18.2
RFID2	RFID/USN용 무선기기(433MHz대역 사용기기)	21	38.1	47.6	14.3
RFID3	RFID/USN용 무선기기(13.56MHz대역 사용기기)	22	40.9	45.5	13.6
MICS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71.4	19.0	9.5
SRD2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57.1	38.1	4.8
SRD1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57.1	38.1	4.8
CLP1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1형)	21	33.3	47.6	19.0
CLP2	코드없는 전화기(아날로그방식 2형)	21	33.3	47.6	19.0
DCP17	코드없는 전화기(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33.3	52.4	14.3
DCP24	코드없는 전화기(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38.1	47.6	14.3
UWB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21	52.4	47.6	0.0
SRD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57~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21	52.4	47.6	0.0

9. 무선기기 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LARN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39	56.4	43.6	0.0
LARN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36	30.6	58.3	11.1
LARN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37	37.8	48.6	13.5
LARN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36	47.2	50.0	2.8
LARN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36	55.6	41.7	2.8
LARN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38	36.8	52.6	10.5
LARN7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36	41.7	58.3	0.0
LARN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36	22.2	63.9	13.9
LARN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39	23.1	59.0	17.9
LPD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40	30.0	57.5	12.5

10.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컴퓨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 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A011	퍼스널컴퓨터	27	25.9	55.6	18.5
A012	노트북컴퓨터	27	25.9	55.6	18.5
A013	사무용컴퓨터	27	29.6	51.9	18.5
A021	공업용컴퓨터	26	38.5	50.0	11.5
A022	산업용컴퓨터	26	46.2	42.3	11.5
A023	대형컴퓨터	25	40.0	52.0	8.0
A024	중형컴퓨터	25	40.0	52.0	8.0
A025	소형컴퓨터	25	24.0	68.0	8.0
A026	판타컴퓨터	25	28.0	68.0	4.0
A027	워크스테이션	26	34.6	57.7	7.7
A031	서버	27	33.3	59.3	7.4
A032	터미널	25	20.0	68.0	12.0
A033	포스시스템	25	24.0	56.0	20.0
A034	포터블컴퓨터	25	24.0	56.0	20.0
A035	네트워크컴퓨터	25	24.0	60.0	16.0
A036	일체형컴퓨터	26	23.1	53.8	23.1
A037	범용컴퓨터	25	24.0	56.0	20.0
A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류)	23	30.4	56.5	13.0

11.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컴퓨터주변기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B011	모니터	35	31.4	54.3	14.3
B012	LCD모니터	35	31.4	54.3	14.3
B013	TFT모니터	35	31.4	54.3	14.3
B014	PDP모니터	31	32.3	54.8	12.9
B021	프린터	35	31.4	57.1	11.4
B022	플로터	31	25.8	67.7	6.5
B023	프로젝터	31	29.0	64.5	6.5
B024	카드리더기	35	31.4	51.4	17.1
B031	분배기	33	21.2	57.6	21.2
B032	공유기	33	24.2	54.5	21.2
B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출력장치류)	33	18.2	54.5	27.3
C011	마우스	35	8.6	51.4	40.0
C012	키보드	36	8.3	52.8	38.9
C013	드래프팅-머신	31	32.3	51.6	16.1
C014	PC 게임기	32	34.4	56.3	9.4
C015	조이스틱	32	18.8	56.3	25.0
C021	디지털카메라	33	33.3	60.6	6.1
C022	디지털비디오카메라	34	32.4	55.9	11.8
C023	PC 카메라	34	23.5	52.9	23.5
C031	스캐너	31	29.0	45.2	25.8
C032	바코드스캐너	34	35.3	55.9	8.8
C033	지문인식기	34	41.2	50.0	8.8
C034	전자철관	31	25.8	64.5	9.7
C041	디지털타이저	31	32.3	61.3	6.5
C042	터치스크린	34	32.4	52.9	14.7
C043	트랙볼	31	12.9	61.3	25.8
C044	타블렛	31	19.4	64.5	16.1
C045	복합기기	31	29.0	54.8	16.1
C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입력장치류)	31	25.8	54.8	19.4

다음 페이지에 계속..

11.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컴퓨터주변기기류_계속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D011	외장형 HDD	35	17.1	54.3	28.6
D012	외장형 FDD	32	15.6	59.4	25.0
D013	외장형 CD ROM DRIVE	32	18.8	56.3	25.0
D014	외장형 CD-RW DRIVE	32	18.8	56.3	25.0
D015	외장형 DLT DRIVE	31	16.1	58.1	25.8
D016	외장형 DAT DRIVE	31	16.1	58.1	25.8
D017	외장형 TAPE DRIVE	31	16.1	58.1	25.8
D018	외장형 광자기디스크 드라이브	31	16.1	58.1	25.8
D019	디스크어레이	32	21.9	56.3	21.9
D021	RAID	32	31.3	56.3	12.5
D022	쥬크박스	31	16.1	64.5	19.4
D023	MP3 PLAYER(※MP4 포함)	34	26.5	47.1	26.5
D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31	22.6	58.1	19.4
E011	스위치	31	22.6	51.6	25.8
E012	허브	32	21.9	53.1	25.0
E013	컨버터	31	22.6	54.8	22.6
E014	컨트롤장치	31	32.3	51.6	16.1
E015	리피터	31	25.8	54.8	19.4
E016	이더넷아답터	31	25.8	58.1	16.1
E021	영상처리시스템	31	32.3	54.8	12.9
E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않은 컨트롤장치류)	31	22.6	54.8	22.6

12.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컴퓨터내장구성품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G011	마더보드	26	23.1	65.4	11.5
G012	VGA카드	26	15.4	73.1	11.5
G013	사운드카드	26	15.4	73.1	11.5
G014	TV수신카드	26	15.4	73.1	11.5
G015	인터페이스카드	25	20.0	76.0	4.0
G016	CONTROL카드	25	20.0	76.0	4.0
G017	RISER카드	25	20.0	76.0	4.0
G021	LAN카드	26	15.4	73.1	11.5
G022	이더넷카드	25	16.0	76.0	8.0
G031	전원보드	25	24.0	72.0	4.0
G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보드류)	25	12.0	84.0	4.0
H011	HDD	26	11.5	69.2	19.2
H012	FDD	25	12.0	72.0	16.0
H021	CD-ROM DRIVE	25	12.0	80.0	8.0
H022	CD-RW DRIVE	25	12.0	80.0	8.0
H023	DVD DRIVE	25	12.0	80.0	8.0
H024	DAT DRIVE	25	12.0	80.0	8.0
H025	DLT DRIVE	25	12.0	80.0	8.0
H026	TAPE DRIVE	25	12.0	80.0	8.0
H027	광디스크 DRIVE	25	12.0	80.0	8.0
H028	ZIP DRIVE	25	12.0	80.0	8.0
H029	JAZZ DRIVE	24	12.5	79.2	8.3
H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저장장치류)	25	12.0	84.0	4.0
I011	전원공급기	26	15.4	76.9	7.7
I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원공급기류)	25	16.0	80.0	4.0
J9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내장구성품류	25	12.0	80.0	8.0

13.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기타 정보 기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K011	Portable Multimedia Player	40	22.5	55.0	22.5
K012	네비게이션	39	38.5	48.7	12.8
K013	IP-STB	38	26.3	63.2	10.5
K014	LED 전광판	41	22.0	56.1	22.0
K015	무인발급기	41	31.7	61.0	7.3
K016	현금지급기	39	46.2	46.2	7.7
K017	통신인터페이스모듈	40	25.0	57.5	17.5
K018	DVR	39	17.9	66.7	15.4
K019	바코드리더기	39	12.8	64.1	23.1
K020	무선데이터입력장치	40	22.5	60.0	17.5
K021	디지털포터앨범	39	10.3	56.4	33.3
K022	전자철판	39	15.4	59.0	25.6
K023	위성방송수신기	39	35.9	56.4	7.7
K024	PLC 전력선 모뎀	39	33.3	56.4	10.3
K025	하이패스 단말기	40	30.0	57.5	12.5
K026	주파수 분석장비(계측기)	38	36.8	50.0	13.2
K027	라벨프린터	39	17.9	51.3	30.8

14.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고속철도 기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L011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기기류	6	83.3	16.7	0.0

15.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이동형 방송통신 수신기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M011	DMB 수신기	21	14.3	76.2	9.5
M012	GPS 수신기	21	19.0	61.9	19.0

16. 컴퓨터 및 정보기기류 中 배터리로만 동작하고, 다른기기과 접속되지 않는 기타기기류



다음 제품 품목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인증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대상기기명	사례수	적합인증 (정부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등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록)
M011	전자액자	24	8.3	41.7	50.0
M012	전자시계	25	8.0	40.0	52.0
신규	전동공구	25	12.0	60.0	28.0
신규	차량용 블랙박스	24	41.7	41.7	16.7



Part II. 적합성 평가 관련

1. 연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이용 빈도



문1. 귀사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구 정보통신기기 인증)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연1~2회	연3~4회	연5~10회	연11~20회	연50회이상
전 체		101	47.5	19.8	11.9	5.9	14.9
업 종	제 조	52	61.5	28.8	7.7	1.9	0.0
	판 매	13	69.2	15.4	15.4	0.0	0.0
	수 입	12	33.3	16.7	16.7	33.3	0.0
	시 험	17	11.8	0.0	0.0	5.9	82.4
	기 타	7	14.3	14.3	57.1	0.0	14.3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84.6	0.0	7.7	0.0	7.7
	무 선 기 기	30	46.7	20.0	13.3	10.0	10.0
	정 보 기 기	39	35.9	28.2	15.4	2.6	17.9
	방 송 기 기	4	25.0	0.0	0.0	0.0	75.0
	부 품	2	0.0	50.0	0.0	50.0	0.0
	기 타	13	61.5	15.4	7.7	7.7	7.7
종업원수	1 ~ 4 명	9	44.4	11.1	44.4	0.0	0.0
	5 ~ 9 명	18	50.0	33.3	11.1	5.6	0.0
	10 ~ 49 명	57	50.9	17.5	7.0	3.5	21.1
	50 ~ 249명	15	33.3	20.0	6.7	20.0	20.0
	250명 이상	2	50.0	0.0	5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3	61.5	7.7	23.1	0.0	7.7
	1~5억 미만	16	56.3	12.5	18.8	6.3	6.3
	5~10억 미만	10	50.0	40.0	10.0	0.0	0.0
	10~50억 미만	38	44.7	15.8	10.5	2.6	26.3
	50~100억 미만	13	46.2	38.5	0.0	0.0	15.4
	100억 이상	11	27.3	18.2	9.1	36.4	9.1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100.0	0.0	0.0	0.0	0.0
	연 3~4회	20	0.0	100.0	0.0	0.0	0.0
	연 5~10회	12	0.0	0.0	100.0	0.0	0.0
	연 11~20회	6	0.0	0.0	0.0	100.0	0.0
	연 50회 이상	15	0.0	0.0	0.0	0.0	100.0

2. 방송기기 인증제도 이용 동기



문2. 귀사가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이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법적 의무사항이 므로	정부나 기업의 기준을 맞추기위해	국내시장의 판매를위해	해외수출을 위해	자체필요에 의해	기타
전 체		101	58.4	9.9	22.8	5.0	3.0	1.0
업 종	제 조	52	59.6	15.4	15.4	5.8	3.8	0.0
	판 매	13	46.2	7.7	38.5	0.0	7.7	0.0
	수 입	12	75.0	0.0	25.0	0.0	0.0	0.0
	시 험	17	52.9	0.0	35.3	5.9	0.0	5.9
	기 타	7	57.1	14.3	14.3	14.3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38.5	23.1	23.1	15.4	0.0	0.0
	무 선 기 기	30	66.7	13.3	10.0	6.7	0.0	3.3
	정 보 기 기	39	59.0	5.1	28.2	2.6	5.1	0.0
	방 송 기 기	4	50.0	0.0	50.0	0.0	0.0	0.0
	부 품	2	50.0	0.0	50.0	0.0	0.0	0.0
	기 타	13	61.5	7.7	23.1	0.0	7.7	0.0
종업원수	1 ~ 4 명	9	77.8	0.0	22.2	0.0	0.0	0.0
	5 ~ 9 명	18	55.6	5.6	16.7	11.1	11.1	0.0
	10 ~ 49 명	57	59.6	8.8	24.6	3.5	1.8	1.8
	50 ~ 249명	15	53.3	20.0	20.0	6.7	0.0	0.0
	250명 이상	2	0.0	50.0	50.0	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3	23.1	15.4	15.4	23.1	23.1	0.0
	1~5억 미만	16	50.0	12.5	37.5	0.0	0.0	0.0
	5~10억 미만	10	70.0	10.0	20.0	0.0	0.0	0.0
	10~50억 미만	38	60.5	5.3	28.9	2.6	0.0	2.6
	50~100억 미만	13	84.6	15.4	0.0	0.0	0.0	0.0
	100억 이상	11	63.6	9.1	18.2	9.1	0.0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56.3	10.4	20.8	6.3	6.3	0.0
	연 3~4회	20	60.0	15.0	25.0	0.0	0.0	0.0
	연 5~10회	12	75.0	8.3	8.3	8.3	0.0	0.0
	연 11~20회	6	50.0	16.7	16.7	16.7	0.0	0.0
	연 50회 이상	15	53.3	0.0	40.0	0.0	0.0	6.7

3.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 인증비용 평가



문3.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기기 인증비용은 해외에 비추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매우높다	다소높은 편이다	비슷하다	다소낮은 편이다	매우낮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10.9	29.7	18.8	6.9	16.8	16.8
업 종	제 조	52	13.5	38.5	25.0	1.9	0.0	21.2
	판 매	13	7.7	46.2	15.4	15.4	0.0	15.4
	수 입	12	25.0	25.0	0.0	8.3	16.7	25.0
	시 험	17	0.0	0.0	0.0	11.8	88.2	0.0
	기 타	7	0.0	14.3	57.1	14.3	0.0	14.3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7.7	7.7	30.8	15.4	7.7	30.8
	무 선 기 기	30	6.7	43.3	20.0	6.7	13.3	10.0
	정 보 기 기	39	17.9	23.1	12.8	5.1	23.1	17.9
	방 송 기 기	4	0.0	25.0	25.0	0.0	50.0	0.0
	부 품	2	0.0	50.0	50.0	0.0	0.0	0.0
	기 타	13	7.7	38.5	15.4	7.7	7.7	23.1
종업원수	1 ~ 4 명	9	11.1	33.3	0.0	0.0	0.0	55.6
	5 ~ 9 명	18	5.6	33.3	22.2	5.6	5.6	27.8
	10 ~ 49 명	57	12.3	31.6	17.5	7.0	21.1	10.5
	50 ~ 249명	15	13.3	20.0	26.7	13.3	26.7	0.0
	250명 이상	2	0.0	0.0	50.0	0.0	0.0	50.0
매출액	1억 미만	13	7.7	15.4	23.1	7.7	7.7	38.5
	1~5억 미만	16	0.0	25.0	31.3	6.3	12.5	25.0
	5~10억 미만	10	0.0	50.0	20.0	0.0	10.0	20.0
	10~50억 미만	38	13.2	28.9	13.2	7.9	26.3	10.5
	50~100억 미만	13	15.4	38.5	15.4	0.0	15.4	15.4
	100억 이상	11	27.3	27.3	18.2	18.2	9.1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4.2	31.3	25.0	8.3	4.2	27.1
	연 3~4회	20	30.0	45.0	20.0	0.0	0.0	5.0
	연 5~10회	12	16.7	33.3	16.7	8.3	0.0	25.0
	연 11~20회	6	16.7	33.3	0.0	16.7	33.3	0.0
	연 50회 이상	15	0.0	0.0	6.7	6.7	86.7	0.0

4. 인증제도 재분류 방안 평가



문4. 인증제도를 적합인증과 등록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별로 적절하지않다	전혀 적절하지않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19.8	56.4	12.9	5.9	5.0
업 종	제 조	52	26.9	59.6	5.8	3.8	3.8
	판 매	13	23.1	38.5	23.1	7.7	7.7
	수 입	12	8.3	66.7	16.7	8.3	0.0
	시 험	17	5.9	58.8	23.5	11.8	0.0
	기 타	7	14.3	42.9	14.3	0.0	28.6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7.7	76.9	0.0	7.7	7.7
	무 선 기 기	30	16.7	60.0	16.7	3.3	3.3
	정 보 기 기	39	25.6	56.4	12.8	5.1	0.0
	방 송 기 기	4	25.0	50.0	25.0	0.0	0.0
	부 품	2	0.0	50.0	0.0	50.0	0.0
	기 타	13	23.1	30.8	15.4	7.7	23.1
종업원수	1 ~ 4 명	9	0.0	66.7	11.1	11.1	11.1
	5 ~ 9 명	18	33.3	50.0	5.6	11.1	0.0
	10 ~ 49 명	57	22.8	61.4	7.0	3.5	5.3
	50 ~ 249명	15	6.7	40.0	46.7	6.7	0.0
	250명 이상	2	0.0	50.0	0.0	0.0	50.0
매출액	1억 미만	13	30.8	38.5	7.7	7.7	15.4
	1~5억 미만	16	12.5	56.3	12.5	12.5	6.3
	5~10억 미만	10	20.0	50.0	10.0	10.0	10.0
	10~50억 미만	38	13.2	73.7	7.9	5.3	0.0
	50~100억 미만	13	38.5	30.8	23.1	0.0	7.7
	100억 이상	11	18.2	54.5	27.3	0.0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20.8	62.5	8.3	2.1	6.3
	연 3~4회	20	40.0	45.0	10.0	5.0	0.0
	연 5~10회	12	8.3	50.0	16.7	8.3	16.7
	연 11~20회	6	16.7	50.0	16.7	16.7	0.0
	연 50회 이상	15	0.0	60.0	26.7	13.3	0.0

5. 제도 개편 효과 전망(1)_기업경쟁력 강화



문5. 위와 같이 인증제도가 개편될 경우, 제품의 조기 시장출시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크게도움이될 것이다	다소도움이될 것이다	별로도움되지 않을것이다	전혀도움되지 않을것이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27.7	52.5	14.9	2.0	3.0
업 종	제 조	52	28.8	53.8	11.5	0.0	5.8
	판 매	13	30.8	61.5	7.7	0.0	0.0
	수 입	12	41.7	33.3	25.0	0.0	0.0
	시 험	17	11.8	52.9	23.5	11.8	0.0
	기 타	7	28.6	57.1	14.3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30.8	38.5	15.4	7.7	7.7
	무 선 기 기	30	33.3	56.7	10.0	0.0	0.0
	정 보 기 기	39	30.8	48.7	15.4	0.0	5.1
	방 송 기 기	4	25.0	50.0	25.0	0.0	0.0
	부 품	2	0.0	50.0	50.0	0.0	0.0
	기 타	13	7.7	69.2	15.4	7.7	0.0
종업원수	1 ~ 4 명	9	22.2	55.6	22.2	0.0	0.0
	5 ~ 9 명	18	50.0	27.8	16.7	0.0	5.6
	10 ~ 49 명	57	28.1	56.1	8.8	3.5	3.5
	50 ~ 249명	15	6.7	60.0	33.3	0.0	0.0
	250명 이상	2	0.0	100.0	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3	23.1	61.5	0.0	7.7	7.7
	1~5억 미만	16	12.5	56.3	25.0	0.0	6.3
	5~10억 미만	10	30.0	50.0	20.0	0.0	0.0
	10~50억 미만	38	31.6	50.0	13.2	2.6	2.6
	50~100억 미만	13	46.2	38.5	15.4	0.0	0.0
	100억 이상	11	18.2	63.6	18.2	0.0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27.1	58.3	10.4	0.0	4.2
	연 3~4회	20	40.0	45.0	10.0	0.0	5.0
	연 5~10회	12	25.0	50.0	25.0	0.0	0.0
	연 11~20회	6	33.3	50.0	16.7	0.0	0.0
	연 50회 이상	15	13.3	46.7	26.7	13.3	0.0

6. 제도개편 효과 전망(2)_인증기간 단축



문6.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4가지 인증(형식승인, 형식등록, 형식검정, 전자파적합등록) 중 복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 하나의 적합인증만 받는다면, 귀사의 경우 인증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1주	2주	3주	4주이상	별변화없을 것이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15.8	32.7	14.9	18.8	9.9	7.9
업 종	제 조	52	11.5	36.5	15.4	21.2	5.8	9.6
	판 매	13	7.7	38.5	15.4	30.8	0.0	7.7
	수 입	12	33.3	33.3	8.3	8.3	16.7	0.0
	시 험	17	23.5	17.6	11.8	11.8	29.4	5.9
	기 타	7	14.3	28.6	28.6	14.3	0.0	14.3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7.7	23.1	15.4	23.1	0.0	30.8
	무 선 기 기	30	20.0	33.3	13.3	16.7	13.3	3.3
	정 보 기 기	39	15.4	33.3	15.4	23.1	12.8	0.0
	방 송 기 기	4	25.0	50.0	0.0	25.0	0.0	0.0
	부 품	2	50.0	50.0	0.0	0.0	0.0	0.0
	기 타	13	7.7	30.8	23.1	7.7	7.7	23.1
종업원수	1 ~ 4 명	9	11.1	66.7	11.1	0.0	11.1	0.0
	5 ~ 9 명	18	22.2	27.8	11.1	27.8	11.1	0.0
	10 ~ 49 명	57	15.8	31.6	15.8	22.8	5.3	8.8
	50 ~ 249명	15	13.3	26.7	20.0	6.7	26.7	6.7
	250명 이상	2	0.0	0.0	0.0	0.0	0.0	100.0
매출액	1억 미만	13	7.7	38.5	23.1	15.4	0.0	15.4
	1~5억 미만	16	0.0	25.0	18.8	31.3	12.5	12.5
	5~10억 미만	10	30.0	20.0	10.0	10.0	20.0	10.0
	10~50억 미만	38	26.3	47.4	5.3	15.8	5.3	0.0
	50~100억 미만	13	0.0	15.4	30.8	15.4	23.1	15.4
	100억 이상	11	18.2	18.2	18.2	27.3	9.1	9.1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12.5	41.7	16.7	14.6	4.2	10.4
	연 3~4회	20	20.0	30.0	20.0	30.0	0.0	0.0
	연 5~10회	12	8.3	33.3	16.7	16.7	16.7	8.3
	연 11~20회	6	33.3	0.0	0.0	33.3	16.7	16.7
	연 50회 이상	15	20.0	20.0	6.7	13.3	33.3	6.7

7. 인증비용 절감 전망



문7. 그렇다면 인증비용은 일년에 얼마나 절감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100만원미만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0만원이상
전 체		83	19.3	30.1	28.9	18.1	3.6
업 종	제 조	44	18.2	29.5	34.1	15.9	2.3
	판 매	12	25.0	50.0	25.0	0.0	0.0
	수 입	10	10.0	20.0	30.0	20.0	20.0
	시 험	11	36.4	18.2	9.1	36.4	0.0
	기 타	6	0.0	33.3	33.3	33.3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9	11.1	33.3	44.4	11.1	0.0
	무 선 기 기	25	24.0	28.0	28.0	16.0	4.0
	정 보 기 기	34	14.7	26.5	32.4	23.5	2.9
	방 송 기 기	4	0.0	50.0	25.0	25.0	0.0
	부 품	2	50.0	0.0	50.0	0.0	0.0
	기 타	9	33.3	44.4	0.0	11.1	11.1
종업원수	1 ~ 4 명	8	25.0	25.0	37.5	12.5	0.0
	5 ~ 9 명	16	6.3	25.0	37.5	25.0	6.3
	10 ~ 49 명	49	18.4	36.7	24.5	16.3	4.1
	50 ~ 249명	10	40.0	10.0	30.0	20.0	0.0
	250명 이상	11	0.0	9.1	72.7	18.2	0.0
매출액	1억 미만	12	33.3	41.7	25.0	0.0	0.0
	1~5억 미만	7	14.3	14.3	28.6	42.9	0.0
	5~10억 미만	36	22.2	33.3	22.2	16.7	5.6
	10~50억 미만	8	25.0	37.5	12.5	25.0	0.0
	50~100억 미만	9	11.1	33.3	22.2	22.2	11.1
	100억 이상	41	31.7	34.1	26.8	7.3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20	5.0	30.0	30.0	30.0	5.0
	연 3~4회	9	0.0	33.3	44.4	22.2	0.0
	연 5~10회	4	0.0	0.0	50.0	0.0	50.0
	연 11~20회	9	22.2	22.2	11.1	44.4	0.0
	연 50회 이상	15	0.0	0.0	0.0	0.0	100.0

8. 인증시간 절감 전망



문8. 적합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증시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단축될것이다	별변화없을것이다	늘어날것이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76.2	15.8	3.0	5.0
업 종	제 조	52	82.7	7.7	3.8	5.8
	판 매	13	61.5	23.1	7.7	7.7
	수 입	12	75.0	16.7	0.0	8.3
	시 험	17	64.7	35.3	0.0	0.0
	기 타	7	85.7	14.3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69.2	15.4	7.7	7.7
	무 선 기 기	30	86.7	10.0	0.0	3.3
	정 보 기 기	39	76.9	17.9	0.0	5.1
	방 송 기 기	4	100.0	0.0	0.0	0.0
	부 품	2	100.0	0.0	0.0	0.0
	기 타	13	46.2	30.8	15.4	7.7
종업원수	1 ~ 4 명	9	88.9	0.0	0.0	11.1
	5 ~ 9 명	18	88.9	11.1	0.0	0.0
	10 ~ 49 명	57	75.4	14.0	5.3	5.3
	50 ~ 249명	15	53.3	40.0	0.0	6.7
	250명 이상	2	100.0	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3	84.6	7.7	0.0	7.7
	1~5억 미만	16	62.5	25.0	0.0	12.5
	5~10억 미만	10	80.0	20.0	0.0	0.0
	10~50억 미만	38	86.8	10.5	2.6	0.0
	50~100억 미만	13	61.5	15.4	15.4	7.7
	100억 이상	11	63.6	27.3	0.0	9.1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8	79.2	14.6	2.1	4.2
	연 3~4회	20	85.0	0.0	10.0	5.0
	연 5~10회	12	66.7	25.0	0.0	8.3
	연 11~20회	6	66.7	16.7	0.0	16.7
	연 50회 이상	15	66.7	33.3	0.0	0.0

8-1.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시간 단축



문8-1.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시간 단축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이상
전 체		33.8	42.9	13.0	9.1	1.3
업 종	제 조	30.2	48.8	11.6	9.3	0.0
	판 매	25.0	62.5	0.0	12.5	0.0
	수 입	55.6	22.2	11.1	0.0	11.1
	시 험	27.3	36.4	36.4	0.0	0.0
	기 타	50.0	16.7	0.0	33.3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33.3	66.7	0.0	0.0	0.0
	무 선 기 기	42.3	34.6	19.2	3.8	0.0
	정 보 기 기	26.7	43.3	16.7	13.3	0.0
	방 송 기 기	25.0	75.0	0.0	0.0	0.0
	부 품	50.0	50.0	0.0	0.0	0.0
	기 타	33.3	16.7	0.0	33.3	16.7
종업원수	1 ~ 4 명	50.0	37.5	12.5	0.0	0.0
	5 ~ 9 명	31.3	43.8	12.5	12.5	0.0
	10 ~ 49 명	34.9	39.5	14.0	9.3	2.3
	50 ~ 249명	25.0	62.5	12.5	0.0	0.0
	250명 이상	0.0	50.0	0.0	50.0	0.0
매출액	1억 미만	18.2	45.5	9.1	27.3	0.0
	1~5억 미만	30.0	70.0	0.0	0.0	0.0
	5~10억 미만	75.0	0.0	25.0	0.0	0.0
	10~50억 미만	33.3	45.5	15.2	6.1	0.0
	50~100억 미만	25.0	50.0	0.0	25.0	0.0
	100억 이상	28.6	28.6	28.6	0.0	14.3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36.8	52.6	2.6	7.9	0.0
	연 3~4회	35.3	23.5	29.4	11.8	0.0
	연 5~10회	25.0	50.0	0.0	25.0	0.0
	연 11~20회	50.0	0.0	25.0	0.0	25.0
	연 50회 이상	20.0	50.0	30.0	0.0	0.0

8-2. 제조자 등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는 경우 시간 단축



문8-2. 제조자 등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는 경우 시간 단축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1주	2주	3주	4주	5주이상
전 체		77	37.7	24.7	18.2	13.0	6.5
업 종	제 조	43	34.9	23.3	18.6	18.6	4.7
	판 매	8	12.5	50.0	25.0	0.0	12.5
	수 입	9	44.4	22.2	22.2	0.0	11.1
	시 험	11	63.6	18.2	9.1	9.1	0.0
	기 타	6	33.3	16.7	16.7	16.7	16.7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9	44.4	22.2	22.2	11.1	0.0
	무 선 기 기	26	34.6	26.9	19.2	15.4	3.8
	정 보 기 기	30	40.0	23.3	13.3	16.7	6.7
	방 송 기 기	4	25.0	25.0	50.0	0.0	0.0
	부 품	2	50.0	50.0	0.0	0.0	0.0
	기 타	6	33.3	16.7	16.7	0.0	33.3
종업원수	1 ~ 4 명	8	37.5	37.5	25.0	0.0	0.0
	5 ~ 9 명	16	37.5	18.8	12.5	25.0	6.3
	10 ~ 49 명	43	41.9	30.2	14.0	7.0	7.0
	50 ~ 249명	8	25.0	0.0	37.5	37.5	0.0
	250명 이상	2	0.0	0.0	50.0	0.0	50.0
매출액	1억 미만	11	18.2	45.5	9.1	18.2	9.1
	1~5억 미만	10	20.0	30.0	30.0	10.0	10.0
	5~10억 미만	8	50.0	0.0	37.5	12.5	0.0
	10~50억 미만	33	48.5	27.3	15.2	3.0	6.1
	50~100억 미만	8	25.0	12.5	25.0	37.5	0.0
	100억 이상	7	42.9	14.3	0.0	28.6	14.3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38	42.1	28.9	21.1	7.9	0.0
	연 3~4회	17	17.6	17.6	23.5	23.5	17.6
	연 5~10회	8	25.0	25.0	12.5	25.0	12.5
	연 11~20회	4	50.0	0.0	0.0	25.0	25.0
	연 50회 이상	10	60.0	30.0	10.0	0.0	0.0

9. 인증비용 절감 전망



문9. 적합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증비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절감될것이다	별변화없을것이다	늘어날것이다	잘모르겠다
전 체		101	68.3	17.8	5.0	8.9
업 종	제 조	52	75.0	7.7	5.8	11.5
	판 매	13	69.2	7.7	7.7	15.4
	수 입	12	66.7	25.0	8.3	0.0
	시 험	17	41.2	52.9	0.0	5.9
	기 타	7	85.7	14.3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61.5	15.4	0.0	23.1
	무 선 기 기	30	76.7	10.0	3.3	10.0
	정 보 기 기	39	74.4	20.5	5.1	0.0
	방 송 기 기	4	75.0	25.0	0.0	0.0
	부 품	2	100.0	0.0	0.0	0.0
종업원수	기 타	13	30.8	30.8	15.4	23.1
	1 ~ 4 명	9	77.8	0.0	11.1	11.1
	5 ~ 9 명	18	83.3	5.6	5.6	5.6
	10 ~ 49 명	57	68.4	17.5	5.3	8.8
	50 ~ 249명	15	40.0	46.7	0.0	13.3
매출액	250명 이상	2	100.0	0.0	0.0	0.0
	1억 미만	13	84.6	7.7	0.0	7.7
	1~5억 미만	16	68.8	18.8	6.3	6.3
	5~10억 미만	10	60.0	20.0	10.0	10.0
	10~50억 미만	38	76.3	18.4	0.0	5.3
연간 시험횟수	50~100억 미만	13	46.2	15.4	15.4	23.1
	100억 이상	11	54.5	27.3	9.1	9.1
	연 1~2회	48	68.8	14.6	4.2	12.5
	연 3~4회	20	85.0	5.0	10.0	0.0
	연 5~10회	12	75.0	8.3	8.3	8.3
	연 11~20회	6	50.0	33.3	0.0	16.7
	연 50회 이상	15	46.7	46.7	0.0	6.7

문9-1.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



문9-1.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100만원미만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전 체		66	30.3	27.3	25.8	16.7
업 종	제 조	38	34.2	26.3	23.7	15.8
	판 매	8	25.0	50.0	25.0	0.0
	수 입	8	37.5	0.0	37.5	25.0
	시 험	7	14.3	28.6	14.3	42.9
	기 타	5	20.0	40.0	4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8	12.5	62.5	12.5	12.5
	무 선 기 기	22	36.4	27.3	22.7	13.6
	정 보 기 기	28	32.1	17.9	32.1	17.9
	방 송 기 기	3	33.3	0.0	33.3	33.3
	부 품	2	0.0	50.0	50.0	0.0
	기 타	3	33.3	33.3	0.0	33.3
종업원수	1 ~ 4 명	7	28.6	14.3	57.1	0.0
	5 ~ 9 명	14	35.7	21.4	21.4	21.4
	10 ~ 49 명	37	32.4	24.3	21.6	21.6
	50 ~ 249명	6	16.7	50.0	33.3	0.0
	250명 이상	2	0.0	10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9	0.0	33.3	55.6	11.1
	1~5억 미만	11	27.3	54.5	18.2	0.0
	5~10억 미만	6	33.3	0.0	33.3	33.3
	10~50억 미만	28	39.3	21.4	17.9	21.4
	50~100억 미만	6	33.3	16.7	16.7	33.3
	100억 이상	6	33.3	33.3	33.3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32	50.0	18.8	21.9	9.4
	연 3~4회	16	12.5	31.3	25.0	31.3
	연 5~10회	8	0.0	62.5	37.5	0.0
	연 11~20회	3	33.3	33.3	33.3	0.0
	연 50회 이상	7	14.3	14.3	28.6	42.9

문9-2. 제조자 등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는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



문9-2. 제조자 등 신청자가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는 경우 연간 비용 절감액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100만원미만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0만원이상
전 체		66	27.3	21.2	31.8	15.2	4.5
업 종	제 조	38	23.7	23.7	34.2	15.8	2.6
	판 매	8	25.0	37.5	25.0	12.5	0.0
	수 입	8	37.5	0.0	12.5	37.5	12.5
	시 험	7	42.9	14.3	28.6	0.0	14.3
	기 타	5	20.0	20.0	60.0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8	12.5	50.0	25.0	12.5	0.0
	무 선 기 기	22	31.8	18.2	36.4	9.1	4.5
	정 보 기 기	28	32.1	17.9	32.1	17.9	0.0
	방 송 기 기	3	0.0	33.3	33.3	0.0	33.3
	부 품	2	50.0	0.0	0.0	50.0	0.0
	기 타	3	0.0	0.0	33.3	33.3	33.3
종업원수	1 ~ 4 명	7	42.9	28.6	28.6	0.0	0.0
	5 ~ 9 명	14	14.3	28.6	35.7	21.4	0.0
	10 ~ 49 명	37	29.7	21.6	24.3	16.2	8.1
	50 ~ 249명	6	33.3	0.0	50.0	16.7	0.0
	250명 이상	2	0.0	0.0	10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9	0.0	33.3	66.7	0.0	0.0
	1~5억 미만	11	36.4	18.2	45.5	0.0	0.0
	5~10억 미만	6	16.7	0.0	33.3	50.0	0.0
	10~50억 미만	28	35.7	28.6	21.4	7.1	7.1
	50~100억 미만	6	33.3	0.0	16.7	50.0	0.0
	100억 이상	6	16.7	16.7	16.7	33.3	16.7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32	37.5	31.3	21.9	9.4	0.0
	연 3~4회	16	12.5	6.3	37.5	37.5	6.3
	연 5~10회	8	12.5	25.0	62.5	0.0	0.0
	연 11~20회	3	0.0	0.0	33.3	33.3	33.3
	연 50회 이상	7	42.9	14.3	28.6	0.0	14.3

10. 적합등록 서류 자체보관 기간



문 10. 적합등록을 한 자가 적합등록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고 할 때 증명 서류의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제품단종후 3년	제품단종후 5년	제품단종후 7년	제품단종후 10년	보관기간 필요없음	잘모르겠다
전 체		98	41.8	39.8	1.0	10.2	4.1	3.1
업 종	제 조	51	54.9	25.5	2.0	11.8	3.9	2.0
	판 매	12	25.0	58.3	0.0	8.3	0.0	8.3
	수 입	12	33.3	33.3	0.0	8.3	16.7	8.3
	시 험	17	23.5	64.7	0.0	11.8	0.0	0.0
	기 타	6	33.3	66.7	0.0	0.0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53.8	15.4	0.0	15.4	15.4	0.0
	무 선 기 기	29	31.0	41.4	3.4	20.7	0.0	3.4
	정 보 기 기	38	36.8	52.6	0.0	5.3	5.3	0.0
	방 송 기 기	4	50.0	50.0	0.0	0.0	0.0	0.0
	부 품	2	100.0	0.0	0.0	0.0	0.0	0.0
	기 타	12	58.3	25.0	0.0	0.0	0.0	16.7
종업원수	1 ~ 4 명	9	22.2	55.6	0.0	0.0	22.2	0.0
	5 ~ 9 명	17	52.9	29.4	0.0	11.8	5.9	0.0
	10 ~ 49 명	55	47.3	38.2	0.0	7.3	1.8	5.5
	50 ~ 249명	15	20.0	46.7	6.7	26.7	0.0	0.0
	250명 이상	2	50.0	50.0	0.0	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1	27.3	54.5	0.0	18.2	0.0	0.0
	1~5억 미만	16	50.0	37.5	0.0	6.3	6.3	0.0
	5~10억 미만	10	40.0	20.0	0.0	20.0	20.0	0.0
	10~50억 미만	37	45.9	43.2	0.0	2.7	2.7	5.4
	50~100억 미만	13	46.2	23.1	0.0	30.8	0.0	0.0
	100억 이상	11	27.3	54.5	9.1	0.0	0.0	9.1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7	40.4	38.3	0.0	10.6	6.4	4.3
	연 3~4회	19	57.9	26.3	0.0	10.5	5.3	0.0
	연 5~10회	11	45.5	54.5	0.0	0.0	0.0	0.0
	연 11~20회	6	16.7	33.3	16.7	16.7	0.0	16.7
	연 50회 이상	15	33.3	53.3	0.0	13.3	0.0	0.0

11. 잠정인증제도 활용 의사



문11. 잠정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전 체		98	72.4	5.1	22.4
업 종	제 조	51	76.5	2.0	21.6
	판 매	12	83.3	0.0	16.7
	수 입	12	66.7	8.3	25.0
	시 험	17	70.6	11.8	17.6
	기 타	6	33.3	16.7	5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61.5	0.0	38.5
	무 선 기 기	29	79.3	3.4	17.2
	정 보 기 기	38	68.4	10.5	21.1
	방 송 기 기	4	75.0	0.0	25.0
	부 품	2	100.0	0.0	0.0
종업원수	기 타	12	75.0	0.0	25.0
	1 ~ 4 명	9	66.7	11.1	22.2
	5 ~ 9 명	17	94.1	0.0	5.9
	10 ~ 49 명	55	74.5	3.6	21.8
	50 ~ 249명	15	46.7	13.3	40.0
매출액	250명 이상	2	50.0	0.0	50.0
	1억 미만	11	100.0	0.0	0.0
	1~5억 미만	16	56.3	6.3	37.5
	5~10억 미만	10	80.0	10.0	10.0
	10~50억 미만	37	75.7	2.7	21.6
연간 시험횟수	50~100억 미만	13	61.5	0.0	38.5
	100억 이상	11	63.6	18.2	18.2
	연 1~2회	47	63.8	2.1	34.0
	연 3~4회	19	89.5	0.0	10.5
	연 5~10회	11	81.8	18.2	0.0
연간 시험횟수	연 11~20회	6	66.7	16.7	16.7
	연 50회 이상	15	73.3	6.7	20.0

12. 잠정인증제도 효용성 평가(1)_신제품 출시



문12. 잠정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제품 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크게도움이될 것이다	다소도움이될 것이다	별로도움되지 않을것이다	전혀도움되지 않을것이다	잘모르겠다
전 체			98	34.7	49.0	9.2	1.0	6.1
업 종	제 조		51	41.2	45.1	7.8	2.0	3.9
	판 매		12	33.3	50.0	8.3	0.0	8.3
	수 입		12	50.0	33.3	8.3	0.0	8.3
	시 험		17	11.8	64.7	11.8	0.0	11.8
	기 타		6	16.7	66.7	16.7	0.0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53.8	23.1	23.1	0.0	0.0
	무 선 기 기		29	41.4	48.3	3.4	3.4	3.4
	정 보 기 기		38	26.3	57.9	7.9	0.0	7.9
	방 송 기 기		4	0.0	75.0	25.0	0.0	0.0
	부 품		2	0.0	100.0	0.0	0.0	0.0
	기 타		12	41.7	33.3	8.3	0.0	16.7
종업원수	1 ~ 4 명		9	22.2	55.6	11.1	0.0	11.1
	5 ~ 9 명		17	47.1	47.1	0.0	5.9	0.0
	10 ~ 49 명		55	38.2	49.1	9.1	0.0	3.6
	50 ~ 249명		15	13.3	53.3	13.3	0.0	20.0
	250명 이상		2	50.0	0.0	50.0	0.0	0.0
매출액	1억 미만		11	45.5	54.5	0.0	0.0	0.0
	1~5억 미만		16	18.8	50.0	31.3	0.0	0.0
	5~10억 미만		10	30.0	60.0	0.0	10.0	0.0
	10~50억 미만		37	35.1	48.6	5.4	0.0	10.8
	50~100억 미만		13	46.2	38.5	0.0	0.0	15.4
	100억 이상		11	36.4	45.5	18.2	0.0	0.0
연간 시험횟수	연 1~2회		47	29.8	51.1	10.6	0.0	8.5
	연 3~4회		19	63.2	36.8	0.0	0.0	0.0
	연 5~10회		11	36.4	45.5	9.1	9.1	0.0
	연 11~20회		6	33.3	50.0	16.7	0.0	0.0
	연 50회 이상		15	13.3	60.0	13.3	0.0	13.3

13. 잠정인증제도 효용성 평가(2)_매출액



문13. 잠정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적합성 평가기준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면,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교차분석표

(단위 : %)

구 분		(Cases)	변화없을 것이다	3천만원이하	3~5천만원	5천만원~ 1억	1~5억	5~10억
전 체		98	31.6	30.6	14.3	9.2	8.2	6.1
업 종	제 조	51	25.5	33.3	9.8	13.7	9.8	7.8
	판 매	12	25.0	25.0	33.3	0.0	8.3	8.3
	수 입	12	33.3	25.0	16.7	8.3	8.3	8.3
	시 험	17	47.1	35.3	11.8	5.9	0.0	0.0
	기 타	6	50.0	16.7	16.7	0.0	16.7	0.0
주력제품	유 선 기 기	13	38.5	30.8	30.8	0.0	0.0	0.0
	무 선 기 기	29	17.2	31.0	13.8	17.2	6.9	13.8
	정 보 기 기	38	42.1	26.3	5.3	10.5	13.2	2.6
	방 송 기 기	4	50.0	25.0	25.0	0.0	0.0	0.0
	부 품	2	0.0	50.0	0.0	0.0	0.0	50.0
종업원수	기 타	12	25.0	41.7	25.0	0.0	8.3	0.0
	1 ~ 4 명	9	55.6	44.4	0.0	0.0	0.0	0.0
	5 ~ 9 명	17	35.3	23.5	17.6	11.8	5.9	5.9
	10 ~ 49 명	55	25.5	32.7	16.4	10.9	7.3	7.3
	50 ~ 249명	15	33.3	26.7	6.7	6.7	20.0	6.7
매출액	250명 이상	2	50.0	0.0	50.0	0.0	0.0	0.0
	1억 미만	11	36.4	18.2	27.3	0.0	0.0	18.2
	1~5억 미만	16	43.8	31.3	25.0	0.0	0.0	0.0
	5~10억 미만	10	40.0	20.0	10.0	10.0	20.0	0.0
	10~50억 미만	37	27.0	32.4	16.2	13.5	8.1	2.7
연간 시험횟수	50~100억 미만	13	30.8	46.2	0.0	15.4	7.7	0.0
	100억 이상	11	18.2	27.3	0.0	9.1	18.2	27.3
	연 1~2회	47	38.3	31.9	17.0	4.3	2.1	6.4
	연 3~4회	19	5.3	36.8	5.3	21.1	21.1	10.5
	연 5~10회	11	27.3	18.2	27.3	9.1	18.2	0.0
	연 11~20회	6	33.3	0.0	0.0	33.3	16.7	16.7
	연 50회 이상	15	46.7	40.0	13.3	0.0	0.0	0.0

14. 잠정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출시하고 싶은 제품

No.	잠정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출시하고 싶은 제품
1	컴퓨터 소모품류
2	게임기
3	광통신기기
4	다기능 전화기
5	모니터
6	무선 랜 관련
7	무선랜제품
8	무선마이크
9	무선응찰기
10	무선장비
11	무선전송 디지털액자
12	무선제품
13	무선종합정보안내시스템
14	무선통신기기
15	무선팬
16	무인발매기
17	발전소 정비지원장치
18	변동 사항이 적은 신제품
19	스마트폰
20	유무선관련기기
21	전자철판
22	증명발급기
23	지금은 없음
24	축산모니터링 시스템
25	키오스크
26	터치센서
27	통합 유, 무선 공유기
28	프린터
29	학습기, pmp
30	현재진행중인컴퓨터전원장치
31	홈넷 제품
32	car av
33	CATV 관련 제품
34	KIOSK
35	LED제품
36	MolP
37	MP3 Player
38	RFID Reader

15. 향후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품목으로 추가하였으면 하는

방송통신기기

No.	유선통신 분야
1	광 전송장비
2	전화기 유선랜
3	조달청,도로공사등 공공시설납품품
4	카메라 IR센서
5	WALL-PAD

No.	무선통신분야
1	13.56Mhz RFID READER
2	모든 단말기
3	무선 랜 관련 제품
4	무선랜 안테나
5	블루투스, FMTX
6	블루투스GPS수신기
7	조달청,도로공사등 공공시설납품품
8	특정소출력장비
9	EMC기준, 전기안전
10	RF전송방식 데이터 기기류
11	USN/RFID 활용 node
12	WALL-PAD

No.	전자파이용분야
1	내시경
2	적합인증또는적합등록에서ISM관련제품이해당되는지요?포함시키기위해서노력하기위해본설문에언급한것으로이해하면되는지요? 꼭 대상기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양망합니다.
3	조달청,도로공사등 공공시설납품품
4	청력검사장비

No.	기타
1	모든 전지전자기기가 해당되도록 포괄적 법 제정 바람
2	본 설문에서 언급되는 제품이외의 9 kHz 이상의 timing clock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
3	터치센서
4	CDMA 모델 응용 제품
5	IT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을 구별하여 인증을 추진하는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기기별로 구별하지 말고 주파수별 출력별로 구별하여 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함.
6	조달청,도로공사등 공공시설납품품

16. 인증제도와 관련해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No.	시험인증 비용
1	USB 및 이동식저장장치 등에 대하여 현재는 각 용량별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되면 USB 예를들자면 1G 2G 4G 8G 16G 32G 64G 제품을 출시도 하기전에 인증비용만 8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모델만이고요 만일에 2가지 모델을 이용량별로 출시하자면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저장장치들도 마찬가지로이구요 마진율을 크게 가지고 가는 대기업들은 어쩔런지 몰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들은 1~2% 마진에서 운영을 하는데 초기 인증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하려고 해도 망설여지고 그러다 보면 IT제품의 특성상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놓쳐 매출증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량별이 아닌 모델별로만 규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CE/FCC를 같이 통합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 매출에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감소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렸으면 좋겠다
3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어 시험기관이 임의 책정함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업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4	정부에서 비용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주시면 시험대행기관과의 가격협상력이 개선될것 같습니다.
5	저렴한 비용으로 했으면합니다.
6	인증비용의 법적 기준 신설
7	시험/인증비용을 합쳐서 지급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8	비용이 일괄적이지 않다
9	비용이 비싸다
10	비용이 많이 듭.
11	비용감소
12	비싸다
13	매우 높은 인증 검사비용
14	매년 인상되고 있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됨..
15	넘 비싸다
16	너무났다
17	너무 비싸다
18	너무 비싸다(제품크기에따라 달라짐)
19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험 비용을 현실화

No.	시험인증 절차
1	간소하였으면합니다.
2	간소화
3	간소화
4	간소화 되었으면 ...
5	까다롭다
6	대행기간을 통하기때문에 복잡하진 않음
7	물건이 이미 입고되기도 복잡하고 긴 인증절차로 손에 물건을 들고도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있지도 않은 매뉴얼 제출이나 블록다이어그램 등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수입사 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이 된다고도 과연 단순 이동식저장장치의 작동방식인 PLUG&PLAY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매뉴얼이 없으면 인증이 안되는 이런 절차를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손실이 너무나 큼니다 이러한 것들은 없애거나 만일 지정인증업체가 행하게 된다면 그 인증업체들의 전문인력들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비교적 좋다.
9	비전문인도 쉽게 알 수 있는 항목이었으면 한다
10	시험과 인증을 한번에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운송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이종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12	인증진행시 필요 서류를 좀더 간소화 할수 있도록 검토필요

No.	시험인증 소요기간
1	1주내
2	1주일이내로 모든것이 끝나야되는데 실제 실험 의뢰한 업체들은 15~20일정도 소요된다. 절차상 간편화 되었으면 한다.
3	50% 정도는 인증 기간이 단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4	간소화
5	기간 단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6	기간이 한달 이상 오래걸립니다.
7	너무 길다
8	너무 오래걸림 (보통 4주이상)
9	넘 길다 2주 이내로
10	만족합니다.
11	비교적 좋다.
12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음.
13	신청 접수를 하고 인증을 받기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이상 소요되어 그 기간안에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인증기간의 단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14	인증 소요기간 단축
15	인증 소요기간 단축
16	인증 소요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요망
17	인증기간 짧아야 3주 입니다 물건은 이미 들어와 있고 3주 동안 제품을 팔지도 못하고 있다보면 제품의 적정 출하시기를 놓치는 적이 많습니다 3~4일내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No.	인증심사 기준
1	간소화
2	기술변경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다른 나라에서는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저희 나라에서만 각종 규격 및 규제 때문에 안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무선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국제 EMC 기술기준의 번역 및 제도화
5	비교적 적절하다.
6	인증기준또한 알려져 있거나 업체에 규정으로 토보되어 있지 않아 시험 규격에 맞게 개발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
7	인증기준에 시험수수료 고시 요망
8	제품개선, 기술 개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6개월) 기준의 update가 꼭 필요합니다.
9	EMI의 경우는 무선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확한 인증시험이 어렵다, 10미터 쉴드챔버에서 진행하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

No.	시험 · 검사항목
1	간소화
2	유무선기기,ITE기에 대한 safety추가하고 무선기기에 대한 SAR추가,
3	인증기준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update가 필요하며 필요없는 항목의 삭제와 필요한 항목의 추가를 쉽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적절하다.
5	정확하게 알수 없다.
6	하나로 통합 필요
7	ESD는 타사 제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성능 문제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했으면 한다.(인증항목 제외)

참고문헌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계획」 2008.5
2. 백종현·강부미·손홍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의 최근 개편동향 및 시사점”, 한국통신학회 NCS 학술대회, 2008.12
3. 백종현·임광선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제의 성격”, 2005년 한국통신학회 NCS 학술대회, 2005.12
4. 최병선 “세계화 시대의 국가간 규제(정책및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2001.12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MRA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2
6. 한국전자제시험연구원, 표준·인증제도 운영관련 용어의 적용지침 개발, 국가표준·인증 혁신실무위원회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07.8.
7.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EMC 규제체계 통합방안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수탁보고서, 2008.12
8. 한국전파진흥협회, EMC 대책 부품·기술 시장동향보고서, 2009.10
9. <http://www.rri.go.kr>
10. <http://www.moleg.go.kr>
11. <http://www.fcc.gov>
12. <http://www.vcci.or.jp>
13. <http://www.europa.eu.int>